AURI-기타-2012-2

2012 한옥산업 현황조사

Survey on the Status of Han-Ok Industry in 2012

유광흠 Yu, Kwang Heum
신민종 Shin, Min Jong

(auri

AURI-기타-2012-2
2012 한옥산업 현황조사
Survey on the Status of Han-Ok Industry in 2012

지은이: 유광흠, 신민종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385-3850000251002008000005호
인쇄: 2012년 12월 26일, 발행: 2012년 12월 30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아크로타워 B동 301호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http://www.auri.re.kr
가격 : 8,000원, ISBN: 978-89-97468-41-6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 연구진	유광흠 연구위원
	신민종 연구원
┃ 연구보조원	박예솔

┃ 연구자문위원	김헌중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회장
	윤혁경 ANU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승옥 전라남도청 행정지원국 국장

연구요약

Ⅰ. 연구의 개요

한옥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가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한옥관련 정책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고, 한옥건축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기술 개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한옥건립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옥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한옥관련 사업체 현황 및 한옥 관련 시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는 미비한 상태이다. 현재 한옥관련 사업체 현황 및 산업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사업체 DB 구축 및 통계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많은 한옥관련 정책은 면밀한 한옥실태조사를 생략한 채 추진되어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한옥의 품격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한옥의 성능향상은 한옥기술개발 R&D(2009~2013, 국토해양부)사업 등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나, 新한옥 품격의 근간이 되는 기존 한옥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지향점의 혼란이 예상된다.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한옥 설계 · 시공 · 자재 업체들에 대한 대국민 정보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사업의 목적은 국내 목구조 건축물 허가현황을 분석하여 한옥산업의 현황을 검토하고, 한옥 설계. 시공, 자재 등 한옥관련 사업체 현황 및 관련 DB를 구축하여 한옥관련 정책수립 및 한옥건축의 보급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또한 한옥산업 DB의 장기적인 관리방안 및 한옥산업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의 내용

본 사업의 주된 목표는 한옥산업 DB의 종류 가운데 한옥생산 관련 업체 정보를 구축하는데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한옥산업에 대한 이론고찰 및 한옥산업 현황조사, 한옥산업 DB구축, 한옥산업 DB 관리방안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한옥산업 DB 구축을 위하여 한옥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범위를 설정하며, 국내·외의 건설업역 체계와 관련된 정책 및 법·제도, 지자체별 한옥사업 추진현황 등을 고찰하여 한옥산업의 종합적인 이해와 정보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옥산업의 적용대상 범위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DB 구축을 위하여 내용적, 시간적 범위 설정 및 한옥산업의 유형 구분하였다.

둘째, 한옥건축산업 현황조사 부문에서는 기존 한옥산업 현황 및 동향 조사 연구를 검토하였으며, 한옥산업 현황조사의 방향을 설정하여 최근 5년간의 한옥건축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국내 건설산업에서 한옥산업의 입지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한옥산업 DB구축 부문에서는 한옥산업DB 구축의 가치와 필요성을 검토하고, 한옥산업 관련 업체 정보 구축을 위하여 문화재 수리업체, 지자체별 한옥사업 관련 업체, 한옥 관련 기관 및 협회 관련 DB를 검토하

여 전국단위의 한옥산업 DB 구축을 실시하였다.

넷째, 한옥산업 DB 관리방안 부문에서는 건설산업의 DB 구축 및 관리 사례를 검토하고, 한옥산업 DB의 특성 및 지속적인 관리방향 및 체계를 제시하였다.

Ⅲ. 연구의 결과

한옥 건축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목조주택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역 체계에서 한옥 및 목조건축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산업규모 및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 한옥건축 관련 업종으로 마무리 공사만을 실내건축공사업에 포함되어 전문건설업으로 별도 구분되어 있지 않은 반면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에서는 목공관련 업종을 명확히 전문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산업의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옥의 건축적 수요를 목재를 활용한 건설산업으로 연계시켜주기 보다는 건축 부재로써 활용하는 건축소재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목조건축산업이 현실과 부합하지 못한 건설산업 위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옥 및 목구조 관련 전문건설업종의 분류체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축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목구조 건축물의 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07~2011년) 8배 이상의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특히 단독주택 용도의 목구조 건축물의 비율이 8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신축 허가된 목구조 건축물 용도현황은 단독주택이 38,312건으로 전체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2종근린생활시설(7.1%), 제1종근린생활시설(7%), 창고시설(2.1%), 숙박시설(1.6%)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는 최근 국내 건설산업 경기가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내지 않으며, 특히 영세건설업체의 실적지수가 침체기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목구조 건축산업의 두드러진 성장은 건설산업의 성장 동력으로서 한옥산업의 잠재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지역별 한옥관련 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전체 업체수의 25.78%인 124개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74.22%인 357개사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설계업체 49개사, 시공업체 25개사로 총 74개사가 한옥 생산관련 업체로 조사되었으며, 전국의 한옥업체수 대비 15.38%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수도권 지역인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설계업체 8개사, 시공업체 42개사로 총 50개사가 한옥 생산관련 업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대비 10.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및 지방의 한옥 업체는 전국적으로 357개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체의 74.22%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 행복마을 조성사업 등 한옥에 대한 지원 및 업체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전라남도가 설계 34개사, 시공 47개사, 자재업체 52개사를 포함하여 총 133개사가 활동하여 전국의 27.65%가 분포하는 등 수도권 보다 많은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라남도의 한옥지원 사업의 운영 목적이 전라남도 내로 한옥관련 업체 정착을 유도하고, 도내 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를 지원대상의 자격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 지역에 비하여 전라남도에도 활동하고 있는 한옥관련 업체의 객관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하였으며, 한옥관련 자재 업체를 포함하고 있어 업체의 분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경상북도가 설계업체 35개사, 시공업체 56개사로 총 91개

사가 운영되어 전체의 18.92%가 분포하고 있으며, 전라북도가 총 35개사로 7.28%, 경상남도가 31개사로 6.44%를 차지하며 뒤를 잇고 있다. 충청남도는 22개사로 4.57%, 강원도는 17개사로 3.53%, 충청북도는 16개사로 3.33%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는 분포 비율이 높지 않다.

우리나라 한옥설계 업체는 서울에 49개사, 경기도에 8개사가 분포하여 수도권에 57개사가 분포하는 등 전체의 약 35%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경상북도 지역이 35개사로 가장 많은 설계업체가 위치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34개사, 전라북도 17개사 등의 순으로 분표하고 있다. 한옥 시공업체의 경우 경상북도에 56개사, 전라남도에 47개사, 경기도 37개사, 경상남도 27개사, 서울 25개사 순으로 분포하며, 설계업체에 비하여 비교적 수도권 집중화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Ⅳ. 한옥산업 DB의 관리 및 활용방안

□ 한옥산업 DB 관리방향

한옥산업 DB 구축 및 관리는 한옥이라는 건축적 특성(정보의 객관성)과 건설 산업적 특성(정보의 최신성), 수요의 특이성(정보의 활용성)을 반영하여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한옥산업 DB의 객관성이다. 건축적 의미로 한옥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한옥 건축에 관련된 설계, 시공, 자재업체를 선별하여 한옥산업 DB로 구축하는 일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한옥의 품질 함양과 부실시공 방지, 한옥 유지·보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옥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의 객관적인 자격요건 및 지정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한옥산업 DB의 양질(良質)성이다. 일반적으로 DB 구축사업의 주된 목적 및 성과는 DB의 양적 팽창에서 시작되지만 특히, 건설산업 중에서도 한옥산업의 경우 DB의 양적 확보보다는 최신 정보로의 갱신 및 보완을 통하여 양질의 DB를 생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과거로부터 구축되어 온 산업 DB는 해당 산업의 지난 동향을 분석하고, 산업전망을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하지만, 현재 한옥을 짓고자하는 건축주 및 설계·시공 관련 업체들에게는 현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DB가 필요하다.

셋째, 한옥 수요자를 위한 한옥산업 DB의 활용성이다. 한옥산업 DB는 정보 수집자의 일방향적인 정보 구축보다는 한옥산업에 관련된 생산자와 미래의 한옥 건축주인 수요자를 연계하고, 또한 생산자들 간의 한옥기술 및 자재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다(多)방향의 소통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한옥산업 DB 구축 및 관리는 정보수집자 주도형의 일방적 DB 구축 및 일방향의 정보제공 체계가 아닌 한옥 건축 참여자들이 건설 활동을 통하여 생산하는 다양한 정보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는 양방향의 DB구축 시스템 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 한옥산업 DB 활용방안

첫째, 한옥 생산에 관련된 업체를 전국단위로 조사하고, 업체의 규모 및 한옥관련인력, 사업규모 등의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관련된 DB는 한옥산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지속적인 한옥생산 관련 업체에 대한 통계지표의 구축은 한옥산업의 변동과정과 추후 산업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한옥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반적인 한옥산업의 구조 및 체계 파악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어 한옥산업의 진흥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둘째, 기존 문화재 중심의 한옥산업 체계에서 신한옥의 개념에 부합하는 한옥산업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서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사업 활성화를 유도 가능하다. 주로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활동하는 한옥산업은 민간 건설산업의 성장동력으로서 건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최근 지식정보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건설산업과 관련된 각종 건설통계정보를 보다 많은 정보 수요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산화 시스템이 개발되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한옥산업의 경우, 정보를 구축하는 분류 체계와 시스템의 설계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정보 제공자와 수요자의 사용이 용이한 시스템이여야 한다.

넷째, 한옥산업은 한옥건축의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고급 인적자원의 활동이 핵심적이므로 인적자원의 수준이 한옥의 질과 더불어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된다. 한옥 건축과 관련된 업체의 DB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실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옥 전문 기술인 현황을 관리하고, 경력 및 전문 단체를 지정해 줌으로써 한옥 기술자의 고용을 확대,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한옥산업의 진흥을 유도할 수 있다.

주제어 : **한옥**, **한옥산업**, **한옥산업** DB, **한옥업체** DB

차 례

1장. 서론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흐름 ……………………………………………………………5

2장. 이론 고찰 ……………………………………………………………………11

1. 한옥산업의 정의 및 범위 설정 ……………………………………………11
   1) 한옥산업의 다양한 가치 ……………………………………………………15
   2) 한옥산업의 정의 및 범위 …………………………………………………22
2. 한옥산업관련 정책 동향 ………………………………………………………26
   1) 한옥 클러스터 산업 …………………………………………………………27
   2) 한옥산업 관련 건설업역 제도 ……………………………………………31
   3) 소결 및 시사점 ………………………………………………………………54
3. 소결 : 한옥산업 현황의 문제점 ………………………………………………57

3장. 한옥산업 현황 조사 …………………………………………………………63

1. 한옥산업 현황 조사의 배경 및 목적 ………………………………………63
2. 국내 건설산업 동향 ……………………………………………………………65
   1) 국내 건설산업 동향 …………………………………………………………65

2) 국내 건설 업체 등록 현황 ······76
3. 한옥산업 현황 조사 ······85
1) 기존 한옥산업 조사 ······85
2) 2012 한옥산업 현황 조사 ······89
4. 소결 ······109

4장. 한옥산업 DB구축 ······113

1. 한옥산업 DB구축의 필요성 ······113
1) 한옥산업 DB ······113
2) 한옥산업 DB 구축의 가치 ······118
3) 한옥산업 DB 구축의 필요성 ······122
2. 한옥산업 DB구축 방안 ······124
1) 한옥 업체 DB 구축 방향 ······124
2) 문화재청 DB ······125
3) 전라남도 한옥산업 DB ······130
4) 한옥관련 기관 및 단체 DB ······139
3. 한옥산업 관련 업체 현황 ······145
1) 전국단위 한옥업체 현황 ······145
2) 지역별 한옥업체 분포 현황 ······147

5장. 한옥건축산업 DB 관리방안 ······153

1. 건설산업 DB 관리 사례 ······153
2. 한옥산업 DB 관리방향 ······165

6장. 결론 ······173

1. 요약 ······173

2. 한옥산업 DB 활용방안 ······177

참고문헌 ······181
부록 1. 한옥 관련 사업체 목록 ······191

표 차례

[표 1] 한옥산업 DB 구축의 대상 범위 ······6
[표 2] 한옥 건축산업과 관련된 건설업역의 주요 변천과정 ······17
[표 3] 한옥의 구성요소별 특징 ······23
[표 4] 한옥시공 작업 공정 ······24
[표 5] 건설업종 분류체계 ······35
[표 6] 건설업의 한옥관련 업종 및 업무내용 ······36
[표 7]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37
[표 8] 건설업종 별 업무내용 ······37
[표 9] 건설업체 현황 ······41
[표 10] 북미산업분류시스템의 건설분야 분류체계 ······44
[표 11] 캘리포니아주 C등급 전문건설업 분류체계 ······45
[표 12] 캘리포니아주 D등급 전문건설업 분류체계 ······47
[표 13] 영국 건설업체 분류체계 및 현황(2010년 기준) ······51
[표 14] 일본 건설업 분류체계 및 현황 ······53
[표 15] 국내외 건설업역 체계 비교 ······55
[표 16] 한옥 건축산업과 관련된 건설업역의 주요 변천과정 ······57
[표 17] 용도별 건축허가 추이(2009~2011년) ······68
[표 18] 지역별 건축허가 추이(2009~2011년) ······69
[표 19] 지역별 건축착공 추이(2009~2011년) ······71
[표 20] 용도별 건축착공 추이(2009~2011년) ······72
[표 21] 건수기준 CEAI 지수 추이 ······75

[표 22] 금액기준 CEAI 지수 추이 ……………………………………………………………………75
[표 23] 무실적 업체비중 추이 ……………………………………………………………………76
[표 24] 2011년 건설업체 증감현황 ……………………………………………………………76
[표 25] 연도별 건설업체 등록 추이 ……………………………………………………………78
[표 26] 건설업 겸업추이(누계) …………………………………………………………………80
[표 27] 지역별 건설업체 현황(2011) …………………………………………………………82
[표 28] 건축행정정보의 범위 ……………………………………………………………………92
[표 29] 신축 건축물 대비 목구조 건축물 허가 연면적 비율 ………………………………95
[표 30] 우리나라 전체 건축허가면적 현황 (단위 : 천㎡) ……………………………………96
[표 31] 지역별 신축 목구조 건축물 허가 건수 ………………………………………………98
[표 32] 신축 허가받은 목구조 건축물 용도 현황 ……………………………………………101
[표 33] 신축 허가받은 목구조 건축물 사업 면적 ……………………………………………103
[표 34] 2011년 신축 허가받은 목구조 건축물 용도별 사업 면적 …………………………105
[표 35] 신축을 제외한 목구조 건축물 허가 현황 ……………………………………………107
[표 36] 신축 건축물 대비 목구조 건축물 허가 연면적 비율 ………………………………110
[표 37] 한옥산업 DB의 종류 ……………………………………………………………………117
[표 38] 2단계 국가DB구축 추진계획(2011～2015년) 분야별 과제현황 ……………………121
[표 39] 문화재수리업 등의 종류 및 구분 ……………………………………………………125
[표 40]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요건 …………………………………………………………126
[표 41] 문화재수리 기술자 및 기능자 종류 …………………………………………………127
[표 42] 문화재수리업등 등록현황 (2011.12.31) ……………………………………………128
[표 43] 문화재수리업 등록현황 DB 내용 ……………………………………………………128
[표 44] 문화재수리기술자 현황 (2011.12.31) ………………………………………………129
[표 45] 문화재수리기능자 현황 (2011.12.31) ………………………………………………129
[표 46] 전라남도 한옥시공 등록업체 해당 건설업종 ………………………………………135
[표 47] 문화재수리 기술자 및 기능자 종류 …………………………………………………135
[표 48] 전라남도 시공업체 지정조건 변경 내역 및 사유 …………………………………136
[표 49]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 …………………………………………136

[표 50] 전라남도 한옥업체 지정 현황(2012년 기준) ……138
[표 51]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139
[표 52] 우리나라 전체 건설업체 동향(단위, 업체수) ……146
[표 53] 지역별 한옥 업체 분포 현황 ……149
[표 54]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추진연혁 ……155
[표 55]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구성체계 ……157
[표 56] 건설행정정보의 범위 ……159
[표 57] 공고종류 ……160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 흐름도 ······8
[그림 2] 국가한옥정책 현황 ······27
[그림 3] 한옥산업화 목표 ······28
[그림 4] 우리나라 건설업 자격제도의 변천 과정 ······34
[그림 5] 연도별 계약액, 기성액, 업체수 현황 ······65
[그림 6] 건축허가 증가율 추이(2006~2011년) ······67
[그림 7] 건축착공 추이(2006년 1분기~2011년 4분기) ······70
[그림 8] CEAI 지수 추이 ······74
[그림 9] 건설업체수 추이 ······77
[그림 10] 종합공사업 업체수 추이 ······79
[그림 11] 전문공사업 업체수 추이 ······79
[그림 12] 2011년 12월말 지역별 · 업종별 건설업체 비중 ······81
[그림 13] 전년도 동분기 대비 2011년 4분기 지역별 건설업 전체 증감률 현황 ······83
[그림 14] 전년도 동분기 대비 2011년 4분기 지역별 종합공사업체 증감률 현황 ······83
[그림 15] 전년도 동분기 대비 2011년도 4분기 지역별 전문공사업체 증감률 현황 ··84
[그림 16] 건축행정정보화 추진경위 ······94
[그림 17] 지역별 신축 목구조 건축물 허가건수 ······97
[그림 18] 신축 목구조 건축물 용도분포 현황 ······99
[그림 19] 신축 전체 목구조 건축물 및 단독주택의 허가 건수 현황 ······100
[그림 20] 신축 허가받은 목구조 건축물의 설계 · 시공업체 등록현황 ······106
[그림 21] 지역별목구조 건축물 신축 및 증개축 허가 비교 ······108

[그림 22] 건설산업 DB 구성의 예 ······114
[그림 23] 한옥 업체 리스트 확보 방안 ······124
[그림 24] 행복마을 전략 ······131
[그림 25]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절차 (출처 : 전라남도청) ······132
[그림 26]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자격취득 절차 및 경력기준 ······140
[그림 27] (사)한국목조건축협회, 목조건축 품질인증절차 ······141
[그림 28] (사)한국목조건축협회 회원사 정보 구축 예 ······142
[그림 29]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회원사 정보 구축 예 ······144
[그림 30] 전국 한옥업체 분포 현황도 ······150
[그림 31] KISCON 개발과정 ······155
[그림 32]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구성체계 ······156
[그림 33] 건설행정정보 처리 절차 ······158
[그림 34] 건설CAL시스템 현황 ······163
[그림 35]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업무범위 ······164
[그림 36] 연도별 부도업체수 추이 ······169
[그림 37] 한옥산업 DB 구축 및 관리의 다양한 주체 ······170

Ⅰ. 서론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흐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옥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가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한옥관련 정책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고, 한옥건축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기술 개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한옥건립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한옥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한옥관련 사업체 현황 및 한옥 관련 시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는 미비한 상태임
- 현재 한옥관련 사업체 현황 및 산업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사업체 DB 구축 및 통계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많은 한옥관련 정책은 면밀한 한옥실태조사를 생략한 채 추진되어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한옥의 품격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

- 한옥의 성능향상은 한옥기술개발 R&D(2009~2013, 국토해양부)사업 등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나, 新한옥 품격의 근간이 되는 기존 한옥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지향점의 혼란이 예상
- 특히,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한옥 설계 · 시공 · 자재 업체들에 대한 대국민 정보제공이 필요한 시점임

○ 일반적으로 특정분야의 산업통계는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기준 해당 업종으로 분류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한옥의 경우 한옥산업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업종이 없는 실정임.

- 기존 통계청의 건축물 현황 및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한옥 관련자료 정리하는 것도 한옥 및 한옥산업에 대한 범위 설정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얻기가 어려움
- 한옥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전국단위 통계 및 실태조사 자료 부재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옥정책 수립에 난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개소(’11.5)에 따라 한옥 관련 조사의 기획 · 운영 ·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 확보

- “新한옥플랜” 대통령보고(‘10.5)시 ‘국가한옥센터’ 설치계획 보고

※ 국가한옥센터(新設) : 한옥 정책개발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한옥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대국민 홍보 등 추진

- 국토해양부 협의 결과, 한옥 관련 전문인력과 연구성과를 갖추고 일반 도시 · 건축 분야 연구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건축도시공간분야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국가한옥센터 설립(’11.5)

□ 연구의 목적

○ 따라서 본 사업은 한옥산업의 현황을 검토하고, 설계, 시공, 자재 관련 업체의 기본정보를 구축하여, 한옥관련 정책수립 및 한옥건축의 보급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고, DB 활용방안 및 한옥산업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흐름

1) 연구의 내용

○ 본 연구는 이론고찰 및 한옥산업 현황조사, 한옥산업 DB구축, 한옥산업 DB관리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세부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2장 이론고찰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한옥산업 DB 구축을 위하여 한옥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범위를 설정하며, 국내·외의 건설업역 체계와 관련된 정책 및 법·제도, 지자체별 한옥사업 추진현황 등을 고찰하여 한옥산업의 종합적인 이해와 정보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함

○ 3장 한옥건축산업 현황조사 부문에서는 기존 한옥산업 현황 및 동향 조사 연구를 검토, 한옥산업 현황조사의 방향을 설정하여 최근 5년간의 한옥건축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국내 건설산업에서 한옥산업의 입지와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 4장 한옥산업 DB구축 부문에서는 한옥산업DB 구축의 가치와 필요성을 검토하고, 한옥산업 관련 업체 정보 구축을 위하여 문화재 수리업체, 지자체별 한옥사업 관련 업체, 한옥 관련 기관 및 협회 관련 DB를 검토하여 전국단위의 한옥산업 DB 구축을 실시함

○ 5장 한옥산업 DB 관리방안 부문에서는 건설산업의 DB 구축 및 관리

사례를 검토하고, 한옥산업 DB의 특성 및 지속적인 관리방향 및 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 한옥산업의 대상 정립 및 범위, 유형 등 설정

> 1.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과제 98.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국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의 〈2〉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에 부합
> 2.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건축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추진전략으로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한옥의 보전·재생·활용을 제시
> 3.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건축기본법』 시행('08.6)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 통계, 건축물 현황, 건축에 관한 인식도 등에 대한 조사 근거 마련
> 4. 서울시 한옥지원 조례,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 전라남도 한옥 지원조례, 경주시 건축조례, 여수시한옥보조금지원조례 등 검토

○ 한옥산업의 적용 대상 범위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DB 구축을 위하여 내용적, 시간적 범위 설정 및 한옥산업의 유형 구분

○ 한옥의 설계와 시공에 참여하는 인적 · 물적 네트워크 정보는, 우선 각종 한옥 설계 및 공사의 실적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현재 문화재실측설계업체, 보수단청업체, 조경업체 등 문화재청에 등록된 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옥지원사업 참여업체, 한옥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를 포함함

○ 한옥산업 DB 구축의 적용 대상의 범위를 설계업체, 시공업체, 자재업체로 설정하고, 전국단위로 업체정보 수집

[표 1] 한옥산업 DB 구축의 대상 범위

<table>
<tr><th>구분</th><th>설계업체</th><th>시공업체</th><th>자재업체</th></tr>
<tr><td>전통한옥
관련 업체</td><td>문화재청 등록
문화재 실측업체</td><td>문화재청 등록
보수단청업체</td><td rowspan="2">목재, 석재,
기와, 황토,
창호, 기타</td></tr>
<tr><td>신한옥관
련 업체</td><td colspan="2">-한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관련 업체
-한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회원사</td></tr>
</table>

□ 전국단위 한옥건축 관련 업체 정보 수집(DB구축)

○ 전통한옥 관련 업체 : 문화재청 등록 문화재 실측업체와 문화재 보수 단청업체 목록 정리

○ 신한옥 관련 업체 : 지자체 한옥조례 등을 통한 한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중 실제 개보수 및 신축 지원 사례가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에 관계된 업체 목록 정리

○ 한국전통건축협회,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사)한국목조건축협회 등 한옥 관련 단체 및 협회 등의 회원사 포함

○ 최근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이루어진 각종 한옥관련 사업들에 관여한 업체 및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소개된 한옥 설계 및 시공업체 포함

2) 추진 방법

□ 문헌조사 및 관련 인터넷 사이트 검색

○ 한옥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추진 현황조사, 한옥산업 현황조사를 위해 한옥 관련 법제도, 국내·외 건설업역체계, 지자체 한옥사업, 한옥산업 조사와 관련된 보고서들을 검토

□ 현지답사 및 관련 사업 담당자 면담

○ 한옥관련 사업체 현황 및 시장특성 분석을 위해 한옥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한옥문화과와 전라남도 행복마을 조성사업 담당자를 인터뷰하였으며, 각 지역의 한옥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조사

□ 전문가 자문

○ 한옥산업 동향조사를 위한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 틀에 대해 한옥 및 산업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한옥관련 사업체 조사방법 및 조사 항목 등을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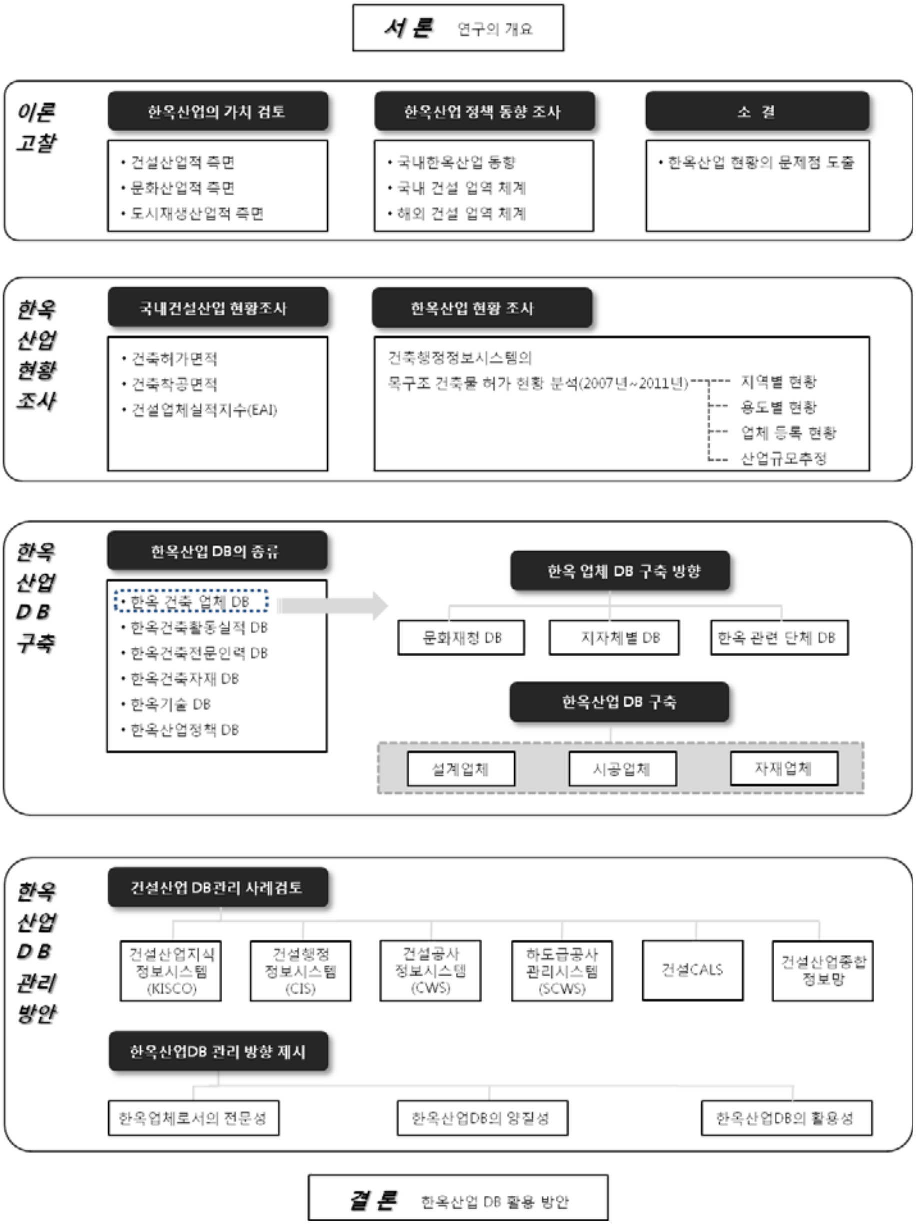
서 론 연구의 개요
이론 고찰
한옥산업의 가치 검토
• 건설산업적 측면
• 문화산업적 측면
• 도시재생산업적 측면
한옥산업 정책 동향 조사
• 국내한옥산업 동향
• 국내 건설 업역 체계
• 해외 건설 업역 체계
소 결
• 한옥산업 현황의 문제점 도출
한옥 산업 현황 조사
국내건설산업 현황조사
• 건축허가면적
• 건축착공면적
• 건설업체실적지수(EAI)
한옥산업 현황 조사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목구조 건축물 허가 현황 분석(2007년~2011년)
지역별 현황
용도별 현황
업체 등록 현황
산업규모추정
한옥 산업 DB 구축
한옥산업 DB의 종류
• 한옥 건축 업체 DB
• 한옥건축활동실적 DB
• 한옥건축전문인력 DB
• 한옥건축자재 DB
• 한옥기술 DB
• 한옥산업정책 DB
한옥 업체 DB 구축 방향
문화재청 DB
지자체별 DB
한옥 관련 단체 DB
한옥산업 DB 구축
설계업체
시공업체
자재업체
한옥 산업 DB 관리 방안
건설산업 DB관리 사례검토
건설산업지식 정보시스템 (KISCO)
건설행정 정보시스템 (CIS)
건설공사 정보시스템 (CWS)
하도급공사 관리시스템 (SCWS)
건설CALS
건설산업종합 정보망
한옥산업DB 관리 방향 제시
한옥업체로서의 전문성
한옥산업DB의 양질성
한옥산업DB의 활용성
결 론 한옥산업 DB 활용 방안

[그림 1] 연구 흐름도

Ⅱ. 이론 고찰

제2장 이론 고찰

1. 한옥산업의 정의 및 범위 설정
2. 한옥산업관련 정책동향
3. 소결

1. 한옥산업의 정의 및 범위 설정

○ 한옥산업이란 '한옥', '산업'이 조합된 용어이며, '산업'은 용어의 정의와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아직까지 개념적·기술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한옥'이 조합됨으로써 '한옥산업'의 새로운 용어 정의 및 범위 설정이 필요함

□ 한옥이란

○ 한옥은 소중한 건축문화자산으로써 선조들의 생활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금 시대의 생활에 맞추어 변화되고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음

○ 한옥은 대한의 '한(韓)'과 집을 뜻하는 '옥(屋)'으로 이루어져, 단순히 전통적인 옛집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억과 생활을 담고 있는 건축형태임

- 한옥이라는 용어는 1907년부터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 1975년에 우리말사전에 '우리나라 고유의 양식으로 지은 집을 양식 건물에 상대하여 부르는 말'로 설명하여 등장하였음

○ 이후 1960년대 이후 양옥이나 개인주택, 공동주택 등에 밀려 한옥건설은 점차 위축되었으며,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집'이라는 용어가 한옥을 의미하지 않게 됨

- 한옥이란 용어의 역사는 길지 않으며, 그 범위와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채 사용되어 왔음

○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한옥'이라는 용어가 각종 논문 및 연구보고서, 당행본 등에 빈번하게 기재되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건축형태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자리잡아 갔음

○ 200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한옥을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그 이후 서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옥의 보존 및 활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에 '한옥'을 정의하고 있음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16호에서는 한옥을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1호에서는 한옥을 '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중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 한옥을 우리나라의 건축자산으로 보존하고, 한옥문화를 우리 주거문화의 일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소통되고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는 개념정의가 필요함

○ 한옥의 사전적·법적 의미는 문화재, 사찰, 고건축 등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지어진 건축으로 보다 넓은 의미로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범위를 전통적인 목구조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현대생활에서 융화될 수 있는 가옥형태인 주거중심의 신한옥의 개념으로 한정하기로 함

□ 산업이란

○ 산업은 경제학에서는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집합을 말하지만 그 동일상품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용도가 같은 제품일지라도 제품 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비자들은 그 제품에 상당한 차이를 두기 때문임[1)]

○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산업을 “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적 기업이나 조직으로 농업 · 목축업 · 임업 · 광업 · 공업을 비롯한 유형물의 생산 이외에 상업 · 금융업 · 운수업 · 서비스업 따위와 같이 생산에 직접 결부되지 않으나 국민 경제가 불가결한 사업도 포함하며, 좁은 뜻으로는 공업만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는 산업을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으로, 산업 활동을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 활동의 범위에는 영리적 · 비영리적 활동이 모두 포함되나, 가정 내의 가사 활동은 제외하고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

○ 산업 가운데에서도 건설산업의 규모는 국내 총생산(GDP)의 18.8%인 146조원에 이르며, 건설관련 종사자 수도 산업전체의 8.2%를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에 중요한 기반산업임

○ 건설산업은 생산물, 산업조직 및 체계 그리고 생산방식 등에서 다른

---

1) 김안호, 이의영(2004) 「산업조직론」, 도서출판 두남.

산업과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며[2], 다음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냄

- 첫째, 건설생산은 주로 주문에 의해 이루어지며, 수요자(발주자)의 요구가 있어야 건설활동이 시작된다는 특징 때문에 건물이나 시설물은 사전적으로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고 가격도 설계도서를 근거로 추산된 생산원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에게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 둘째, 건설활동은 장소 고정적이며 이는 이동이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게 되어 장소고정적 건설산업은 지역성을 가지게 되었음. 최근 교통·통신의 발달로 건설산업의 지역성이 어느 정도 극복되었지만 건설자재와 인력 등은 지역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 셋째, 건설산업의 생산물은 종류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다양하함. 건설산업의 최종생산물은 수요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지만 건설생산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다양한 건설서비스가 생산됨
- 넷째, 건설생산은 장기간에 걸쳐 다단계로 이루어지며, 기획, 설계, 시공, 유지보수, 철거 등의 단계마다 생산주기가 길고 완공 후에도 건물이 소멸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유지보수라는 건설생산이 이루어짐
- 다섯째, 건설생산물은 연계성이 강함. 즉, 우선 설계도서가 생산되고 이에 따른 시설물이나 건축물이 생산되며, 생산된 건축물을 유지보수관리하는 활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건설단계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이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야 비용이 절감되고 품질이 확보될 수 있음
- 건설산업은 단일사업이지만 생산단계별로 업역이 형성됨. 공종별로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전기공사와 설비공사, 소방공사는 그 법률적 위계를 달리하고 있을 정도임

2) 김재영, 이형찬(1998) '건설산업의 종합적 관리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p.23.

1) 한옥산업의 다양한 가치

○ 오늘날 한옥이 가지는 가치를 통하여 한옥산업이 가지는 산업적,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알아보고자 함

○ 전봉희(2009)는 한옥의 가치를 역사적 · 문화적 가치, 정서적 · 경관적 가치, 도시재생적 가치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3)]

> “ 문화재 한옥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듯이, 한옥은 전통 생활문화를 담는 그릇이며, 민족문화의 공간적 무대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역사적 · 문화적 가치를 갖는다. 한편, 서울 북촌이나 전주 한옥마을의 예에서 보듯이, 한옥은 그 하나의 혹은 그것이 밀집하여 거리와 동네를 이루어 우리의 도시건축 경관을 보다 한국적으로 만드는 정서적 · 경관적 가치를 갖는다. 또, 한옥은 전남의 행복마을 조성 사례에서 보듯이, 농촌 과소화(寡少化)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친환경 녹색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들은 모두는 동시에 미래 산업으로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다.”

○ 본 연구에서는 한옥산업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건설산업, 역사 · · 문화산업,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검토하고자 함

① 건설산업으로서의 한옥산업

○ 전통한옥 가운데 일부는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상당수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콘크리트 건축물로 재개발되었음

- 한옥은 전통적인 품격을 지닌 주거, 불편한 주거라는 국민적 인식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으며, 고가의 건축비로 중산층이 향유하기 어울리지 않는 주거 형태로 인식되어 옴

○ 이러한 가운데 1990년대 정부의 1, 2, 3차 치산 녹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도자 임목 축적량이 꾸준히 늘어나게 되면서 국산재의 자급률이 증가되었음[4)]

---

3) 전봉희(2009) ‘신한옥 보급 활성화를 위한 현황과 과제’ 건축역사연구 제18권 5호, p.152.

- 따라서 국산목재의 활용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 졌으며, 그 대안으로 목재를 활용한 가설재, 화장실, 야외전시장, 어린이 놀이 시설물, 목재 담장 등 간단한 건축물이나 건축 내장재, 시설물 재료가 대부분으로 목재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한 경우로 보기 어려움

○ 최근 정부의 한옥육성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으로 한옥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주거공간으로써 친근하게 다가오고, 탄소배출에 대한 국제적 관심에 의해 친환경 건축재료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되어 목재는 친환경 건축재료로써 건축계의 주요 화두로 등장하게 됨

○ 한옥은 목재를 구조재로 하여 흙, 돌, 나무, 종이 등을 끼움재로 사용하고, 철물을 일부 장식재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건축임[5)]

○ 그러나 아직까지 한옥의 건축적 수요를 목재를 활용한 건설산업으로 연계시켜주기 보다는 건축 부재로써 활용하는 건축소재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목조건축산업이 현실과 부합하지 못한 건설산업 위계 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건설업의 업역제도는 적정한 시공을 통하여 발주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업자를 선정하고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6)]

- 건설업 업역체계는 1958년 「건설업법」이 제정된 이래 1970년대 초반까지는 10개 업종 이내로 미분화 상태를 보였으나, 해외건설 시장에 참여하면서 건설업전문화로 1997년 35개 업종으로 최대치를 보인 후 현재 34개 업종을 갖추고 있음

---

4) 한재수(2009) '한옥의 산업화 어떻게 가능한가', 건축역사연구 제18권 3호, p.135.
5) 전봉희(2009) '신한옥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현황과 과제', 건축역사연구 제18권 5호, p.152.
6) 김헌중(2011) '목구조기술자 양성제도 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목조건축연구소, p.20.

[표 2] 한옥 건축산업과 관련된 건설업역의 주요 변천과정

개정일	주요 변경 내용
1958. 3.11	건설업법의 제정
1958. 6. 5	건설업법 시행령의 제정
1975.12.31	건설업의 종류를 3대별(일반 · 특수 · 단종 공사업) 목공사업을 포함한 18개 업종의 전문건설업 신설
1989. 7.18	목공사업을 의장공사업으로 명칭 변경
1996.12.30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
1999. 8. 6	의장공사업을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명칭 변경

〈김헌중(2011) '목구조기술자 양성제도 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p.20.〉

○ 「건설산업기본법」의 정의에 의하면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의미함

- "건설업"이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의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함
-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리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業)을 말함

○ 한옥 건축과 관련된 업무 영역은 국내의 건설업역 체계 안에서 하나의 단일화된 건설업역으로 인정되기 보다는 목재를 사용한다는 건축 자재적 특성만을 고려하여 불명확한 위치에 있는 것이 현실임

○ 한옥산업의 활동주체는 제도적으로는 건설업역 안에서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건설용역업, 주택건설업의 사업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음

○ 「주택법」제9조 제1항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에 관하여 정의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5.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 · 절차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적(人的) 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② 문화적 측면으로서의 한옥산업

- 2001년 제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문화'를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의 특유한 정신적 · 물질적 · 지적 · 감성적 특징의 총체로 간주되어야 하며, 문화는 예술 및 문학 뿐 아니라 생활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음

- 문화산업은 프랑스푸르트학파의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에 의해 체계화된 용어이며, 그들은 대중문화의 문제를 다루면서 문화산업을 매우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았음[7)]

  - 그러나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고 승부처가 바로 문화산업"이라고 지적하였고,

7)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종합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기반사회에서 문화산업은 현재와 미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여겨질 만큼 중요시되고 있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호에서는 문화산업을 "문화상품의 기획 · 개발 · 제작 · 생산 · 유통 · 소비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 · 개발 · 제작 · 생산 · 유통 ·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영화 · 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 나. 음악 · 게임과 관련된 산업
> 다. 출판 · 인쇄 · 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 바.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문화콘텐츠 · 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 · 광고 · 공연 · 미술품 · 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 · 가공 · 개발 · 제작 · 생산 · 저장 · 검색 ·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아.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 자.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 · 박람회 · 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 · 박람회 · 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한옥산업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문화산업의 정의 가운데 제2호 1호의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아.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등에 포함될 수 있음

- 그러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문화산업은 직접적적인 문화산업 자체에 대한 관심은 미약하며, IT를 활용한 디지털문화컨텐츠,

미디어 · 디자인산업 등의 진흥에 치중되어 있음

- 최근에는 기존의 시행령에서 포함하고 있던 전통적인 소재 · 기법 ·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거와 관련된 산업의 정의를 조문에서 삭제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의 부분인 한옥산업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임

○ 1999년 건축문화의 해를 기념하여 발간된 '건축문화자산 백서'에서는 건축이 인류의 문화환경을 구축하는 바탕이 되며, 그 시대의 거울로서 인류문화의 자산이 된다고 규정하고, 삼국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화재를 비롯한 전통 · 근대 · 현대건축을 망라함을 명시하고 있음

○ 건축문화로써 한옥에 대한 인식제고가 국민을 문화적으로 순화,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한옥이 한국문화의 정체성과 보편성 확보에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음

③ 도시재생사업으로서의 한옥산업

○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의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 재생뿐만 아니라 사회 · 문화 · 경제적 재생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요소 중에서 역사 · 문화 환경을 보전하고 재생하여 도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인식시키는 것은 도시를 보다 가치 있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음[8)]

○ 도시는 생성, 성장, 쇠퇴의 과정을 통해 경제적, 문화적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문화적 의미와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건축물, 구조물, 도로, 구역 등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줌으로써 삶의 연속성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함[9)]

---

8) 강홍빈(1986)「역사환경의 유지와 보존」, 도시문제, 238호, pp.33~41.
9) 심아름(2011)'근대 역사문화환경의 보전을 통한 도시재생 방안에 대한 연구 ',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8..

○ 근대 역사문화 환경을 근대기의 공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대 이전의 시간부터 근대를 거쳐 현재까지의 의미에서 재해석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환경 요소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여 도시재생의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음[10)]

○ 한옥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주거형태가 아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건축·문화자산으로서 '한옥'이 가지는 거주문화의 정서적 안정감과 현대 공동주택 주거문화에서 느끼기 어려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한옥은 지역재생의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자립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한옥은 지역민의 삶에 담긴 총체적 의식과 행위를 포괄하는 지역문화 형성의 배경이 되며, 지역민의 가치과, 동질성, 연대성의 근간이 됨

○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가진 한옥은 도시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민의 자긍심을 유발하고 지역특성을 강화시킴

○ 한옥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지역 교유의 도시경관을 형성함으로써 도시공간환경의 어매니티를 증진시킴

○ 도시 경쟁력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전통과 첨단, 인공과 자연 등이 조화된 도시공간 조성은 생활환경의 어매니티를 증진시킴

○ 한옥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재인식함으로써 지역민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옥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활동을 통하여 주민 상호간의 교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음

○ 한옥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지역 연대감를 강화시킬

---

10) 한영숙 외(2004) '오래된 도시문화 근린의 재생을 위한 생활문화가로 구상', 한국도시설계학회

수 있음

○ 한옥은 지역 고유의 특성을 지닌 한옥을 적절히 활용, 관리하여 지역민의 고용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

- 서울의 북촌, 전주의 한옥마을이 좋은 사례이며, 한옥을 활용하여 역사와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도시 및 지역으로 재탄생
-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

2) 한옥산업의 정의 및 범위

○ 한옥산업은 한옥이라는 역사적 전통과 우리의 문화를 담고 있는 건축 자산이라는 의미로 보면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한옥을 생산하는 건설산업으로써 한옥산업의 범위로 한정고자 함

○ 곧, 한옥산업이란 한옥을 설계하고 시공 완료되기까지의 일련의 생산·제공 과정을 포함하며,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적 활동을 모두 지칭하기로 함

○ 현대의 한옥은 건축하는 공법과 사용되는 재료 및 공구, 기계의 발달로 여러 형태로 건축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둥, 벽, 창, 바닥, 지붕, 채, 마당으로 구성되고, 또한 각 부분에 따라 대목장, 소목장, 자재 분야가 각각 나누어짐

○ 하나의 한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약 25개의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공정부문별로 참여하는 기술인의 분야가 다름[11)]

- 예로, 지붕잇기(와공), 전기설비·구들놓기(배관관련 기능공), 기단

11) 한국목조건축연구소(2011) '목구조기술자 양성제도 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p.88.

쌓기(콘크리트공), 창호달기(소목공), 단청(화공) 등

[표 3] 한옥의 구성요소별 특징

구성요소	특성	성격
기둥	한옥을 구성하는 구조로써 확장 시 공간의 분할과 변용을 가능하게 함	전통적 요소
벽, 창	각 실의 연결방식은 일반적으로 안마당이나 대청을 향해 열리고 공간적 연계성과 개방성이 중시됨 외부에 대해서는 폐쇄적이나 내부에서는 개방적으로 각 실에 영행을 주게 됨 벽을 통하여 시선 축을 연장하여 공간감을 확장하거나 공간의 가변적 성격을 주기도 함	가변적 요소
바닥	전통적 중정형 주택의 특징으로서 단차이에 따라 공간의 위계가 정해짐	전통적 요소
지붕	지붕의 형태에서 평면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전통주거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요소임	전통적 요소
채	ㄱ 자형 한 채와 ㅡ 자형 또는 ㄴ 자형의 문간채가 함께 ㄷ 자형이나 뚫린 ㅁ자를 이룸 대청을 중심으로 연결되거나 마당을 통해서 연결됨	전통적 요소
마당	채와 채를 연결해 주는 중심적인 공간으로서 가변적이고도 융통성 있는 공간계획을 유도함	전통적 요소 매개적 요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0)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종합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p. 145〉

[표 4] 한옥시공 작업 공정

한옥건축	작업			
A. 건축계획 및 도면해독	A-1. 계획	A-2. 도면설계	A-3. 배치	A-4. 수량산출 및 자재반입
B. 기초공사	B-1. 부지정리	B-2. 터파기	B-3. 지정하기	B-4. 기초콘크리트 공사
C. 골조공사	C-1. 초석놓기	C-2. 기둥설치	C-3. 보아지설치	C-4. 창방설치
	C-5. 주두, 소루설치	C-6. 장여설치	C-7. 보 설치	C-8. 도리설치
D. 지붕틀 공사	D-1. 서까래 걸기	D-2. 부연걸기	D-3. 추녀걸기	D-4. 개판깔기
	D-5. 박공설치	D-6. 적심깔기		
E. 마감공사	E-1. 수장공사	E-2. 반자공사	E-3. 마루공사	

〈참고 : 한국목조건축연구소(2011) '목구조기술자 양성제도 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p.87.〉

○ 또한 한옥건축을 위한 석재, 목재, 기와, 창호, 설비 등 한옥건축 재료의 생산 및 제조업 분야에 관련된 건축자재업체를 포함할 수 있음

○ 한옥이 기단, 주초, 담장 등에 사용되는 원석 및 가공석, 자연석, 을 공급하는 업체

- 원석 채석업체은 국내 원석(산석, 자연석)을 공급하는 업체
- 원석 수입업체는 국외 원석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업체
- 원석 가공업체는 원석을 원하는 규모의 크기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업체로 국내·외 가공업체가 있음

○ 한옥건축에 사용되는 목재를 공급하는 산림업, 목재수입업, 제재업, 집성목제조업, 기계가공업체

- 산립업은 전통한옥에 사용할 목재(소나무)를 공급하는 업체
- 목재수입업은 국내 목재 수급이 어려워 외국산 원목을 수입하여 공

급하는 업체

- 제재업은 원목 자체를 일정 규격으로 제재하여 현장에 공급하는 업체
- 집성목제조업은 집성목을 원하는 형태와 규격으로 만들어 현장에 공급하는 업체
- 기계가공업은 집성목이나 원목을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여 현장에 공급하는 업체

○ 전통한식기와, 개량형 한식기와 등 신한옥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와 제조공급업체

- 전통한식기와제조업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한식기와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업체
- 개량형 한식기와제조업은 현대식방법으로 전통한식기와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업체

○ 전통창호 및 현대식 창호(유리창문, 방충망 창호 등) 제조 및 공급업체

○ 창호 및 벽체 마감을 위한 한지 등의 한옥 마감재 제조 및 공급업체

○ 한옥건축 전기가설공사, 조명기구제조업 등 한옥전기설비업체

○ 본 연구에서는 한옥산업의 대상을 한옥생산에 관련되는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체로 하며, 한옥 생산 공정별로 보면 한옥건축 공정과정에서 "건축계획 및 도면 해독" 단계를 한옥건축 설계 분야, "기초공사", "골조공사", "지붕틀공사", "마감공사"를 한옥 시공 분야로 분류하고 마지막으로,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수반되는 자재를 가공 및 조달하는 한옥건축자재업체를 포함하여 한옥산업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함

- 한옥의 설계·시공에 참여하는 업체의 DB 구축은 한옥조성 활성화 및 대중화를 위한 기초연구가 될 수 있으며, 건축산업으로써 한옥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2. 한옥산업 관련 정책동향

□ 국가 차원의 한옥진흥 정책 추진

○ 2007년 정부는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스타일 육성 방안을 발표하였음

- 한스타일 육성 방안의 세부과제는 한옥을 포함하여 한글, 한식, 한복, 한시, 한국음악 등이 있음

○ 2009년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되면서 녹색경제, 녹색산업의 창출, 그린IT국가 건설 등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로 함

○ 국토해양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옥기술개발(R&D) 사업을 통하여 한옥건축의 현대화 및 산업화를 추진 중에 있음

○ 한옥기술개발(R&D)사업은 크게 4개 세부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음

- 1세부는 한옥 통합시공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대량생산기반 가공시스템 구축, 대량생산을 위한 시공표준화 개발
- 2세부는 한스타일 개발을 통한 한옥모델개발
- 3세부는 한옥 성능요소 개발을 목표로 부재요소 성능향상, 화재 안전 및 관리 기술 개발
- 4세부는 한옥건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웹기반 한옥 정보통합 DB 구축 및 객체기반 3차원 Library 구축, 한옥 통합 DB구축

○ 국토해양부에서는 한옥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주거문화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한옥 클러스터 사업 등 14개 과제를 비롯하여 23개의 한옥관련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림 2] 국가한옥정책 현황
〈출처 : 남해경(2012) '2차 전국순회포럼 자료집' 국가건축정책위원회〉

1) 한옥 클러스터 사업[12)]

□ 사업의 배경

○ 한옥 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위한 한옥관련 국가 홍보자료 제작 필요

○ 국토해양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농수산 식품부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 한옥정책의 활성화와 지자체 한옥산업 시너지 효과 극대화

○ 국격향상을 위한 신한옥플랜으로 한옥의 보급·확산, 기술개발 및 산업화, 한옥의 보전·관리, 한옥의 적극적 활용방안 구축

○ 현재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서 한옥산업 클러스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토해양부 R&D 연계과제로 한옥 목재의 부재 표준화, 목재산업육성을 위한 과제 시행

---

12)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2) '2012 제2차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포럼', p.53-57.

[그림 3] 한옥산업화 목표

○ 인프라 구축 등 2015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

○ 인프라 구축사업 완료 후 한옥 보급화 및 경제 활성화 기대와 관련 목재 및 부재 산업에 대한 시장 확대를 기대

○ 한옥산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 시기를 맞추어 현재 인천항만공사에서는 인천 북항 배후단지에 규모 33,000㎡를 목재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언급하였고, 전라남도에서는 2016년 까지 장흥 우드랜드 전남 목공예센터 일원에 사업비 230억을 투입해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발표

○ 현재 국가지원 한옥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으며 대부분 지자체에서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및 사업비에 대한 자체부담 사항을 발표하는 등 한옥클러스터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사전준비를 진행

□ 사업의 필요성

○ 우수한 한옥기술의 현대화 · 보편화를 위한 기술개발의 필요

○ 한옥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열린 개념과 열린 구법으로 열려있는 기술 개발 필요

○ 생활양식과 공간적 대응의 역학관계를 규명하며 현대적 생활양식과 여러 현대적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모듈과 공간모델 도출

○ 현대적 수요성능에 따른 전통기술을 활용한 건설자재개발과 구조체의 현대화 기술, 효율적인 시공기법 개발 필요

○ 우수한 한옥 기술을 현대의 삶에 맞게 개량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향유할 수 있도록 보편화 시킬 수 있는 제반기술의 개발과 문화산업육성 환경 필요

○ 불편감수를 전제로 하는 문화적 아집과 편견이 아닌 실제적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 산업기반구축, 인력양성 및 관리방안 마련

○ 현재 전북 지역내에 대규모 목재산업이 없는 실정으로 전주한목마을 유지관리 및 완주군 한옥보급화 정책으로 인해 소요되는 목재를 광주 등 주변지역에 보급 받고 있는 실정으로 전북 지역내 좋은 품질의 목재 확보를 통해 지역 고유문화인 한옥 계승발전 도모

○ 정부의 그린홈 200만호 건설 정책은 국내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며 향후 목재 시장 규모에 대응하기 위해 목재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산업화 기반조성 및 자국의 기술력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현재 목재산업이 1조2천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런 산업에 부응하기 위해 목재산업 기반시설 조성과 민 · 관 · 학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한옥 및 목재산업에 대한 기술력 확보 및 인력창출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국내 사업진행 현황

○ 전북 순창군에서는 숲 치유, 산림문화, 휴양, 레저 등 특색 있는 숲을 조성하여 산림문화 수요에 대비하고자 함

- 산림테라피밸리는 2011~2013년까지 3년에 걸쳐 순창군 동계면 용궐산 및 무량산 일원에 316ha 범위로 조성되며 60억원의 사업비 투입

○ 전북 장수군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2011~2013년까지 총 52억(국비80%, 지방비 20%) 투자하고 약 25ha 부지에 목재 문화체험관과 세계 목재건축물 모형, 목재조형물, 목가구 등을 전시하고 은퇴자 목재문화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관광명소화 추구

○ 전라남도는 2016년 까지 230억을 투자해 장흥 우드랜드 전남 목공예센터 일원에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 발표

○ 한옥형 관광호텔(영산재) 조성

- 전라남도는 2011년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특색 있는 관광숙박시설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 영암군에 한옥형 관광호텔 건립
- 전남개발공사에서 120억 원(국비 · 도비 40억, 자비 80억) 투자

○ 전라남도 영암군, 제1회 한옥건축박람회 개최

- 전라남도 전통한옥문화를 복원하여 대중화하고 관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영암군 구림마을 내 약 400억 규모 투자를 통해 한옥시공시연회 및 한옥모델하우스전시, 전시관, 체험행사 및 관련 세미나 개최

○ 경상북도 영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 2012년까지 국비 40억, 도비 3억, 군비 7억 등 총 50억 규모로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여 목재 제품개발과 목가공 기능공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운영 예정

○ 평창군 ‘포레스토피아 산림산업특구’ 지정 추진

- 평창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산업 특성 및 여건분석을 통해 산림휴양문화와 한방바이오, 목재산업, 녹색체험마을 등 4개 부문의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이중 1~2개를 선정하여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할 계획

□ 한옥 클러스터 사업의 기대효과

○ 한옥부재의 집적화 및 총괄 관리를 통해 운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 및 비용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 자체 평가 기준을 적용한 부재 관리로 최적의 한옥 시공 가능

○ 국내외에 한옥부재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함

○ 한옥 부재가공, 설계, 시공, 유통을 일괄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다양한 기술력 축적 및 신뢰성 확보

○ 한옥 부재 자체 관리 기술력 확보로 지역별 고유한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수 있으며, 현재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와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및 기술력 확충 가능

○ 지역 내 새로운 관광자원 창출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한옥산업 관련 건설업역 제도

○ 한옥산업이 우리나라 건설업역 체계 안에서 차지하는 입지를 검토하기 위해 국내·외 건설업역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함

○ 건설산업의 업역은 특정 범주에 속하는 사업자들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사업 활동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업역은 특정 산업 또는 업종 전체에 대하여 설정되는 데 비하여 건설산업의 업역은 산업 내부에서 생산활동 유형별로 배타적인 사업 영역이 광범위하게 형성되는 특징을 보임[13]

○ 건설산업 업역은 면허 및 등록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건설 생산의 공종 또는 기능별로 개별법을 통하여 일정 자격 기준의 획득을 요구하고 있음

① 국내 건설업역 체계 속에서 한옥산업의 입지

○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업역체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업역의 종류 및 업무범위가 구분되며, 이 안에서 한옥산업의 업역을 검토하고자 함

○ 국내의 건설산업 업역제도는 다음의 제도적 규제 장치를 가지고 있음

- 특정 업종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 기준의 자격 획득을 요구함
- 면허 또는 등록 업종간에 상호 겸업을 규제하는 겸업제한제도
-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에게만 특정 업종의 수주 및 생산활동을 허용하는 발주 및 생산 체계상의 규제 제도를 둠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역 구분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산업을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 설계 · 감리 등을 담당하는 건설용역업으로 구분함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을 일반건설업 5개업종과 전문건설업 29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세부 공종별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 건설업에 속하는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문화재관리업과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은 각각 개별법으로 자격 기준을 설정
- 건설용역업은 건축설계업, 엔지니어링업, 감리전문업 등으로 구분되

13) 윤영선(2012) "한국 건설산업의 업역주의에 관한 문화적 고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p.7.

며, 각기 개별 법령에 의거 별도의 자격 기준을 설정

○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등은 포함하지 않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뉘며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의

□ 국내 건설업역제도의 변천 과정

○ 건설업의 업역체계는 1958년 「건설업법」이 제정된 이래 1970년 초반까지 10개 업종으로 미분화 상태를 보였으나, 해외건설 시장에 참여하면서 건설업전문화로 1997년 35개 업종으로 최대를 보인 후 최근 현재 34개 업종으로 정리

- 1975년 건설업의 종류를 3그룹(일반공사업, 특수공사업, 단종공사업)으로 구분하고 18개 업종의 전문공사업을 신설하여 이를 단종공사업으로 명명하였으며, 이 때 "목공사업"이 최초 신설되었음

- 1989년 「건설업법」개정을 통하여 "목공사업"이 "의장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96년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1999년 "의장공사업"이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르게 됨

○ 국내 건설업종은 1958년 토목공사(1~4등급), 건축공사(1~4등급), 전문적 공사(13종)로 최초 구분되었으며, 1961년 5월 「전기공사업법」 제정으로 전기공사 관련 업종이 삭제되었고, 1962년부터 토목공사, 건

축공사, 토목건축공사, 특수공사업으로 구분된 업종체계 유지

○ 1976년 건설업의 전문화와 계열화를 목적으로 전문분야의 공사를 주로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단종공사업이 탄생하였으며, 이를 위한 겸업제한과 영업범위 규정이 도입

○ 이후 업종 구분과 겸업에 대한 몇 차례 변경이 있었으며 2012년 현재 일반건설업(5종), 전문건설업(29종)의 형태를 구성하게 됨

○ 국내 건설업 자격제도는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변천되어 왔음

- 1958년 3월 건설업체 정비차원에서 점수제를 최초 도입하였으나, 그 효과가 미비하여 바로 폐지하고, 같은해 9월 건설업체 정비 및 대 · 중 · 소 건설업체의 균형발전을 튀하여 토목, 건축업을 1~4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에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세분화환 등급제 시행
- 1961년 5월, 등급별 공사도급이 제한됨에 따라 공사도급 하한선을 넘기 위한 자회사 설립 등 업체의 난립과 업체간 반목, 등급제 폐지에 대한 건설업계의 강력한 요청으로 폐지하고 기술, 자본, 시설, 경력 등을 기준으로 하는 능력주의 면허제도를 도입
- 1999년 8월에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건설업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영업활동과 개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면허제도를 폐지하고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면허제						등록제
1958.3		1958.9		1961.5		1999.8
점수제		등급제		능력주의		등록제도
면허기준 항목별 점수합계가 600점 이상 업체 대상	⇒	1-4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른 면허요건 세분화	⇒	기술, 자본, 시설, 경력 등을 기준으로 하는 능력주의 면허제도	⇒	업종별 등록기준에 의한 등록신고제도

[그림 4] 우리나라 건설업 자격제도의 변천 과정

□ 국내 건설업 체계 안에서 한옥산업의 위치

○ 현재 건설업종은 토목, 건축 등 일반건설업 5종과 실내건축공사, 토공사, 석공사 등 전문건설업 29종으로 분류되어 있음

- 건설업종 구분체계는 전문건설업종의 경우 건축 관련 업종은 공사부위 및 자재를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토목 관련 업종은 독립적인 공사 종류 단위로 구분하고 있음

- 전기 · 정보통신 · 소방공사, 문화재수리업 등은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법률로 규정하여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

- 일반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는 25개 전문업종 가운데 철강재, 삭도, 준설, 승강기, 가스, 난방,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7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할 수 없음

[표 5] 건설업종 분류체계

구분	건설업종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토목공사업
	2. 건축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산업 · 환경설비 공사업
	5. 조경공사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실내건축공사업
	2. 토공사업
	3. 미장 · 방수 · 조적공사업
	4. 석공사업
	5. 도장공사업
	6. 비계 · 구조물해체공사업
	7. 금속구조물 · 창호공사업
	8. 지붕판금 · 건축물조립공사업
	9. 철근 · 콘크리트공사업
	10. 기계설비공사업
	11.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12. 보링 · 그라우팅공사업
	13. 철도 · 궤도공사업
	14. 포장공사업
	15. 수중공사업
	16. 조경식재공사업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18. 강구조물공사업
	19. 철강재설치공사업
	20. 삭도설치공사업
	21. 준설공사업
	22. 승강기설치공사업
	23.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24.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25.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26. 난방시공업(제1종)
	27. 난방시공업 (제2종)
	28. 난방시공업 (제3종)
	29. 시설물유지관리업

○ 현재 우리나라는 목조건축산업을 실내건축의 마무리 공사부문으로 인정하여 전문업종인 실내건축공사업에 포함시켜 운용하고 있음

[표 6] 건설업의 한옥관련 업종 및 업무내용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전문공사 를 시공하는 업종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실내건축공사,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 ·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 한옥건축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목조주택을 기반으로하는 건설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역체계에서 한옥 및 목조건축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산업규모 및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옥의 건축적 수요를 목재를 활용한 건설산업으로 연계시켜주기 보다는 건축 부재로써 활용하는 건축소재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목조건축산업이 현실과 부합하지 못한 건설산업 위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상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7]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 장비 · 사무실
실내건축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사무실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표 8] 건설업종 별 업무내용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 개량하는 공사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 · 환경설비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제거 · 감축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 관리 · 조정에 따라 수목원 · 공원 · 녹지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전 문	1.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3. 미장 · 방수 · 조적공사업	·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 플러스터 · 회반죽 · 흙 등을 바르거나 내 · 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 ·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 방수공사: 아스팔트 · 실링재 · 에폭시 · 시멘트모르타르 ·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 · 방습 ·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 ·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 로울러 ·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6. 비계 · 구조물 해체공사업	·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7. 금속구조물 · 창호공사업	·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 · 합성수지 ·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 벽체 ·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 · 경계 · 방호 · 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 온실설치공사: 농업 · 임업 ·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8.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ㆍ지붕ㆍ판금공사: 기와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아스팔트쉬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ㆍ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ㆍ외벽ㆍ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9.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10.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11.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ㆍ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ㆍ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12.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13. 철도ㆍ궤도공사업	철도ㆍ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14.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ㆍ수선공사
15. 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16.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18. 강구조물공사업	ㆍ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ㆍ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ㆍ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ㆍ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19. 철강재설치공	ㆍ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 · 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
20. 삭도설치공사업	삭도를 신설 · 개설 ·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21. 준설공사업	하천 ·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22. 승강기설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 해체 ·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23.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 집단공급시설 · 저장소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 변경공사
24.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25.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26. 난방시공업(제1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 · 주철재보일러 · 온수보일러 ·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 축열식 전기보일러 · 태양열집열기 · 1종압력용기 · 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 · 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27. 난방시공업 (제2종)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 용량 5만 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 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 · 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28. 난방시공업 (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 · 금속요로의 설치공사
29. 시설물유지관리업	·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 정비하고 개량 · 보수 · 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건축물의 경우 증축 · 개축 · 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 ·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 보수 · 보강공사

○ 건설업 자격제도의 변천에 따라 건설업체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왔는데, 1970년 848개의 일반건설업체가 있었으며 1980년대 면허요건 완화 등으로 3,002개 업체로 증가하였고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0년 4월 기준 일반건설업체 12,265개, 전문건설업체 45,351개 업체로 총 57,616개 건설업체가 등록되어 활동 중에 있음

[표 9] 건설업체 현황

구 분(연도)	합 계(수)	일 반(수)	전 문(수)
1970	848	848	–
1975	669	669	–
1980	3,002	516	2,486
1985	5,319	492	4,827
1990	6,760	918	5,842
1991	7,383	912	6,471
1992	14,133	1,700	12,433

1993	13,828	1,633	12,195
1994	20,381	2,651	17,730
1995	22,579	2,958	19,621
1996	25,385	3,543	21,842
1997	28,063	3,896	24,167
1998	29,640	4,207	25,433
1999	34,855	5,151	29,704
2000	39,801	7,978	31,823
2001	47,533	11,961	35,572
2002	49,308	12,643	36,665
2003	49,358	13,064	36,294
2004	50,848	13,110	37,738
2005	53,594	13,254	40,340
2006	53,844	13,020	40,824
2007	55,301	12,942	42,359
2008	56,066	12,711	43,355
2009	57,000	12,402	44,598
2010.1月	56,916	12,309	44,607
2月	57,070	12,275	44,795
3月	57,436	12,285	45,151
4月	57,616	12,265	45,351

〈출처 : 국토해양부(2010)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설정책관〉

② 해외 건설업역 체계 속에서 한옥 관련 업역의 입지

- 미국의 건설업역 체계

○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업종별 등록기준에 의하여 등록에 의한 영업을 하는 통일된 건설업 체계가 아닌 주정부 별로 개별적인 기준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이는 미국 51개 주마다 각기 다른 건설업 면허제도와 등록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미국 건설업종을 명확

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움

○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는 면허제도이며, 알라스카주는 등록제도이고 일리노이주는 면허 및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등 각 주별로 건설업 운영체계가 상이함

○ 따라서 미국의 건설업 업종분류체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미산업분류시스템(NAICS,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에 따른 건설업 분류체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북미산업분류시스템(NAICS)

○ 미국은 1997년부터 북미산업분류시스템(NAICS,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통합하여 만든 시스템으로 3개국은 이 시스템에 맞추어 산업활동의 성과와 생산성, 인건비, 고용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NAICS에서 건설분야(23 Code)는 크게 건축부문(6개), 토목부문(6개), 전문건설업부문(19개)으로 나누고 있음

○ 그러나 NAICS에 따른 건설산업 분류체계는 면허의 개념이 아니라 생산활동의 결과물 또는 생산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의 유사성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미국 건설업종 분류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참고 기준으로 적합함

○ 미국의 건설업역 대분류 구분은 국내와 유사하게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설계·엔지니어링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업역이 법률에 의해 규정되는 국내와는 달리 건설기업이 업무범위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국 건설기업의 유형은 A(Architect), E(Engineer), EC(Engineer-Contractor), CE(Consulting-Engineer), AE(Architect-Engineer) 등 다양하게 나타남

[표 10] 북미산업분류시스템의 건설분야 분류체계

Codes	Titles	Number of US Businesses
23	Construction	1,466,475
236115	New Singel-Family Housing Construction (except Operative Builders)	336,655
236116	New Multifamily Housing Construction (except Operative Builders)	41,773
236117	New Housing Operative Builders	8,385
236118	Residential Remodelers	94,409
236210	Industrial Buildings Construction	14,855
236220	Commercial and Institutional Building Construction	59,714
237110	Water and Sewer Line and Related Structures Construction	16,562
237120	Oil and Gas Pipeline and Related Structures Construction	2,302
237130	Power and Communication Line and Related Structures Construction	2,685
237210	Land Subdivision	33,752
237310	Highway, Street, and Bridge Construction	26,309
237990	Other Heavy and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3,600
238110	Poured Concrete Foundation and Structure Contractors	35,350
238120	Structural Steel and Precast Concrete Contractors	3,293
238130	Framing Contractors	44,431
238140	Masonry Contractors	28,898
238150	Glass and Glazing Contractors	7,337
238160	Roofing Contractors	40,288
238170	Siding Contractors	6,304
238190	Other Foundation, Structure, and Building Exterior Contractors	1,614
238210	Electrical Contractors and Other Wiring Installation Contractors	121,814
238220	Plumbing, Heating and Air-Conditioning Contractors	170,017
238290	Other Building Equipment Contractors	2,871
238310	Drywall and Insulation Contractors	34.976
238320	Painting and Wall Covering Contractors	103,664
238330	Flooring Contractors	21,318
238340	Tile and Terrazzo Contractors	21,120
238350	Finish Carpentry Contractors	7,645
238390	Other Building Finishing Contractors	8,156
238910	Site Preparation Contractors	44,916
238990	All Other Specialty Trade Contractors	121,462

□ 캘리포니아주 건설업 분류체계

○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건설업 면허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는 CSLB(The 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다음 3개 유형의 면허를 발급하고 있음

- A 등급(Class A) 일반 엔지니어링 건설업(General Engineering Contractor) : 원도급자로써 주요 사업은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설물 공사를 대상으로 함
- B 등급(Class B) 일반 건축업(General Building Contractor) : 원도급자로써 주요 사업은 기 완성된 구조물, 시공 중인 구조물, 시공 예정인 구조물 등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시공에서 서로 관련되지 않는 2개 이상의 공종(전문업종)이 포함된 경우에 필요함
- C 등급(Class C) 전문건설업(Specialty Contractor) : 주요 사업은 전문적인 작업과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전문건설업 면허는 40종으로 분류됨

[표 11] 캘리포니아주 C등급 전문건설업 분류체계

Codes	건설업종	내용
C2	Insulation and Acoustical Contractor	단열 및 방음을 목적으로 절연체설치 작업
C4	Boiler, Hot Water Heating and Steam Fitting Contractor	보일러, 온수·난방 및 증기 등과 관련된 배관 작업
C5	Framing and Rough Carpentry Contractor	바닥, 외부 계단 및 난간, 지붕 데크 등의 목공 관련 작업
C6	Cabinet, Millwork and Finish Carpentry Contractor	나무 또는 기타 제품에 관한 마감 공사 작업
C7	Low Voltage Systems Contractor	저전압 시스템(전화, CCTV, 위성안테나 등)설치 및 서비스
C8	Concrete Contractor	콘크리트 관련 작업
C9	Drywall Contractor	석고 보드 및 금속 프레임 등 설치 작업
C10	Electrical Contractor	전기 및 전기에너지를 활용한 시스템을 설치
C11	Elevator Contractor	엘리베이터 관련 설치 및 운영 서비스

Codes	건설업종	내용
C12	Earthwork and Paving Contractors	토공사 및 포장 관련 작업
C13	Fencing Contractor	벽돌 벽을 제외한 울타리, 난관 등 설치 및 수리작업
C15	Flooring and Floor Covering Contractors	바닥 관련 설치 작업
C16	Fire Protection Contractor	화재 예방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서비스
C17	Glazing Contractor	패널, 새시 등의 유리 관련 구조 설치 작업
C20	Warm-Air Heating, Ventilating and Air-Conditioning Contractor	난방, 환기, 에어컨 등의 시스템 설치 작업
C21	Building Moving/Demolition Contractor	건물 철거 관련 작업(구조 변경, 수리 등은 포함되지 않음)
C23	Ornamental Metal Contractor	장식 금속업자가 시행하는 구조 장식 관련 작업
C27	Landscaping Contractor	경관 설치 및 유지 보수 작업
C28	Lock and Security Equipment Contractor	잠금 및 보안 시스템 설치 및 운영
C29	Masonry Contractor	벽돌 공사 관련 작업
C31	Construction Zone Traffic Control Contractor	공사 구역 트래픽 제어 관련 작업
C32	Parking and Highway Improvement Contractor	주차장 및 도로 개선 작업
C33	Painting and Decorating Contractor	페인트를 이용하여 장식, 보호, 내화 및 방수 관련 작업
C34	Pipeline Contractor	파이프 설치 및 관련 작업
C35	Lathing and Plastering Contractor	미장공사 관련 작업
C36	Plumbing Contractor	배관공사 관련 작업
C38	Refrigeration Contractor	냉장 및 에어컨 설비 등의 온도 조절 시스템 설치 작업
C39	Roofing Contractor	지붕 관련 설치 및 수리 작업
C42	Sanitation System Contractor	위생 시스템, 하수처리 관련 서비스 제공
C43	Sheet Metal Contractor	배수구, 팬, 주방설비 등 시트 금속 설치 작업
C45	Sign Contractor	표지판 관련 설치 작업
C46	Solar Contractor	태양 에너지 관련 시스템 설치 작업
C47	General Manufactured Housing Contractor	일반 제조 주택업자가 개별 사이트에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

Codes	건설업종	내용
C50	Reinforcing Steel Contractor	콘크리트 구조물 강화 작업
C51	Structural Steel Contractor	금속 지붕 시스템을 포함, 건물 및 구조물 보강 작업
C53	Swimming Pool Contractor	수영장, 스파 관련 난방기구 설치 작업
C54	Ceramic and Mosaic Tile Contractor	세라믹과 타일 등을 업자가 내부를 꾸미는 작업
C55	Water Conditioning Contractor	물 공급에 관한 모든 것을 서비스하는 작업
C57	Water Well Drilling Contractor	우물, 펌프등의 오염을 방지하기위해 청소 작업
C60	Welding Contractor	용접업자가 충분한 열공급을 위해 금속 가공 작업
C61	Limited Specialty	

○ Class A와 Class B 가 일반건설업, Class C가 전문건설업 분야이며, Class C에서 구분하지 못한 기타 전문건설업 면허를 제한된 전문건설업종(Limited Specialty)인 Class D로 구분하고 있음

[표 12] 캘리포니아주 D등급 전문건설업 분류체계

Codes	건설업종	내용
D03	Awnings	천막 설치 및 수리 관련 작업
D04	Central Vacuum Systems	중앙 진공 시스템 설치 및 수리 관련 작업
D06	Concrete Related Services	콘크리트 관련 업자가 콘크리트 절단, 복원 등의 작업을 수행
D09	Drilling, Blasting and Oil Field Work	홀 드릴링, 수평 시추 작업 및 발파 작업을 위한 시추 작업 등을 수행
D10	Elevated Floors Fencing	나무나 금속 프레임을 이용한 바닥판 설계 작업
D12	Synthetic Products	합성 카운터 상판 및 벽지, 에폭시 등을 합성 코팅 및 방수 처리 작업
D16	Hardware, Locks and Safes	잠금 장치, 안전금고 및 지하실 잠금 설치 작업
D21	Machinery and Pumps	펌프, 컨베이어, 크레인 등의 기계 및 펌프 설치, 삭제 및 수리
D24	Metal Products	금속으로 된 문과 창문, 배수구, 캐비닛 등을 설치 및 수리
D28	Doors, Gates and Activating	모든 종류의 문과 장치를 설치 및 수

Codes	건설업종	내용
	Devices	리
D29	Paperhanging	도배업자는 모든 유형의 장식, 벽지를 설치 작업
D30	Pile Driving and Pressure Foundation Jacking	말뚝을 박거나 케이슨 공법 또는 오거 서비스를 제공
D31	Pole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플래그 기둥을 유지하기 위한 프리캐스트 말뚝이나 장대를 설치 및 유지하는 작업
D34	Prefabricated Equipment	조립식 제품 및 장비를 설치 작업
D35	Pool and Spa Maintenance	수영장과 스파 설치 및 수리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배관, 전기시설등도 작업
D38	Sand and Water Blasting	모래나 물 분사를 이용한 연마작업
D39	Scaffolding	금속이나 나무로 된 비계설치 작업
D40	Service Station Equipment and Maintenance	가솔린, 디젤, 폐기름 저장탱크를 설치하거나 제거하는 작업
D41	Siding and Decking	나무나 알루미늄으로 된 자재를 외부에 설치하는 작업
D42	Non-Electrical Sign Installation	비전기식 간판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작업
D49	Tree Service	나뭇가지를 제거하고 관리해주는 작업
D50	Suspended Ceilings	천장에 반투명 패널을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작업
D52	Window Coverings	창문에 미니블라인드, 스크린, 커튼 등을 설치하고 수리하는 작업
D53	Wood Tanks	냉각탑 또는 저장탱크를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작업
D56	Trenching Only	파이프 라인 재단, 도관등을 트렌칭하는 작업
D59	Hydroseed Spraying	공사 전 액체물질을 바닥 표면에 뿌려주는 작업
D62	Air and Water Balancing	가열 및 냉각 시스템에서의 공기와 물의 균형을 맞춰주는 장치를 설치하는 작업
D63	Construction Clean-up	건설 정화업자가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파편들을 제거 및 청소 작업
D65	Weatherization and Energy Conservation	에너지 절약 전문가가 에너지 절약제품에 관한 유지 보수 서비스 제공

○ 국내의 경우 한옥건축 관련 업종으로 마무리 공공만을 실내건축공사업에 포함하여 지정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의 CSLB에서는 목공관련 업종

으로 Class C에서 “목조, 단순목공(Framing and Rough Carpentry Contrator)", "마무리 목공(Cabinet, Millwork and Finish Carpentry Contractor)" 등 두개 업종(C-5, C-6)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Class D에서도 한 개 업종 "Wood Tanks(D-53)"을 명시하고 있음

- 영국의 건설업역 체계

○ 영국은 건설업 면허 또는 허가제도가 없으며, 건설업체의 자격심사를 통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만이 유자격자 명부(Approved List)에 등록될 수 있으며, 이는 각 발주기관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정부는 건설계약 실패가 최소화되도록 최소한의 규제만 가하고 있으며, 건설업종 또한 제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통계적 목적 등을 위해 영국 표준산업분류체계(United Kingdom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UK SIC)에 의해 구분하고 있음

○ 영국 표준산업분류체계(UK SIC)는 1990년 유럽공동체협의회에서 승인된 표준산업분류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구분하고 있음

○ 연국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건설업 통계연보(Construction Statistics Annual)는 영국 표준산업분류체계(UK SIC)에 기초하여 건설산업을 일반건설업(Main Trade)과 전문건설업(Specialist Trade)으로 분류하고 있음

○ 일반건설업에 대응되는 건설업역을 살펴 보면 건축, 토목사업의 설계·시공·사업관리 등의 서비스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 특징

○ 영국 건설업 통계에 의하면 2010년까지 등록된 건설업체는 모두 25만 6천여 개이며, 일반건설업은 3종류(비주거용 건축, 주거용 건축, 토목건설)로 구분하며, 전문건설업은 목공사를 포함하여 21종으로 분류하고 있음

○ 영국 전체 건설시장의 규모는 평균 연간 268억파운드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시장이 각각 124억파운드, 144억 파운도를 차지하며 전문건설업 시장 규모가 일반건설업 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음

○ 영국의 건설업역 체계에서 목공사업(Joinery installation)는 전문건설업 가운데 11.7%(2010년 기준)로 전기공사업(20.2%), 배관공사업(15.8%)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13] 영국 건설업체 분류체계 및 현황(2010년 기준)

건설 업종		업체수(개)	구성비(%)
일반 건설업	비주거 건축물(Non-residential building)	14,615	23.6
	주거용 건축물(House building)	26,126	42.3
	토목엔지니어링(Civil engineering)	21,066	34.1
	계	61,807	100.0
전문 건설업	해체(Demolition)	422	0.2
	부지조성(Site preparation)	1,671	0.9
	보링(Test drilling and boring)	253	0.1
	지붕공사(Roofing)	6,745	3.7
	도로공사(Construction of highways)	2,299	1.3
	Construction of water projects)	273	0.1
	철도공사(Construction of railways and underground railways)	239	0.1
	Construction of bridges and tunnels	28	0.0
	공조설비공사(Construction of utility projects for fluids)	123	0.1
	전기통신시설공사(Construction of utility projects for electricity and telecommunications)	115	0.1
	기타토목공사(Construction of other civil engineering projects not elsewhere classified)	17,989	9.8
	비계공사(Scaffolding)	6,266	3.4
	전기공사(Installation of electrical wiring and fitting)	36,932	20.2
	배관공사(Plumbing, and heat and air conditioning installation)	28,870	15.8
	미장공사업(Plastering)	3,952	2.2
	목공사업(Joinery installation)	21,412	11.7
	바닥공사(Floor and wall covering)	6,372	3.5
	도장공사(Painting)	11,352	6.2
	유리공사(Glazing)	1,883	1.0
	기타(Other construction work and building installation and completion)	22,099	12.1
	기타특수분야 (Other specialised construction activities not elsewhere specified)	13,374	7.3
	계	182,669	100.0
계		256,441	100.0

〈출처 : UK Construction Statistics Annual 2011〉

• 일본의 건설업역 체계

□ 일본의 건설업 허가제도

○ 일본은 1949년 「건설업법」을 제정하고 등록제를 운영하였으나 1971년 허가제로 전환하였으며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해 특정건설업이 신설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업법」 제정시 허가제를 운영하였고, 1999년 등록제로 전환한 것과는 대조적인 사례임
- 건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설치하고 희망 업종에 따라 건설업 허가를 취득해야 함
- 900만엔 미만 또는 연면적 100㎡ 미만 목조주택, 기타 300만엔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는 허가가 필요 없음(2005년 기준)

□ 일본의 건설업종 분류체계

○ 일본의 건설업종은 공사규모(도급금액)에 따라 "일반건설업"과 "특정건설업"으로 구분되며 복수취득이 가능함

- 일반건설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으로 구분되며, 3,000만엔 이상의 공사에만 참여할 수 있음
- 특정건설업은 목공사업을 포함하여, 비계·토공, 돌, 지붕, 전기, 관, 타일·벽돌·블럭, 강구조물, 철근, 포장, 준설, 판금, 글래스, 도장, 방수, 내장마감, 기계기구설치, 열절연, 전기통신, 조경, 착정공사업, 건구, 수도시설, 소방시시러, 청소시설 등 26개 업종으로 분류
- 특정건설업 중 토공공사, 건구공사, 포장공사, 관공사업, 전기공사업, 조경공사, 강구조물공사 등 7개 업종은 '지정건설업'으로 분류
- 원도급 받은 공사 가운데 3,000만엔(건축은 4,500만엔) 이상을 하도급하기 위해서는 특정건설업 면허를 취득해야만 함

- 일반건설업과 특정건설업은 하도급 공사 규모에만 차이가 있을 뿐 공사 수주 등에는 차이가 없음

[표 14] 일본 건설업 분류체계 및 현황

업종구분	세부업종	업체수	비율(%)	비고
일반건설업	토목	167,227	11.5	
	건축	207,763	14.3	
	계	374,990	25.9	
특정건설업	목공	64,323	4.4	
	좌관	17,264	1.2	
	비계, 토공	166,738	11.5	
	돌	54,767	3.8	
	지붕	30,772	2.1	
	전기	53,105	3.7	
	관	92,350	6.4	
	타일,벽돌,블럭	30,196	2.1	
	강구조물	64,260	4.4	
	철근	11,393	0.8	
	포장	95,544	6.6	
	준설	40,830	2.8	
	판금	15,124	1.0	
	글래스	10,761	0.7	
	도장	42,616	2.9	
	방수	18,777	1.3	
	내장마감	59,463	4.1	
	기계기구설치	18,393	1.3	
	열절연	8,662	0.6	
	전기통신	12,001	0.8	
	조경	35,833	2.5	
	착정공사업	3,285	0.2	
	건구	21,676	1.5	
	수도시설	88,823	6.1	
	소방시설	15,698	1.1	
	청소시설	750	0.1	
	계	1,073,404	74.1	
총계		1,448,394	100.0	

〈이교선(2005) ‘건설 업역구조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소결 및 시사점

○ 현재 우리나라의 한옥건축 관련 건설업역인 목공사는 실내공사업(목재 창호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목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내건축업 면허를 보유하거나 실내건축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진행해야 함

○ 목재를 주 건축재료로 하는 한옥건축 산업은 현재 건설업역 체계에서 목조공사업과 관련된 전문건설업역이 반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목조건축산업이 실내건축공사업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한옥건축 산업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함

○ 미국, 영국, 일본 사례의 경우 전문건설업 내에 목공사업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특히 영국의 경우 전문건설업 시장이 일반건설업에 비해 시장 규모가 크며 목공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우라나라와 미국의 건설업역 구조와 비교해 보면 일반건설업 부문은 우리나라가 캘리포니아 주에 비해 구체적이나, 전문건설업 부문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단순화 구조임

○ 특히 우리나라의 금속구조물/창호, 미장/방수/조적, 기계설비 공사업은 캘리포니아 주에 비해 단순한 구조이며,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업은 토공 및 포장업은 비교적 세분화되어 있음

○ 미국의 경우 전문건설업의 분류가 매우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실질적인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건설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 한옥 건축산업의 적극적인 장려 및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산업 동향 및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구축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의 건설업 분류체계와 마찬가지로 목구조 관련 업종

분야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표 15] 국내외 건설업역 체계 비교

국가	한국	미국 캘리포니아주	영국 UK SIC	일본
분류 체계	일반건설-5종 전문건설-29종	일반건설-2종 전문건설-69종	일반건설-3종 전문건설-21종	일반건설-2종 전문건설-26종
일반 건설업	1. 토목 · 건축 2. 건축 3. 토목 4. 조경 5. 산업환경설비	1. 일반엔지니어링건설업 2. 일반 건축업	1. 비주거용건축 2. 주거용건축 3. 토목건설	1. 토목 2. 건축
전문 건설업	1. 철근콘크리트 2. 토공 3. 기계설비 **4. 실내건축** 5. 금속구조물 · 창호 6. 비계구조물 7. 미장 · 방수 · 조적 8. 상하수도 9. 강구조물 10. 석공사 11. 포장 12. 도장 13. 시설물유지관리 14. 조경식재 15. 가스시설(1종) 16. 지붕 · 판금 · 건축물조립 17. 철강재설치 18. 보링 · 그라우팅 19. 난방공사(1종) 20.수중 21. 조경시설물 22. 준설 23. 승강기설치 24. 철도궤도 25. 삭도설치	1. 단열 및 음향 2. 보일러 · 온수난방 및 스팀 **3. 형틀 · 단순목공** **4. 마무리목공** 5. 저압전기 6. 콘크리트 7. 건식벽체 8. 전기 9. 엘리베이터 10. 토공사 · 포장 11. 울타리 12. 바닥 13. 방화 14. 유리 15. 난방 · 환기 · 공조 16. 건물이동해체 17. 금속장식 18. 조경 19. 시건 · 보안 20. 석공사 21. 공사장교통통제 22. 주차장도로보수 23. 도장 · 장식 24. 파이프라인 25. 미장 26. 배관	1. 철거 2. 부지조성 3. 보링 4. 지붕 5. 도로건설 6. 수리공사 7. 철도공사 8. 교량터널건설 9. 공조시설공사 10. 전기통신공사 11. 기타토목공사 12. 비계 13. 전기공사 14. 배관공사 15. 미장공사 **16. 목공사** 17. 바닥공사 18. 도장공사 19. 유리공사 20. 기타 21. 기타특수분야	**1. 목공** 2. 좌관 3. 비계 · 토공 4. 돌 5. 지붕 6. 전기 7. 관 8. 타일 · 블록 9. 강구조물 10. 철근 11. 포장 12. 준설 13. 판금 14. 유리 15. 도장 16. 방수 17. 내장마감 18. 기계기구설치 19. 열절연 20. 전기통신 21. 조경 22. 착정공사업 23. 건구 24. 수도시설 25. 소방시설 26. 청소시설

	26. 난방공사(2종) 27. 난방공사(3종) 28. 가스시설(2종) 29. 가스시설(3종)	27. 냉장 28. 지붕 29. 하수처리시설 30. 판금 31. 전기신호 32. 태양열 33. 조립식주택 34. 철근 35. 철골 36. 수영장 37. 타일 38. 수질조절 39. 우물시추 40. 용접 41. 기타전문공사 29개 공종		

3. 소결 : 한옥산업 현황의 문제점

□ 불명확한 건설 위계 속의 한옥건축산업

○ (현황) 건설업의 업역제도는 적정한 시공을 통하여 발주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업자를 선정하고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14)

- 건설업 업역체계는 1958년 「건설업법」이 제정된 이래 1970년대 초반까지는 10개 업종 이내로 미분화 상태를 보였으나, 해외건설 시장에 참여하면서 건설업전문화로 1997년 35개 업종으로 최대치를 보인 후 현재 34개 업종을 갖추고 있음

[표 16] 한옥 건축산업과 관련된 건설업역의 주요 변천과정

개정일	주요 변경 내용
1958. 3.11	건설업법의 제정
1958. 6. 5	건설업법 시행령의 제정
1975.12.31	건설업의 종류를 3대별(일반 · 특수 · 단종 공사업) 목공사업을 포함한 18개 업종의 전문건설업 신설
1989. 7.18	목공사업을 의장공사업으로 명칭 변경
1996.12.30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
1999. 8. 6	의장공사업을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명칭 변경

<김헌중(2011)'목구조기술자 양성제도 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p.20.>

○ (문제점) 선진 건설산업의 특징은 무엇보다 건설생산체계의 유연성을 꼽을 수 있는데,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구조는 일반건설업(5종)과 전문건설엄(29종)으로 구분되어 있고, 일반건설업체가 경업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은 7종으로 제한되어 있음

14) 김헌중(2011) '목구조기술자 양성제도 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목조건축연구소, p.20.

- 한옥건축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목조주택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역 체계에서 한옥 및 목조건축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산업규모 및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사례 1)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건설업 면허 체계는 일반 엔지니어링 건설업(Class A), 일반 건축업(Class B), 전문건설업(Class C)으로 구분되며, 전문건설업에서 구분하지 못한 업종은 제한된 전문업종(Limited Specialty)로 구분

- 목구조 관련 업종으로 Class C에서 “목조, 단순목공(Framing and Rough Carpentry Contrator)", "마무리 목공(Cabinet, Millwork and Finishh Carpentry Contractor)" 등 두개 업종(C-5, C-6)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Class D에서도 한 개 업종 "Wood Tanks(D-53)"을 명시하고 있음

○ (사례 2) 영국은 건설업 면허 또는 허가제도가 없으며 건설업체의 자격심사를 통하여 등록될수 있고, 표준산업분류체계(UK SIC)에 기초하여 건설산업을 일반건설업(Main Trade)과 전문건설업(Specialist Trade)으로 분류하고 있음

- 영국 건설업 통계에 의하면 2010년까지 등록된 건설업체는 모두 25만 6천여 개이며, 일반건설업은 3종류(비주거용 건축, 주거용 건축, 토목건설)로 구분하며, 전문건설업은 목공사를 포함하여 21종으로 분류하고 있음
- 영국 전체 건설시장의 규모는 평균 연간 268억파운드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시장이 각각 124억파운드, 144억 파운도를 차지하며, 특히 목공사(Joinery installation)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전기공사, 배관공사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사례 3) 일본은 1949년 「건설업법」을 제정하고 등록제를 운영하였으나 1971년 허가제로 전환하였으며,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해 특정건

설업이 신설되었음. 건설업종은 공사규모(도급금액)에 따라 “일반건설업”과 “특정건설업”으로 구분되며 복수취득이 가능함

- 일반건설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으로 구분되며, 특정건설업은 목공사업을 포함하여, 철골, 토공, 콘크리트 등 26개 업종으로 분류됨

○ (시사점) 국내의 경우 한옥건축 관련 업종으로 마무리 공사만을 실내건축공사업에 포함되어 전문건설업으로 별도 구분되어 있지 않은 반면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에서는 목공관련 업종을 명확히 전문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산업의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옥의 건축적 수요를 목재를 활용한 건설산업으로 연계시켜주기 보다는 건축 부재로써 활용하는 건축소재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목조건축산업이 현실과 부합하지 못한 건설산업 위계 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한옥 및 목구조 관련 전문건설업종의 분류체계 도입이 필요한 시점

Ⅲ. 한옥산업 현황 조사

C·H·A·P·T·E·R·3

제3장 한옥산업 현황 조사

1. 한옥산업 현황조사의 배경 및 목적
2. 국내 건설산업 동향
3. 한옥산업 현황 조사
4. 소결

1. 한옥산업 현황조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전쟁으로 전통 목조건축이 소실되고, 산업화와 대량 주택공급을 위하여 콘크리트와 철골 구조물이 건축재료의 주를 이루게 되었음

○ 그러나 최근 친환경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전통 건축재료인 목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더욱이 한옥의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면서 전통 건축인 한옥을 현대화 하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 2009년 한옥마을이 유네스코 세계문호유산으로 지정되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한옥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 2010년 브라질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 34차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이 한국의 10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음

○ 국토해양부가 조사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1년 이후 목조건축의 허가

및 착공동수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음[15)]

- 2001년 목조건축 허가 및 착공동수는 각 1,252동, 971동으로 집계되었고 이후 서서히 증가하던 목조건축 시장규모는 2006년 들어서면서 급격히 증가하였음(허가 및 착공동수 각 5,654동, 4,282동)
- 이는 2005년 이루어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등 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다층목조건축의 길이 열리는 등 긍정적인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전원주택, 펜션 등이 주도하던 목조건축 시장의 수요가 차츰 신도시 등의 고급 개인주택, 목조 공동주택 등으로 확산되어 나타났기 때문으로 판단됨(김헌중, 2011)

○ 건축시장 전체가 2002년 이후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데 반해, 목조건축시장은 20%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16)]

- 목조건축이 실제 착공된 동수를 기준으로 2005년 이전까지 20% 이상의 성장이 이루어졌고 2006년에는 전년대비 53.1%, 2007년에는 38.5%, 2008년에는 13.4%의 성장을 기록하였음(김헌중, 2011)

○ 그러나 성장하는 한옥건축 시장을 유지·관리 할 법률, 제도, 정책 등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한옥을 일상주거문화로 정착시키고 현대 생활양식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옥을 건축하는 전문 설계·시공 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한옥의 주된 재료들의 생산과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국내 건설산업 현황과 기존의 한옥산업 관련 연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나라 목조 건축산업을 기반으로 한옥산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최신 한옥 산업 동향을 재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15) 김헌중(2011) ‘목구조기술자 양성제도 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목조건축연구소, p.16.
16) 방성준 외(2010) ‘한옥 등 목구조공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국내 전문건설업 신설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6권 제11호, p.120.

2. 국내 건설산업 동향

1) 국내 건설산업 동향

○ 2010년도 우리경제는 ’08년 금융위기 여파가 ’09년까지 이어지면서 위축되었던 경기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인데 힘입어 6.2%의 실질GDP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건설업은 -0.1%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며 부진을 지속하였고, 특히 지난해 3.4% 증가율을 기록했던 GDP대비 건설투자증가율은 -1.4% 감소세로 반전되었음

○ 이에 따라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의 6.3%에서 5.9%로 축소됐으며, 건설업의 경제성장기여율도 0%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양상을 보였음

[그림 5] 연도별 계약액, 기성액, 업체수 현황
〈출처 : 대한건설협회(2011) 「종합건설업조사」, p.5.〉

○ 2010년도 국내건설 기성액[17]은 전년대비 1.4% 감소한 134조 6,996억원, ’10년말 기준 건설업체수는 전년보다 365개사가 감소한 11,956개사로 집계되어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 업체당 평균기성액은 ’09년 110.9억원에서 1.6% 증가한 112.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 2010년 국내건설 계약액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124조 848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 국내 건설산업의 현황 및 경기를 가시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면적, 건축착공면적, 건설업체실적지수 등을 검토하였음

○ 건축허가와 건축착공은 공공부문보다는 민간 건축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향후 건설경기를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선행 건설경기지표임

○ (재)건설산업정보센터는 국토해양부로 위탁받아 관리 · 운영 중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이에 대한 해석을 수록하는 보고서인「건설산업정보리뷰」를 발간하고 있음

○ 「건설산업정보리뷰」에서는 국내 건설경기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건축허가, 건축착공, 건설업체실적지수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지자체와 건설업체 등 정보입력주체가 관련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 · 수정하고 있음

□ 건축허가 동향

○ 우리나라 총 건축허가 면적은 2011년 4분기에는 전년도(2010년) 동분기 대비 14.8% 감소

- 2010년 4분기 이후 2011년 3분기까지 증가하던 건축허가는 4분기에는 14.8%가 감소하였음
-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거용 건축허가는 2010년 4분기에는 23.2%,

17) 건설업체가 당해 연도에 시공한 공사액.

2011년 1분기에는 47.4%, 2분기에는 9.7% 증가하였으며, 3분기에는 무려 119.0%가 증가하였으나, 4분기에는 30.3%가 감소하였음

- 비주거용 건축허가도 2010년 4분기 12.5% 증가이후 2011년 1분기는 11.2%, 2분기 0.6%로 모두 증가하였으며, 3분기와 4분기에도 각각 29.7%와 4.3%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음
- 비주거용 건축허가 중 상업용만 38.0% 증가한데 반해 공업용은 6.5%, 문교사회용은 16.5%, 기타는 16.0%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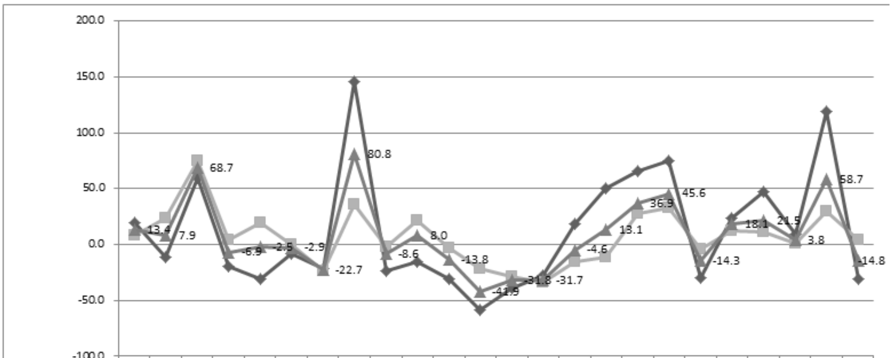

	Q1 2006	Q2 2006	Q3 2006	Q4 2006	Q1 2007	Q2 2007	Q3 2007	Q4 2007	Q1 2008	Q2 2008	Q3 2008	Q4 2008
주거용	20.0	-10.9	59.6	-19.5	-30.5	-8.5	-21.1	145.9	-23.5	-15.9	-30.8	-58.5
비주거용	8.6	23.7	75.0	4.4	19.7	0.5	-23.7	35.6	-1.7	21.2	-2.6	-21.0
총건축	13.4	7.9	68.7	-6.9	-2.5	-2.9	-22.7	80.8	-8.6	8.0	-13.8	-41.9

	Q1 2009	Q2 2009	Q3 2009	Q4 2009	Q1 2010	Q2 2010	Q3 2010	Q4 2010	Q1 2011	Q2 2011	Q3 2011	Q4 2011
주거용	-39.1	-27.5	18.1	50.5	65.9	74.8	-29.3	23.2	47.4	9.7	119.0	-30.3
비주거용	-29.2	-33.4	-15.2	-11.7	27.9	33.4	-4.6	12.5	11.2	0.6	29.7	4.3
총건축	-31.8	-31.7	-4.6	13.1	36.9	45.6	-14.3	18.1	21.5	3.8	58.7	-14.8

[그림 6] 건축허가 증가율 추이(2006~2011년)
〈출처 : 건설산업정보센터(2011)〉

[표 17] 용도별 건축허가 추이(2009~2011년)

(단위: 천㎡, %)

구 분			주거용	비주거용					총건축
				소계	상업용	공업용	문교 사회용	기타	
2009	1/4	실적	3,848	12,461	4,342	2,489	2,795	2,874	16,309
		증감률	−39.1	−29.2	−45.2	−45.2	−9.3	−14.7	−31.8
	2/4	실적	6,899	16,509	6,703	2,451	2,804	4,552	23,408
		증감률	−27.5	−33.4	−43.3	−50.5	−17.9	−2.1	−31.7
	3/4	실적	10,330	15,918	6,069	3,121	2,675	4,052	26,248
		증감률	18.1	−15.2	−17.4	−32.4	−0.2	−1.6	−4.6
	4/4	실적	20,878	18,530	7,041	3,495	2,966	5,028	39,408
		증감률	50.5	−11.7	−5.9	−20.4	−32.7	7.0	13.1
2010	1/4	실적	6,385	15,939	6,012	3,60.	2,514	3,809	22,324
		증감률	65.9	27.9	38.5	44.7	−10.1	32.5	36.9
	2/4	실적	12,062	22,017	7,686	4,528	3,507	6,296	34,079
		증감률	74.8	33.4	14.7	84.7	25.1	38.3	45.6
	3/4	실적	7,302	15,188	5,746	3,336	2,491	3,615	22,490
		증감률	−29.3	−4.6	−5.3	6.9	−6.9	−10.8	−14.3
	4/4	실적	25,715	20,840	7,173	4,018	3,551	6,099	16,555
		증감률	23.2	12.5	1.9	15.0	19.7	21.3	18.1
2011	1/4	실적	9,411	17,719	6,730	3,937	2,122	4,931	27,130
		증감률	47.4	11.2	11.9	9.3	−15.6	29.4	21.5
	2/4	실적	13,234	22,152	9,461	4,642	2,965	5,084	35,386
		증감률	9.7	0.6	23.1	2.5	−15.6	−19.3	3.8
	3/4	실적	15,990	19,696	7,916	4,164	2,398	5,218	35,686
		증감률	119.0	29.7	37.8	24.8	−3.7	44.3	58.7
	4/4	실적	17,922	21,745	9,896	3,757	2,966	5,126	39,666
		증감률	−30.3	4.3	38.0	−6.5	−16.5	−16.0	−14.8

출처 : 건설산업정보센터(2011), 「건설산업정보리뷰」

주 : 증감률은 전년도 동분기 대비

○ 2011년 지역별 건축허가면적은 감소하는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임

- 전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던 3분기와 달리 4분기에는 감소세를 보인 지역이 상당수 늘었음
- 3분기 31.4% 증가하였던 서울시 건축허가는 4분기에는 20.6% 감소하였으며, 점유비는 10.9%로 전분기보다 감소하였음
- 부산은 136.0% 증가에 점유비도 6.6%로 대폭 증가하였음. 대구는 40.9%가 감소하였으며, 점유비도 2.0%로 감소하였음. 인천도

39.8% 감소에 점유비는 5.1%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광주 역시 12.3% 감소에 점유비도 2.2%로 감소하였음. 대전은 24.0% 증가하였으나 전분기 건축허가 면적의 대향 증가(644.5% 증가)로 인해 점유비는 1.8%로 대폭 감소하였음. 울산은 43.7% 증가에 점유비는 2.4%로 소폭 감소하였음

- 충남과 전북, 경남, 제주도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건축허가 면적은 감소하였음. 점유비가 전분기보다 증가한 지역은 경기와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임

[표 18] 지역별 건축허가 추이(2009~2011년)

(단위: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9	1/4	증감률	−50.1	−48.6	−20.0	−42.4	−10.1	−27.8	−73.4	−28.4	2.0	−19.2	−7.4	−24.4	−16.6	−26.8	−43.8	−68.8
		비율	7.5	3.0	2.5	3.7	3.1	2.3	1.6	30.1	4.9	6.2	10.0	4.3	4.8	6.3	9.1	0.6
	2/4	증감률	−73.9	−11.2	−24.6	−32.0	−33.3	−41.3	−63.8	−37.7	28.1	−30.4	−10.5	0.9	15.0	26.1	−35.1	53.7
		비율	6.5	3.4	3.4	4.1	1.4	1.9	1.7	29.4	6.0	4.1	7.2	5.8	5.2	11.1	7.4	1.4
	3/4	증감률	−24.7	8.8	−37.9	−31.9	22.5	−41.6	−9.5	17.5	−25.4	10.8	−10.3	5.4	−20.3	−18.7	12.1	−51.6
		비율	8.3	2.9	2.3	4.2	2.4	1.7	2.6	37.7	3.1	5.8	6.7	4.8	4.4	5.6	6.7	0.8
	4/4	증감률	−16.0	1.5	36.6	70.9	7.4	−81.0	83.5	70.0	7.2	29.8	−30.5	1.8	−16.3	4.5	−17.8	−5.3
		비율	9.4	3.1	2.7	7.9	2.0	1.5	2.4	41.7	3.2	3.9	5.2	3.4	3.3	4.5	4.6	1.2
’10	1/4	증감률	111.0	47.7	5.9	73.2	4.3	7.5	76.2	48.6	−16.0	−6.1	−14.0	59.4	46.2	42.9	27.3	106.9
		비율	11.6	3.2	1.9	4.7	2.4	1.8	2.1	32.7	3.0	4.3	6.3	5.0	5.1	6.6	8.5	1.0
	2/4	증감률	326.3	148.1	−28.3	32.1	328.6	56.1	23.0	25.1	−2.2	46.9	24.7	0.7	39.5	−16.0	11.8	51.4
		비율	19.0	5.7	1.7	3.7	4.2	2.0	1.5	25.3	4.0	4.1	6.2	4.0	5.0	6.4	5.7	1.5
	3/4	증감률	42.8	30.6	26.2	22.9	−23.6	17.0	14.1	−49.6	−1.0	−21.0	−17.2	−7.6	−6.6	29.2	−19.0	123.4
		비율	13.8	4.4	3.4	6.0	2.1	2.3	3.4	22.2	3.6	5.4	6.4	5.2	4.8	8.4	6.3	2.1
	4/4	증감률	47.1	−10.6	28.0	8.3	29.4	−2.4	−30.5	9.5	38.3	−16.2	17.8	62.1	62.7	38.2	32.5	−3.4
		비율	11.7	2.4	3.0	7.3	2.2	1.3	1.4	38.6	3.8	2.8	5.2	4.6	4.5	5.2	5.2	1.0
’11	1/4	증감률	100.9	99.7	112.8	7.1	7.7	45.4	73.4	−8.7	−0.9	13.1	2.0	−2.6	7.7	21.2	16.3	80.5
		비율	19.1	5.3	3.3	4.2	2.1	2.1	3.0	24.5	2.5	4.0	5.3	4.0	4.6	6.5	8.1	1.5
	2/4	증감률	−25.1	−17.6	172.9	109.9	−20.6	31.2	78.7	−23.9	−38.9	4.1	−5.2	11.4	3.3	20.6	62.6	1.1
		비율	13.7	4.6	4.4	7.5	3.2	2.5	2.5	22.4	2.4	4.1	5.6	4.3	5.0	7.4	8.9	1.5
	3/4	증감률	31.4	34.9	36.6	37.1	102.0	644.5	20.9	44.3	38.1	29.5	101.8	11.5	34.1	10.3	128.5	44.2
		비율	11.4	3.8	2.9	5.2	2.7	10.8	2.6	20.2	3.2	4.4	8.2	3.6	4.0	5.8	9.1	1.9
	4/4	증감률	−20.6	136.0	−40.9	−39.8	−12.3	24.0	43.7	−50.2	−5.4	−7.1	50.8	13.7	−22.7	−8.7	96.1	83.4
		비율	10.9	6.6	2.0	5.1	2.2	1.8	2.4	22.6	4.2	3.0	9.2	6.2	4.1	5.6	12.0	2.1

출처 : 건설산업정보센터(2011), 「건설산업정보리뷰」

주 : 증감률은 전년도 동분기 대비

□ 건축착공 동향

○ 2011년 4분기 총건축 착공면적은 전년도 동분기 대비 44.5% 증가

- 2011년 4분기 총 건축착공은 1분기(5.3%)와 2분기(12.3%), 3분기(17.4%) 증가에 이어 4분기에도 4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용도별로는 주거용 건축착공이 142.3%로 대폭 증가하여 상승세를 이어 갔으며, 비주거용도 9.7% 증가하였음
- 비주거용중 상업용은 25.4% 증가하였고 공업용(0.3%)은 감소하였음. 기타는 2.5%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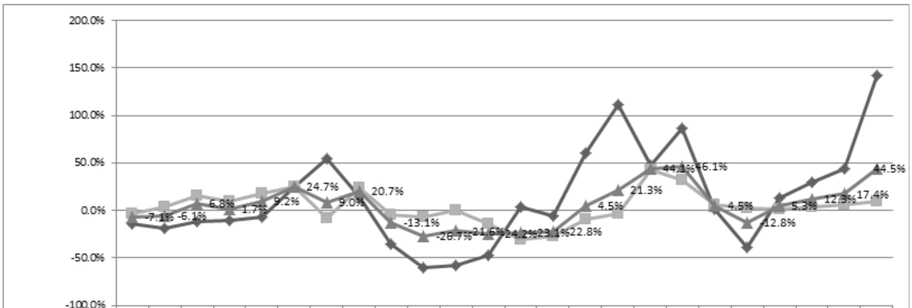

	2006 Q1	2006 Q2	2006 Q3	2006 Q4	2007 Q1	2007 Q2	2007 Q3	2007 Q4	2008 Q1	2008 Q2	2008 Q3	2008 Q4
주거용	-13.9	-18.7	-11.2	-10.8	-7.2%	24.5%	54.6%	14.8%	-34.9	-59.6	-57.8	-47.5
비주거용	-3.3%	3.3%	15.3%	9.1%	17.5%	24.7%	-7.6%	23.6%	-4.5%	-7.5%	0.3%	-13.8
총건축	-7.1%	-6.1%	6.8%	1.7%	9.2%	24.7%	9.0%	20.7%	-13.1	-26.7	-21.6	-24.2

	2009 Q1	2009 Q2	2009 Q3	2009 Q4	2010 Q1	2010 Q2	2010 Q3	2010 Q4	2011 Q1	2011 Q2	2011 Q3	2011 Q4
주거용	3.5%	-5.4%	60.4%	111.1	47.8%	86.4%	1.8%	-38.5	13.7%	30.2%	43.7%	142.3
비주거용	-30.4	-27.3	-9.7%	-3.2%	42.6%	32.6%	5.7%	2.4%	1.7%	4.0%	5.9%	9.7%
총건축	-23.1	-22.8	4.5%	21.3%	44.1%	46.1%	4.5%	-12.8	5.3%	12.3%	17.4%	44.5%

[그림 7] 건축착공 추이(2006년 1분기~2011년 4분기)
〈출처 : 건설산업정보센터(2011)〉

○ 지역별 건축착공은 인천과 광주, 경북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증가

- 2011년 4분기 건축착공은 인천(12.2%)과 광주(20.7%), 경북(9.3%)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은 건축착공이 60.5% 증가하였고 점유비도 10.0%로 증가하였음. 부산과 대구도 각각 106.4%, 146.0% 증가하였고 점유비도 4.6%와 3.0%로 증가하였음. 대전과 울산도 각각 401.8%와 99.6%로 대폭 증가하였고 점유비도 역시 5.1%와 3.0%로 증가하였음

- 도지역은 경북(-9.3%)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의 건축착공이 증가하였음. 경기(35.2%),강원(3.4%), 충북(2.2%), 충남(125.3%), 전북(24.1%), 전남(31.9%), 경남(40.3%), 제주(38.0%) 등의 건축착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도지역에서 점유비중이 증가한 지역은 충남과 전북지역임

[표 19] 지역별 건축착공 추이(2009~2011년)

(단위: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9	1/4	증감률	-52.1	161.1	-10.9	-66.2	64.5	-7.2	-56.3	-34.8	7.0	17.2	-35.6	-19.5	-1.6	-25.8	-45.4	104.8
		비율	5.9	11.4	3.0	3.2	4.2	3.5	1.5	23.4	3.9	5.7	7.4	5.0	5.7	7.1	6.7	2.5
	2/4	증감률	-44.1	-20.3	-50.2	-42.7	-30.5	-12.2	-29.6	-23.3	-23.6	-23.1	-1.9	2.3	27.1	-13.8	-32.5	-0.6
		비율	8.0	3.3	2.1	3.2	2.1	4.0	1.8	30.9	3.7	4.9	7.8	5.9	5.7	7.9	7.5	1.5
	3/4	증감률	-11.2	115.1	15.9	-23.4	28.6	-38.8	-44.5	6.5	66.3	13.3	-2.1	38.9	3.6	-0.3	-1.9	14.0
		비율	12.1	4.8	2.9	4.2	2.3	1.5	1.6	29.0	4.6	4.8	6.3	6.0	4.9	7.0	6.9	1.1
	4/4	증감률	-56.3	46.7	-3.3	87.7	9.6	-24.5	-7.3	76.9	-23.6	32.4	43.5	43.3	46.7	0.8	-0.9	110.4
		비율	7.1	2.8	1.6	4.1	1.5	1.5	2.4	42.2	2.5	4.2	8.1	4.0	4.4	5.6	6.5	1.5
’10	1/4	증감률	266.0	-68.2	-2.3	127.8	-36.1	1.8	233.0	54.3	10.5	18.6	52.9	46.9	44.8	63.7	52.8	-32.6
		비율	14.9	2.5	2.0	5.1	1.9	2.5	3.4	25.1	3.0	4.7	7.8	5.1	5.7	8.1	7.1	1.2
	2/4	증감률	78.0	47.0	40.8	64.4	17.9	-24.7	66.3	52.7	54.0	48.9	45.3	15.4	33.7	44.9	48.3	45.4
		비율	9.7	3.3	2.1	3.6	1.7	2.0	2.1	32.3	3.9	5.0	7.7	4.6	5.2	7.8	7.6	1.4
	3/4	증감률	22.5	-0.6	-14.5	30.2	-25.9	74.4	55.4	-14.1	-11.6	15.2	9.9	-5.6	17.5	22.5	-1.6	79.3
		비율	14.1	4.6	2.4	5.3	1.6	2.5	2.3	23.8	3.9	5.3	6.7	5.4	5.5	8.2	6.5	1.8
	4/4	증감률	10.8	-0.4	-2.9	-3.4	30.8	-15.7	-19.2	-54.0	34.7	29.2	-8.5	51.3	21.8	56.6	25.8	23.7
		비율	9.0	3.2	1.7	4.6	2.2	1.5	2.2	22.3	3.9	5.3	6.7	5.4	5.5	8.2	6.5	1.8
’11	1/4	증감률	-6.4	132.7	35.2	-32.9	-0.5	32.7	-13.5	8.1	16.8	-10.4	-8.3	0.7	27.2	-5.2	11.5	11.1
		비율	13.2	5.6	2.6	3.3	1.8	3.1	2.8	25.8	3.3	4.0	6.8	4.9	6.9	7.3	7.5	1.2
	2/4	증감률	6.5	128.5	107.8	10.7	51.2	82.8	53.1	-38.2	9.5	25.7	9.3	46.9	7.9	-7.2	38.1	22.9
		비율	9.7	7.1	4.0	3.7	2.4	3.5	3.0	18.7	4.0	5.9	7.9	6.4	5.3	6.8	9.9	1.7
	3/4	증감률	-18.9	0.3	42.9	-38.9	253.5	78.8	32.8	5.1	5.7	1.6	25.9	3.6	27.4	22.2	102.9	40.2
		비율	9.8	3.9	2.9	2.8	5.0	3.7	2.6	21.3	3.5	4.6	7.2	4.8	6.0	8.5	11.2	2.2
	4/4	증감률	60.5	106.4	146.0	-12.2	-20.7	401.8	99.6	35.2	3.4	2.2	125.3	24.1	31.9	-9.3	40.3	38.0
		비율	10.0	4.6	3.0	2.8	1.2	5.1	3.0	20.8	2.8	4.4	13.3	6.0	5.7	6.3	9.1	2.0

출처 : 건설산업정보센터(2011), 「건설산업정보리뷰」

주 : 증감률은 전년도 동분기 대비

○ 건축허가와 마찬가지로 건축착공도 선행건설경기지표로서 관찰대상이 될 수 있으며, 2011년 4분기 건축착공의 지역별 비중과 점유비 분석을 통해서 향후 건설경기 추이를 판단할 수 있음

○ 지역별로 저년도 동분기보다 착공물량(증가율)이 증가하고 전분기 대비 점유비가 증가한 지역은 대도시의 경우 서울과 부산, 대구, 울산 등이며, 도지역은 경기와 충남, 전북지역임

○ 이들 지역의 건설경기는 호전될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볼 수 있으나 건축허가 또는 건축착공의 단기 추이만으로 향후 건설경기가 회복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건설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지는 경기추이를 좀 더 살펴보고, 기타 다른 경기지표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함

[표 20] 용도별 건축착공 추이(2009~2011년)

(단위: 천㎡, %)

구 분			주거용	비주거용				총건축
				소계	상업용	공업용	기타	
2009	1/4	실적	3,661	9,078	3,031	1,715	4,333	12,739
		증감률	3.5	-30.4	-41.8	-53.2	4.0	-23.1
	2/4	실적	4,205	12,645	4,735	2,733	5,178	16,849
		증감률	-5.4	-27.3	-37.2	-44.6	5.4	-22.8
	3/4	실적	5,756	12,708	4,899	2,715	5,093	18,464
		증감률	60.4	-9.7	-16.3	-32.7	21.7	4.5
	4/4	실적	8,637	14,567	5,138	3,397	6,032	23,204
		증감률	111.1	-3.2	2.4	-15.3	0.3	21.3
2010	1/4	실적	5,410	12,947	5,084	3,044	4,818	18,357
		증감률	47.8	42.6	67.8	77.5	11.2	44.1
	2/4	실적	7,838	16,772	5,446	4,676	6,649	24,610
		증감률	86.4	32.6	15.0	71.1	28.4	46.1
	3/4	실적	5,858	13,429	4,743	3,341	5,346	19,288
		증감률	1.8	5.7	-3.2	23.0	5.0	4.5
	4/4	실적	5,309	14,918	5,161	3,860	5,897	20,227
		증감률	-38.5	2.4	0.5	13.6	-2.2	-12.8
2011	1/4	실적	6,152	13,174	5,029	3,496	4,649	19,326
		증감률	13.7	1.7	-1.1	14.8	-3.5	5.3
	2/4	실적	10,207	17,443	6,881	4,157	6,405	27,649
		증감률	30.2	4.0	26.4	-11.1	-3.7	12.3
	3/4	실적	8,418	14,225	5,492	3,929	4,804	22,643
		증감률	43.7	5.9	15.8	17.6	-10.1	17.4
	4/4	실적	12,865	16,367	6,471	3,849	6,047	29,232
		증감률	142.3	9.7	25.4	-0.3	2.5	44.5

출처 : 건설산업정보센터(2011), 「건설산업정보리뷰」

주 : 증감률은 전년도 동분기 대비

□ 건설업체실적지수(CEAI)

○ 건설업체실적지수(Construction Enterprise Achievement Index: CEAI)는 건설공사대장에 통보한 종합공사업체의 원도급 수주실적을 토대로 건설경기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산정된 지수임

○ 직전년도 기준으로 건설공사 수주실적이 있었던 종합공사업체 중 수주건수나 금액이 증가하였거나 전년도 동분기와 동일한 것으로 통보한 업체가 전체 종합공사업체에서 차지한 비중을 지수화한 것임

- 건설업체실적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이상이면 실적이 있는 종합공사업체의 절반이상이 전년도 동 분기에 비해서 실적이 증가하였거나 동일하였음을 나타내며, 이는 건설경기가 호황국면에 있거나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반면, 100이하일 경우에는 종합공사업체 절반이상이 전년도 동 분기에 비해서 실적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건설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하였거나 머물고 있음을 의미함

○ 건설업체실적지수는 종합공사업체를 대형, 중견, 중규모, 소규모, 영세 등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추정함으로써 정부 또는 건설산업 차원의 건설경기안정화 대책 마련에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

○ 2011년 연간 CEAI지수 값은 통보건수로는 96.0, 통보금액으로는 96.3을 기록하며, 모두 기준치인 100이하를 보여주고 있지만 저년도인 2010년 보다는 개선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 지수의 특성상 무실적 업체가 많은 소규모 영세건설업체의 실적까지를 반영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수값은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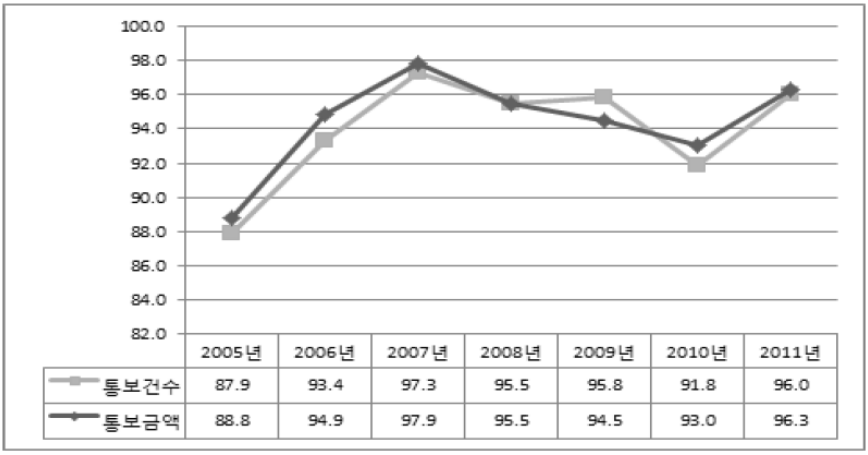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통보건수	87.9	93.4	97.3	95.5	95.8	91.8	96.0
통보금액	88.8	94.9	97.9	95.5	94.5	93.0	96.3

[그림 8] CEAI 지수 추이
〈출처: 건설산업정보센터(2011)〉

○ 1위~50위 대형건설업체 그룹의 경우 건수로는 108.3, 금액으로는 87.5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51위~100위 중견건설업체와 101위~300위 중규모 건설업체, 301위~1000위 소규모 건설업체 그룹은 건수와 금액 모두 기준 값 이상을 보여주고 있음

- 51위~100위 중견건설업체는 건수 106.8, 금액 113.6, 101위~300위 중규모 건설업체는 건수 107.7, 금액 102.4, 301위~1000위의 소규모 건설업체는 건수 102.4, 금액 102.0으로 나타났음
- 반면에 1000위 이하의 영세건설업체 그룹은 건수 95.1, 금액 95.6으로 나타나 전체 지수 값에 영향을 주고 있음
- 금액기준으로는 51위~100위 중견건설업체 그룹이 2011년 한해 동안 가장 경기가 좋았다고 할 수 있음

[표 21] 건수기준 CEAI 지수 추이

년도	전체	1위~ 50위	51위~ 100위	101위~ 300위	301위~ 1000위	1000위 이하
2005년	87.9	101.0	114.6	113.8	103.8	85.4
2006년	93.4	97.9	106.7	100.3	101.5	92.2
2007년	97.3	104.2	105.1	106.5	105.7	96.1
2008년	95.5	102.0	112.0	100.6	102.4	94.7
2009년	95.8	97.9	106.0	101.1	105.1	94.9
2010년	91.8	85.7	108.7	98.0	102.6	90.8
2011년	96.0	108.3	106.8	107.7	102.4	95.1

출처 : 건설산업정보센터(2011), 「건설산업정보리뷰」

[표 22] 금액기준 CEAI 지수 추이

년도	전체	1위~ 50위	51위~ 100위	101위~ 300위	301위~ 1000위	1000위 이하
2005년	88.8	125.0	114.6	116.5	102.0	86.4
2006년	94.9	105.3	112.2	111.3	109.0	92.8
2007년	97.9	122.9	109.2	111.8	109.9	96.1
2008년	95.5	96.9	108.0	98.9	109.2	94.1
2009년	94.5	83.3	104.0	97.8	103.2	93.7
2010년	93.0	96.9	110.9	100.9	104.6	91.8
2011년	96.3	87.5	113.6	102.4	102.0	95.6

출처 : 건설산업정보센터(2011), 「건설산업정보리뷰」

○ 1000위 이하의 영세건설업체 그룹은 기준치 100이하의 수치를 나타내며 영세건설업체의 건설경기 침체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중대형 건설업체의 시장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난데 비해, 1001위 이하 영세건설업체 그룹의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은 향후 건설경기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점임

○ 2011년에 전체 건설업체 가운데 1억원 이상 공사금액의 실적이 없는 업체 비중은 23.9%로 2010년 26.0% 보다는 개선되었음

- 1위~50위 대형건설업체 그룹의 경우 0%로 나타나 모든 업체의 수주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1위~100위 중견건설업체는 10.4%의 업체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101위~300위 중규모 건설업체는 6.2%, 301위~1000위 소규모 건설

업체 그룹은 4.4%로 나타났으며, 1000위 이하의 영세건설업체 그룹은 25.6%로 나타났음

[표 23] 무실적 업체비중 추이

년도	전체	1위~50위	51위~100위	101위~300위	301위~1000위	1000위 이하
2005년	45.1%	4.1%	8.2%	6.1%	6.7%	48.1%
2006년	41.0%	4.0%	2.0%	10.7%	7.5%	43.8%
2007년	35.6%	2.0%	0.0%	9.6%	6.9%	37.9%
2008년	30.5%	4.0%	0.0%	10.3%	6.5%	32.4%
2009년	27.1%	0.0%	6.3%	10.0%	4.9%	28.9%
2010년	26.0%	2.0%	10.6%	4.2%	4.8%	27.9%
2011년	23.9%	0.0%	10.4%	6.2%	4.4%	25.6%

출처 : 건설산업정보센터(2011), 「건설산업정보리뷰」

2) 국내 건설업체 등록현황

○ 2011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설업체는 총 57,065개사로 한 분기(10월~12월)동안 직전분기 대기 총 567개사가 감소하였고, 종합공사업체는 206개사, 전문공사업체는 331개사가 감소

- 2011년 12월말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체수는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 모두 감소한 57,065개사로 3분기에 비해 537개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24] 2011년 건설업체 증감현황

(단위 : 개사)

구분	전체				종합공사업				전문공사업			
	등록	말소 폐업	증가 수	업체 수	등록	말소 폐업	증가 수	업체 수	등록	말소 폐업	증가 수	업체 수
2011년 4분기	634	1,171	△537	57,065	115	321	△206	11,600	519	850	△331	45,465

출처 : 건설산업정보센터(2011), 「건설산업정보리뷰」

○ 종합공사업은 2005년 13,209개사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 추세였던 반면 전문공사업은 최근(2011년 2분기)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옴

○ 2011년 12월말 현재 등록건설업체는 종합공사업체가 11,600개사, 전문공사업체는 45,465개사로 나타남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체는 한분기(10월~12월)동안 신규등록이 634개사, 등록말소 및 폐업이 1,171개사로 3분기 보다 537개사가 감소하였음

○ 종합공사업은 206개사가 감소하였고 2분기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전문공사업은 3분기 감소에 이어 4분기에도 331개사가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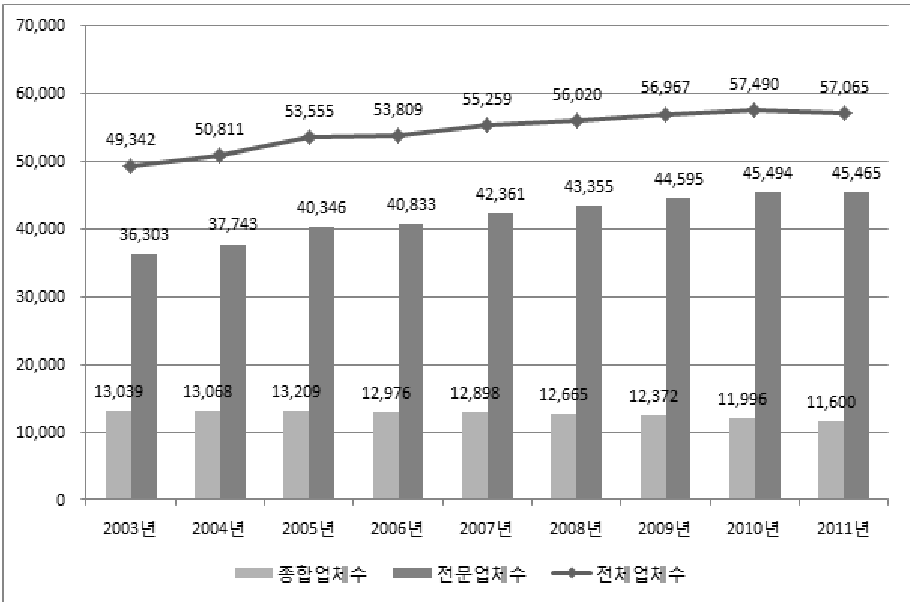

[그림 9] 건설업체수 추이
〈출처: 건설산업정보센터(2011)〉

[표 25] 연도별 건설업체 등록 추이

(단위 : 개사)

년도	전체			종합공사업			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말소/ 폐업	업체수	신규 등록	말소/ 폐업	업체수	신규 등록	말소/ 폐업	업체수
2003년	6,015	3,926	49,342	1,496	1,037	13,039	4,519	2,925	36,303
2004년	4,850	3,381	50,811	1,062	1,033	13,068	3,788	2,348	37,743
2005년	6,816	4,072	53,555	1,237	1,096	13,209	5,579	2,976	40,346
2006년	4,310	4,056	53,809	745	978	12,976	3,565	3,078	40,833
2007년	5,056	3,606	55,259	909	987	12,898	4,147	2,619	42,361
2008년	4,615	3,854	56,020	840	1,073	12,665	3,775	2,781	43,355
2009년	4,876	3,929	56,967	602	895	12,372	4,274	3,034	44,595
2010년	4,282	3,759	57,490	614	990	11,996	3,668	2,769	45,494
2011년	3,428	3,853	57,065	607	1,003	11,600	2,821	2,850	45,465
1분기	1,002	936	57,556	134	273	11,857	868	663	45,699
2분기	1,008	866	57,698	207	215	11,849	801	651	45,849
3분기	784	880	57,602	151	194	11,806	633	686	45,796
4분기	634	1,171	57,065	115	321	11,600	519	850	45,465

출처 : 건설산업정보센터(2011), 「건설산업정보리뷰」
주 1) 전문공종에서 가스2,3종 및 난방공사업 제외
주 2) 지자체의 과거치 수정으로 업체수에 변동이 발생하였음

○ 종합공사업의 경우, 2011년 4분기(10월~12월)기간동안 신규 등록한 업체는 총 115개사였으며, 말소 · 폐업 업체는 321개사로 총 206개사가 전분기 대비 감소하였음. 2011년 12월말 현재 종합공사업체수는 11,600개사임

○ 반면에 전문공사업체의 경우에는 4분기에 신규등록 519개사, 말수 · 폐업이 850개사로 331개사가 감소하였음. 전문공사업체는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1년 12월말 현재 전문공사업체수는 45.465개사로 2010년 12월말 보다 29개사가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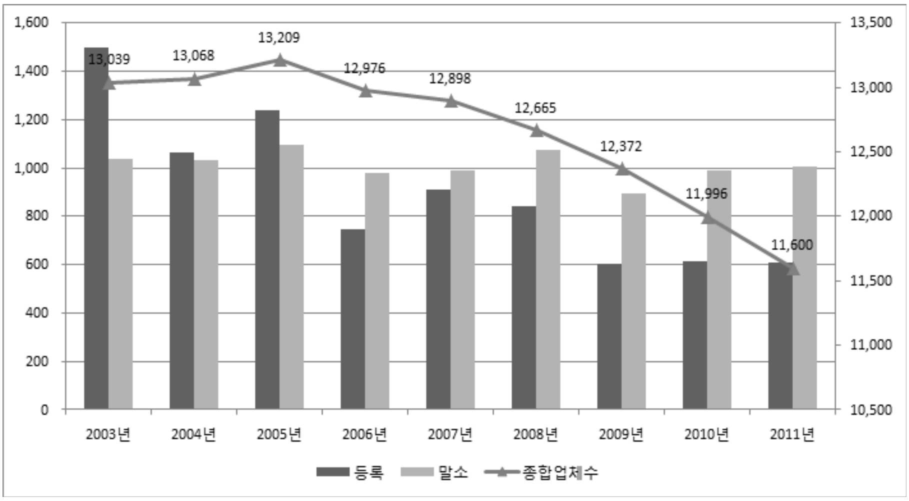

[그림 10] 종합공사업 업체수 추이
〈출처: 건설산업정보센터(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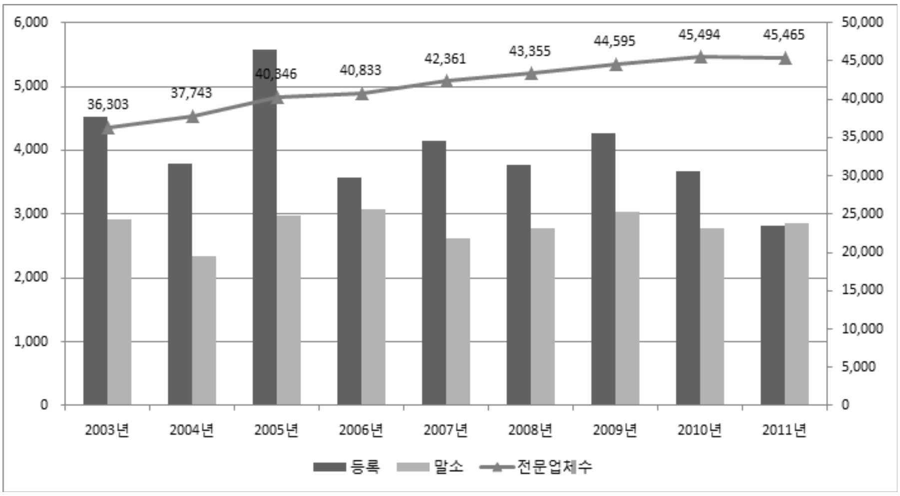

[그림 11] 전문공사업 업체수 추이
〈출처: 건설산업정보센터(2011)〉

○ 겸업허용이후 2011년 12월말 현재 총 겸업업체수는 1,196개사 2008년 이후 허용업종은 675개사가 종합전문 겸업

- 2008년 겸업허용이후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을 겸업한 업체는 2011년 12월말 현재 총 675개사에 이르고 있으며, 이전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겸업이 허용되오던 업종(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겸업한 업체는 총 1,196개사에 이르고 있음

[표 26] 건설업 겸업추이(누계)

구분	201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1,172	1,182	1,188	1,196	1,202	1,203	1,207	1,214	1,219	1,217	1,218	1,196
08년이후허용업종	652	655	660	669	675	676	680	686	689	686	686	675

□ 지역별 건설업체 현황

○ 건설업체 지역별 비중은 수도권이 39.1%, 지방이 60.9%

- 지역별 건설업체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전체 건설업체의 39.1%인 22,311개사가 60.9%인 34,754개사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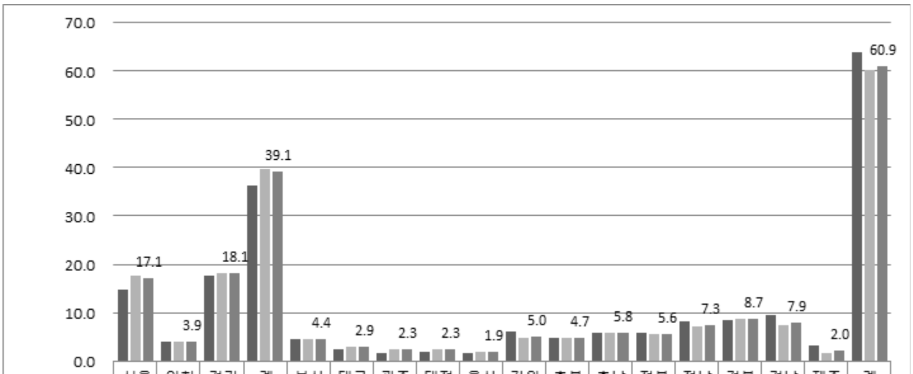

	수도권				지방													
	서울	인천	경기	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종합비중	14.7	3.9	17.6	36.2	4.5	2.4	1.7	1.8	1.7	6.0	4.8	5.7	5.9	8.2	8.4	9.5	3.2	63.8
■전문비중	17.7	3.9	18.3	39.8	4.4	3.0	2.5	2.4	1.9	4.8	4.7	5.9	5.5	7.1	8.7	7.5	1.7	60.2
■전체비중	17.1	3.9	18.1	39.1	4.4	2.9	2.3	2.3	1.9	5.0	4.7	5.8	5.6	7.3	8.7	7.9	2.0	60.9

[그림 12] 2011년 12월말 지역별 · 업종별 건설업체 비중
〈출처: 건설산업정보센터(2011)〉

- 수도권 현황을 보면, 서울이 종합공사업 1,709개사(14.7%), 전문공사업 8,033개사(17.7%) 총 9,742개사로 전국대비 17.1%를 차지하고 있음. 전년도 동분기 대비 △4.3%가 감소한 수치임
- 경기도는 종합이 2,042개사(17.6%), 전문이 8,300(18.3%)로 총 10,342개사 18.1%를 차지하고 있음
- 다음으로는 경북이 총 4,944개사로 8.7%, 경남이 4,527개사로 7.9%를 차지하고 있음
- 기타 전남(7.3%)과 충남(5.8%), 전북(5.6%), 강원(5.0%), 충북(4.7%)의 순으로 나타남
- 4분기에 전년도 동분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광주로 4.0%가 증가하였으나 전국대비 점유비는 2.3%에 불과함

[표 27] 지역별 건설업체 현황(2011)

(단위 : 업체수, %)

구분		업체수			점유비			증가율		
		전체	종합	전문	전체	종합	전문	전체	종합	전문
전국		57,065	11,600	45,465	100.0	100.0	100.0	-0.7	-3.3	-0.1
수도권	서울	9,742	1,709	8,033	17.1	147.	17.7	-4.3	-7.1	-3.8
	인천	2,227	449	1,778	3.9	3.9	3.9	-1.2	-7.2	0.5
	경기	10,342	2,042	8,300	18.1	17.6	18.3	0.8	-3.4	1.9
	소계	22,311	4,200	18,111	39.1	36.2	69.8	-1.7	-5.3	-0.8
지방	부산	2,512	520	1,992	4.4	4.5	4.4.	1.5	1.0	1.6
	대구	1,647	281	1,366	2.9	2.4	3.0	-1.8	1.1	-2.4
	광주	1,340	197	1,143	2.3	1.7	2.5	4.0	3.7	4.1
	대전	1,317	204	1,113	2.3	1.8	2.4	-1.9	1.0	-2.4
	울산	1,071	192	879	1.9	1.7	1.9	1.0	-1.0	1.5
	강원	2,860	691	2,169	5.0	6.0	4.8	1.0	-4	2.7
	충북	2,688	561	2,127	4.7	4.8	4.7	-1.6	-7	-0.1
	충남	3,329	665	2,664	5.8	5.7	5.9	0.5	-2.3	1.3
	전북	3,176	687	2,489	5.6	5.9	5.5	1.7	-1.2	2.5
	전남	4,193	949	3,244	7.3	8.2	7.1	-1.5	-3.4	-0.9
	경북	4,944	980	3,964	8.7	8.4	8.7	-0.4	-4.5	0.6
	경남	4,527	1,107	3,420	7.9	9.5	7.5	-1.4	-1.6	-1.4
	제주	1,150	366	784	2.0	3.2	1.7	1.7	4.9	0.3
	소계	34,754	7,400	27,354	60.9	63.8	60.2	-0.1	-2.1	0.5

출처 : 건설산업정보센터(2011), 「건설산업정보리뷰」
주 1) 증가율은 전년도 동기(2010년 4분기) 대비임
주 2) 전문공종에서 가스 2,3종 및 난방공사업 제외

○ 전국적으로 건설업체수는 전년도 동분기(2010년 4분기)대비로는 0.7% 감소하였으며, 종합공사업은 3.3% 감소, 전문공사업은 0.1% 감소

- 전문적으로 건설업체는 2010년 4분기말(12월말) 대비 0.7%가 감소하였으며, 종합공사업은 3.3%, 전문공사업은 0.1%가 감소하였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7%,지방은 0.1%가 감소하였음
- 증가가 두드러졌던 지역은 광주고 4.0%가 증가하였고 전북이 1.7%, 제주가 1.7%, 부산 1.5%, 울산 1.0%, 강원이 1.0% 증가하였음. 그 밖에 경기(0.8%), 충남(0.5%) 지역이 소폭 증가하였음
- 감소한 지역은 서울(4.3%), 대전(1.9%), 대구(1.8%), 충북(1.6%), 전남(1.5%), 경남(1.4%), 인천(1.2%), 경북(0.4%)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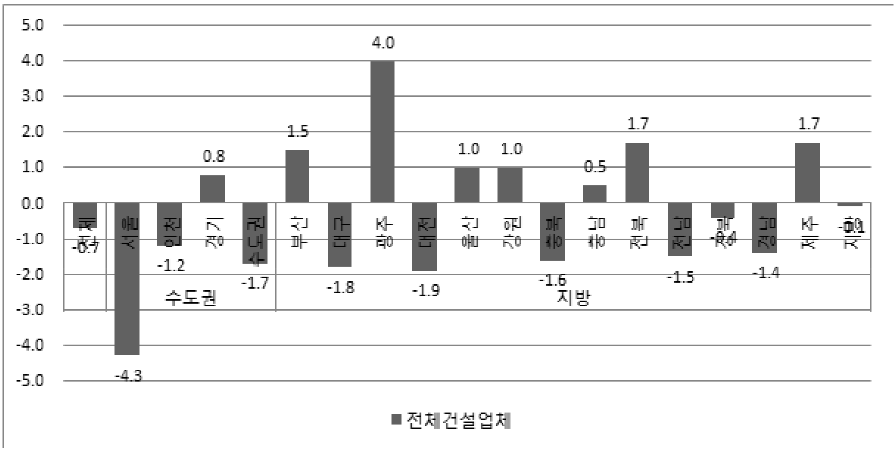

[그림 13] 전년도 동분기 대비 2011년 4분기 지역별 건설업 전체 증감률 현황
〈출처: 건설산업정보센터(2011)〉

- 종합공사업체는 제주와 광주가 전분기에 이어 4.9%와 3.7%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대구가 1.1%, 대전과 부산이 각 1.0% 증가하였음
- 감소한 지역은 인천(7.2%), 서울(7.1%), 충북(7.0%), 경북(4.5%), 강원(4.0%), 경기(3.4%), 전남(3.4%), 충남(2.3%), 경남(1.6%), 전북(1.2%), 울산(1.0%)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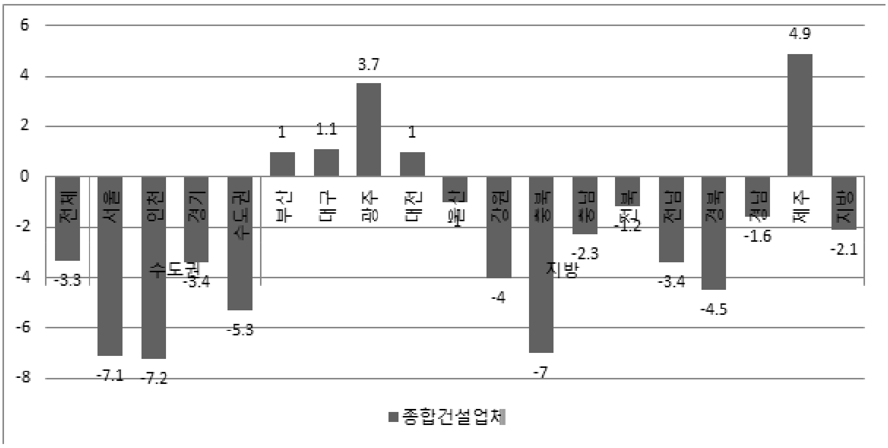

[그림 14] 전년도 동분기 대비 2011년 4분기 지역별 종합공사업체 증감률 현황
〈출처: 건설산업정보센터(2011)〉

- 4분기 전문공사업체수는 작년동분기 대비 0.1% 감소하였음
- 증가한 지역으로는 광주가 4.1%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강원(2.7%), 전북(2.5%), 경기(1.9%), 부산(1.6%), 울산(1.5%), 충남(1.3%), 경북(0.6%), 인천(0.5%), 제주(0.3%)등이 증가하였음
- 감소한 지역은 서울(3.8%), 대전(2.4%), 대구(2.4%), 경남(1.4%), 전남(0.9%), 충북(0.1%)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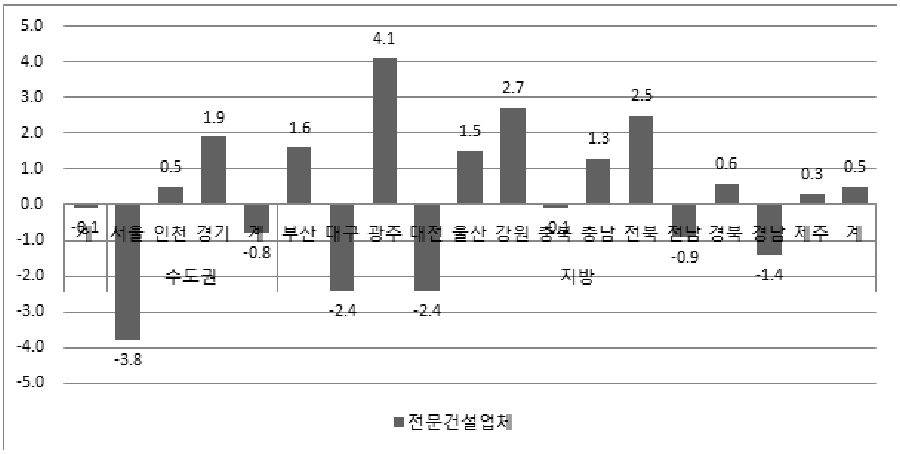

[그림 15] 전년도 동분기 대비 2011년도 4분기 지역별 전문공사업체 증감률 현황
〈출처: 건설산업정보센터(2011)〉

3. 한옥산업 현황 조사

1) 기존 한옥산업 조사

○ 한옥 건축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옥산업의 전반적인 건설현황 및 업체의 매출액, 종사자 규모, 생산 및 고용관련 현황 등의 조사가 지난 2년간 ‘한옥건축 활성화 추진방안(2010)’, ‘한옥정책 · 산업동향 보고서(2011)’를 통하여 검토되었음

- 한옥산업 현황조사(2010)[18)]

□ 조사 개요

○ 한옥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한옥 현황 조사 실시하였으며, 한옥 건축산업의 일반현황, 실태조사, 인식조사로 구분하여 조사 시행

○ 한옥의 일반현황은 전체 건축물 대비 한옥건축물 조성 현황과 한옥 건축산업 현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한옥건축물 현황은 현재 한옥건축물의 수와 전체 건축물 및 주거건축물의 수를 비교하여 현재 한옥건축물의 조성 현황을 조사하였음

- 전체 건축물 현황과 주거건축물 현황자료는 2008년 통계청의 건축물 현황 및 주택 유형별 재고주택 현황을 바탕으로 하며, 한옥건축물 현황자료는 2008/2009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한 한옥건축물 현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음

○ 한옥 건축산업 실태조사는 한옥관련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추정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한옥 설계산업과 시공산업의 실

18) 국토해양부의 의뢰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2010년 공동 수행한 학술연구 용역 「한옥 환경성 평가 및 한옥건축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에서 한옥 건축산업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음

태를 파악하였음

- 실태조사는 업체의 총 직원수, 총 매출액, 한옥관련 실무 수행 건수 및 매출액 비율, 전문 인력 확보 및 인력 구성 등을 조사하였음

○ 한옥 건축산업 인식조사는 한옥 건축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기초 자료에 기반을 둔 정책 연구 및 추진방안 마련과 관련 업계 실태 및 정책적 지원에 대한 수요 분석과 한옥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였음

- 조사 대상은 크게 한옥관련 전문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설계 및 시공업체와 한옥 관련 설계 및 시공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일반 설계 및 시공업체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 조사결과

○ 한옥 건축산업 일반현황 조사 결과 한옥건축물은 전체적으로 2008년 50,407동에서 2009년 66,431동으로 약 16,000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기준 한옥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수의 0.77%에 해당함

- 2007년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건축물공사업의 매출액은 163조원에 이르며, 한옥건축물(전통양식건축 및 기타 문화재 및 유적건물) 관련 산업의 전체 매출 규모는 총 1,223억원으로 전체 건축공사 매출액의 0.08%를 차지함
- 한옥 설계 산업체 및 종사자 수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08)의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옥설계업체의 1년 매출규모는 1.5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를 한옥설계 총 매출액 120억과 비교하면 한옥설계 관련 업체는 총 80여 개로 추정되며 종사자 수는 약 400여명으로 추정할 수 있음

○ 한옥 건축산업 실태조사 결과 한옥 설계업체는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규모의 매출비율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화재청에 등록된 한옥 설계업체의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1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 비

율이 73.9%를 차지하였음

- 한옥관련 시공업체의 경우 100억 미만의 매출규모인 업체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매출액 중 59%가 한옥관련 수주액으로, 이 가운데 약 70%가 문화재 한옥관련 업무임

○ 한옥 건축산업 인식조사 결과 90% 이상의 업체가 한옥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며, 금융지원과 전문교육 및 자격제도 마련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응답하였음

- 조사대상의 50% 이상이 한옥의 주요특징인 목구조와 기둥을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을 현대화하는 것을 한옥의 범위이자 한옥 활성화 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53%의 업체는 한옥 건축산업 환경이 아파트 중심의 주택공급정책으로 인해 열악하다고 응답하였음
- 89% 이상의 업체들이 한옥교육이 필요하며, 설계 및 시공 실무자 교육과 기능 자격증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음

• 한옥산업동향조사(2011)[19)]

□ 조사 개요

○ 한옥산업 관련 사업체를 분야별로 조사하고, 사업체의 규모 및 한옥관련 인력, 사업규모 등 시장조사를 통해 한옥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관련 업체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 한옥관련 사업체는 크게 설계업체와 시공업체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한옥설계업체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체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체로 등록된 업체와 건축사사무소 중 한옥설계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를 포함하였음

19)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는 2011년 한옥산업화를 위한 연구로써 한옥산업동향조사 연구를 수행하였음

○ 한옥시공업체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체 가운데 보수단청업체를 기본으로 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 한옥관련사업의 시공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 한옥관련 업체의 운영실태 조사의 경우 전국적으로 업체의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한옥관련 사업체의 체계적 조사, 정리를 위하여 전통한옥과 현대한옥으로 크게 범주를 구분하고 설계업체와 시공업체 위주로 관련 업체 목록 구축

○ 전통한옥 관련 업체는 주로 문화재청의 DB를 활용하고, 현대한옥 관련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업체들을 조사하여 목록 구축

○ 구축된 한옥 관련 업체의 목록을 바탕으로 각 업체의 고용, 수주활동, 한옥전문인력 현황, 한옥산업에 관한 인식 등을 설문조사 실시

□ 조사결과

○ 2011년 기준 문화재청에 등록된 실측설계업체는 모두 47개로 이들은 대부분 문화재청이나 공공기관에서 발주되는 각종 문화재 수리보수와 전통사찰건축 등에 관여하고 있으며 일부 공공의 현대한옥 발주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한옥 개보수 지원과 관계되거나 기타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일반설계업체는 모두 130개 업체로 주로 지원사업이 진행된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전주시, 경주시 등에 위치하고 있음

○ 2011년 문화재청에 보수단청업으로 등록된 시공업체는 188개로 이들은 주로 문화재급 한옥과 전통한옥 수리 등에 관여하고 있음

○ 현대한옥의 시공은 업체보다는 개인 목수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

고 건축물 규모가 크지 않아 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가 시공할 의무가 없어 지원사업과 관련되어 파악된 업체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하는 일반 시공업체는 136개로 파악됨

○ 최종적으로 구축된 한옥산업 관련 업체는 설계업체 177개, 시공업체 324개로 전국적으로 총 501개 업체 목록 구축

2) 2012 한옥산업 현황조사

① 개요

□ 배경 및 목적

○ 한옥산업 활성화와 한옥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한옥건축 산업의 동향조사는 필수적임

○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한옥 건축산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한옥을 일반목구조의 범위에 포함하여 한옥산업 현황을 추정하고자 함

□ 조사의 범위 및 방법

○ 일반목구조물 현황이 잠재적인 한옥의 가능성을 가진다고 보고 목구조물을 대상으로 통계 분석 실시

○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의 건축물 인허가 대장 자료를 바탕으로 신축 허가일 기준 최근 5년(2007~2011) 동안 등록된 일반목구조 건축물 허가 현황 조사

○ 목구조물에 대한 면밀한 한옥 검증 조사는 전국단위 한옥전수조사 사업을 통해 진행 중임[20)]

○ 건축허가와 건축착공은 공공부문보다는 미간 건축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향후 건설경기를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선행 건설경기지표임[21)]

20)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에는 2012년부터 전국단위 한옥조사 연구사업을 진행중에 있음

○ 특히 건축허가면적은 건설경제동향, 주택수급동향 등의 진단 및 건축 자재 수급·생산 예측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임

○ 건축허가의 경우 통계적 기저효과에 의해 매년 4/4분기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착공시기 결정에 따른 사업승인 신청 시점이 아파트의 경우 착공시기가 가장 유리한 1/4분기 또는 2/4분기를 고려하여 전년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하반기, 특히 4/4분기에 규칙적으로 건축허가면적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목조건축산업이 한옥산업의 잠정적인 시장 성장 가능성의 범위로 보고 건축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목조건축산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자 함

②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 세움터란

○ 세움터는 건축허가부터 착공, 사용승인에 이르는 건축행정업무와 주택조합설립부터 사업승인, 사용검사에 이르는 주택행정업무의 전과정을 완전히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사용승인과 동시에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건축행정시스템임

□ 개발배경

○ 1999년에 개발·보급된 건축행정정보시스템(AIS: Architectural Information System)은 설계, 허가에서부터 착공과 사용승인에 이르는 건축행정의 전과정을 전산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개발

- 민원인은 신청 서류와 첨부도면을 CD에 저장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제출된 CD는 해당 민원실에서 전산 시스템으로 접수돼 복잡한 건축행정 상에서 전산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과 관련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21) 건설산업정보센터(2011) '건설산업정보리뷰', p.38.

○ 그러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사용 이후에도 인허가 신청을 위해서 CD나 디스켓으로 제작된 전자파일 이외에 종이도서 등의 이중제출이 이루어졌으며 인터넷이 발달되었음에도 인허가 상담 및 신청을 위해서 민원인이 해당 관공서를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 역시 개선되지 않았음

- 이외에도 전자결재시스템 미 연동으로 협의 업무처리를 위한 결재 행위 반복수행과 빈번한 동일정보 재입력이 상존함으로써 이로 인한 시간과 인력 낭비가 계속되어옴
- 뿐만 아니라 유관 업무영역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유통하여 불필요한 서류 제출 방지로 행정문서를 감축하고 업무처리를 자동화하게 되어 행정력의 낭비와 종이문서의 생산 및 보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현 적용기술의 노후화로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 공동 이용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

○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건축·주택 인허가 및 준공처리 등 행정 업무 전반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정보망인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e-Architectural Information System) 개발을 추진하게 됨

□ 개발 과정

○ 국토해양부는 1996년 건축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민원의 접수 · 처 리, 건축물대장관리, 단체관리, 통계처리 등의 업무를 전산화하는 건축정보시스템(AIS, Architectural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하여 2002년에는 전국지자체에 확산 · 보급

○ 민원인의 편리와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 건축정보시스템(AIS)을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세움터)으로 고도화하여 개발하였으며 2008년 시스템의 보급을 완료하고 전국 건축행정프로세스를 일원화함

○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건축물과 관련된 인·허가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시작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수기로 관리되던 건축물 관리대장 및 멸실과 관련된 정보의 전산화 및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완료되어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정보의 통합적 관리 실현

○ 건축행정정보는 건축, 주택 정비사업의 전과정에 대한 대장정보를 모두 처리하므로 현존 건축물의 상태 및 건축관계 당사자, 사용자 정보는 물론 현 건축물 이전의 건축물 정보와 건축중인 건축물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정보 구축의 범위

○ 세움터에서 구축하고 있는 건축행정정보의 범위는 건축인허가, 주택인허가, 정비사업, 건축물대장업무, 건축관련사업자 등으로 구분되며, 건축물 관련 허가·착공 통계정보 등도 포함함

[표 28] 건축행정정보의 범위

구분	상세기능
건축인허가	건축사업무신고, 주택관리사보, 임대주택분양전환, 주택관리업, 임대사업자, 임대조건신고 주택관리사, 단순인원(사업자)
주택인허가	주택조합인가(신고, 주택건설(대지)사업관련, 철거멸실신고신청, 관리사무소장 배치관련, 임대주택사업관련, 행위허가신고, 단순민원(주택인허가)
정비사업	계획수립, 조합 등 설립, 사업인가, 관리처분, 철거착공분양, 준공,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단순민원(정비시업)
건축물대장	생성/이기/전환/합병신청, 말소/재작성신청/부존재증명발급신청, 표시/소유자/지번관련, 분리결합신청, 전유부변경(분할, 합병)신청, 단순민원(건축물대장)
사업자	건축사업무신고, 주택관리사보, 임대주택분양전환, 주택관리업, 임대사업자
기타	사전적법성검토, 공인인증안내, 위임장서식, 전자지불안내, 설계도서통합지원도구, 간이도면작성기, 협의기관협업시스템

○ 세움터에서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관련 자료로는 현존 건축물의 상태 등에 대한 정보는 건축물대장과 건축 중인 정보는 건축물허가대장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음

- 건축물대장의 표제부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용도, 세대수, 가구수, 허가 및 착공 사용승인 일, 친환경 등급, 구조, 용도, 층수, 이력관리 등의 정보를 포함함
- 건축허가대장은 건축물대장 정보에 추가적으로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허가일, 사용승인일, 허가변경사항, 건축허가대장 검사조서 등의 내용을 포함함

[그림 16] 건축행정정보화 추진경위
〈출처 : 국토해양부〉

③ 우리나라 목구조 건축산업 현황

□ 전국단위 목구조 건축물 현황

○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정보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전국에 신축된 건축물 가운데 목구조물의 허가 현황을 분석하였음

○ 최근 5년간(2007~2011년) 전국의 목구조물 신축 허가건수는 총 50,429건이며, 2011년에 12,980건으로 최대치를 나타냄

- 통계청 건축허가현황에 의하면 2011년 기준 전국의 신축 건축물 허가 건수는 총 159,047건으이며, 이 가운데 목구조 건축물의 허가 건수는 8.2%(12,980건, 2011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 통계청 건축허가현황의 최신 건축허가 동향에 의하면 2011년 신축 건축물 총 허가 연면적은 137,868,000㎡ 이며, 이 가운데 신축 목구조 건축물의 허가 면적은 약 1,327,874㎡로 전체 건축허가 연면적의 0.96%를 차지하고 있음

- 2007~2010년의 전체 건축허가 면적은 국토해양부 건설경제 주요통계(2010)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11년도의 최신자료는 통계청 건축허가현황자료를 참고하였음

[표 29] 신축 건축물 대비 목구조 건축물 허가 연면적 비율

	전체 건축허가 연면적 (m2)	목구조 건축 허가 연면적(m2)	비율(%)
2007년	151,054,000	702,100	0.46%
2008년	120,658,000	1,086,066	0.73%
2009년	105,137,000	977,659	0.78%
2010년	125,447,000	1,084,725	0.86%
2011년	137,868,000	1,327,874	0.96%
계(m2)	-	5,178,423	-

○ 2007년 이후 5년 동안 전체 건축허가 연면적 대비 목구조 건축물의 전체 허가 연면적의 비율은 2007년 기준 0.46%에서 2011년 기준 0.9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09년 기준, 당해년도의 전체 건축허가 연면적이 최근 5년 가운데 105,187,000㎡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구조 건축물의 전체 허가 연면적의 비율은 0.78%로 전년도의 목구조 건축물 연면적 비율 0.73%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냄

○ 이는 우리나라에 새롭게 건설되는 건축물 가운데 목구조 건축물의 조성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건설산업 시장 가운데 목조 건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30] 우리나라 전체 건축허가면적 현황 (단위 : 천㎡)

년 도	총면적	용 도 별							
		주거용	증감률	상업용	증감률	공업용	증감률	기 타	증감률
2005	111,506	50,281	0.4	23,368	-24.5	13,576	-7.9	24,281	12.1
2006	133,271	53,861	7.1	32,570	39.4	16,813	23.8	30,027	23.7
2007	151,054	65,278	21.2	35,711	9.6	16,329	-2.9	33,735	12.3
2008	120,720	38,480	-41.1	33,284	-6.8	18,513	13.4	30,442	-9.8
2009	105,137	41,917	8.9	24,399	-26.7	11,542	-37.7	27,280	-10.4
2010	125,447	51,464	22.8	26,617	9.1	15,484	34.2	31,881	16.9
2011	137,868	56,557	9.9	34,002	27.7	16,499	6.6	30,810	-3.4
2012.7 누계	76,766	30,104	12.9	20,099	5.1	9,697	-1.8	16,866	-2.6

※ 자료 : 국토해양부 ('12.7월 증감률은 전년동월비)

□ 지역별 목구조 건축물 조성 현황

○ 건축물행정정보시스템의 건축정보를 바탕으로 8개 지방 자치도와 특별시, 광역시, 직할시,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전국단위 16개 시·도의 목구조 건축물 허가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최근 5년간 신축 목구조 건축물 허가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지역으로 총 11,169건의 건축허가가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강원도(6,536건), 경상남도(6,429건)와 경상북도(5,035건), 전라남도(4,940건) 순으로 뒤를 잇고 있음

○ 2011년 기준, 경기도는 전체 허가 건수(12,980)의 약 21%(2,7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도 16.9%, 강원도 12.8%, 경상남도 11.5%, 전라남도 8.8%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제주도의 목구조 건축물 신축 인허가 수는 2010년(231건) 대비 2011년(2,197건)에 10배에 가까운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건축물 가운데 단독주택 용도가 2,145건으로 전체의 97.6%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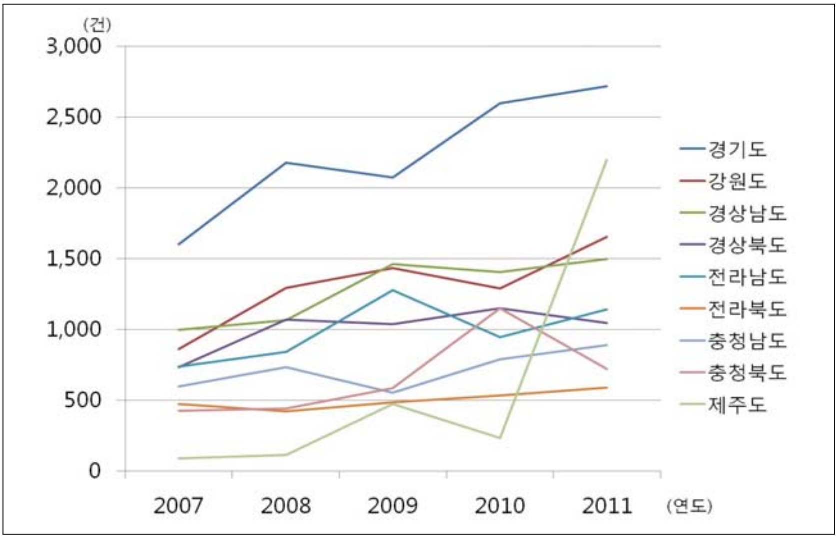

[그림 17] 지역별 신축 목구조 건축물 허가건수

○ 목구조 건축물의 허가는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1년에는 최근 5년 사이 12,980건으로 최고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 전국적으로 신축 목구조 건축물 전체 허가건수는 2009년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는 2009년도의 전체 신축 건축물 허가 건수가 최근 5년 가운데 최저 수치를 나타낸 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축 목구조 건축물의 허가건수는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 수치임

○ 최근 5년간 서울이 98건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목구조 건축물 신축 허가건수를 나타냈으며, 대구(147), 광주(170), 대전(174) 순으로 대도시들이 대부분 낮은 허가건수를 보이고 있음

[표 31] 지역별 신축 목구조 건축물 허가 건수

지역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건)
강원도	862	1,294	1,433	1,291	1,656	6,536
경기도	1,602	2,177	2,074	2,597	2,719	11,169
경상남도	998	1,066	1,462	1,406	1,497	6,429
경상북도	732	1,070	1,038	1,150	1,045	5,035
광주	18	30	21	48	53	170
대구	19	37	36	26	29	147
대전	27	32	23	39	53	174
부산	25	35	70	37	41	208
서울	12	16	16	20	34	98
울산	121	1,435	101	120	80	1,857
인천	198	276	234	257	235	1,200
전라남도	736	842	1,277	944	1,141	4,940
전라북도	474	421	485	533	588	2,501
제주도	69	111	472	231	2,197	3,080
충청남도	598	733	554	788	891	3,564
충청북도	424	440	587	1,149	721	3,321
계(건)	6,915	10,015	9,883	10,636	12,980	50,429

□ 목구조 건축물의 용도 현황 분석

○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건축물 허가대장에서는 건축물을 아래와 같이 26개 용도로 분류하고 있으며, 연도별 용도현황은 다음과 같음[표12]

- 가설건축물, 공동주택, 공장, 관광휴게시설,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동식물관리시설, 묘지관리시설, 문화및집회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창고시설, 판매시설 등 26개 용도분류체계를 가짐

○ 신축 목조건축물의 허가건수 기준, 목조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이 76%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전국의 신축 허가된 목구조 건축물 용도현황은 단독주택이 38,312건으로 전체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2종근린생활시설(7.1%), 제1종근린생활시설(7%), 창고시설(2.1%), 숙박시설(1.6%)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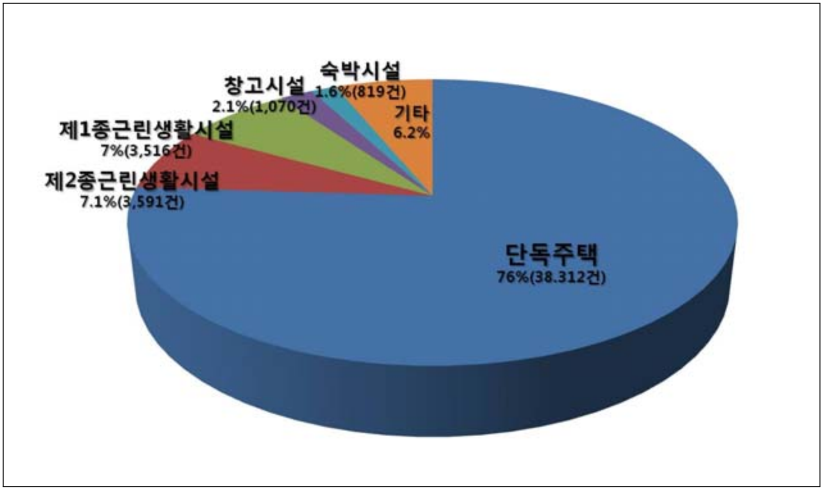

[그림 18] 신축 목구조 건축물 용도분포 현황

○ 주거중심의 목구조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단독주택이 신한옥의 범위를 포함한다고 보면, 신축 목구조 건축물의 단독주택 용도 허가건수는 2007년(4,496건) 이후로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1년까지 5년 동안 총 38,312건이 신축허가를 받는 등 최근 5년간 8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2011년에 한 해 동안의 신축 목구조 건축물 전체 허가 건수(12,980건) 대비 단독주택 용도의 목구조 건축물의 허가 건수(10,917건)는 84.1%까지 오르며 목구조 건축물 가운데 단독주택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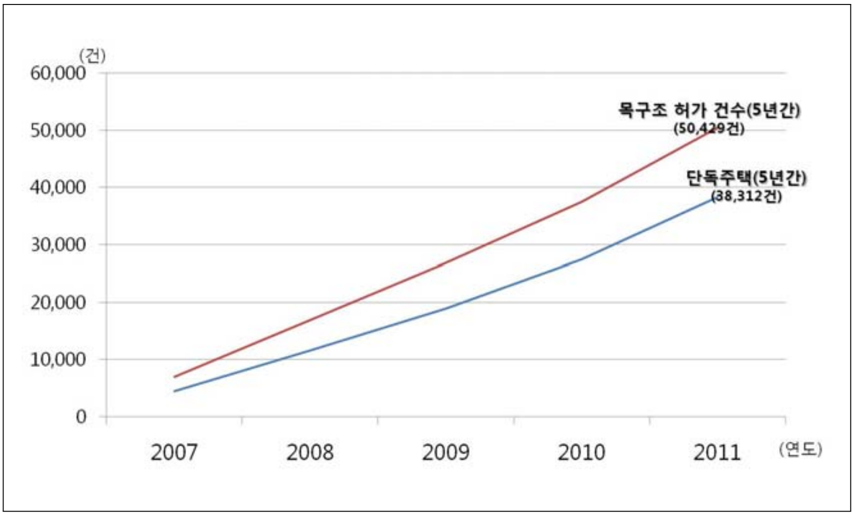

[그림 19] 신축 전체 목구조 건축물 및 단독주택의 허가 건수 현황

[표 32] 신축 허가받은 목구조 건축물 용도 현황

용도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건)
가설건축물	–	–	1	–	–	1
공동주택	48	14	44	23	17	146
공장	20	15	14	10	6	65
관광휴게시설	85	62	73	43	46	309
교육연구시설	60	53	35	55	52	255
교정및군사시설	–	4	18	–	–	22
노유자시설	32	30	26	18	19	125
단독주택	4,496	7,065	7,396	8,438	10,917	38,312
동식물관련시설	118	79	60	56	57	370
묘지관련시설	2	10	4	2	6	24
문화및집회시설	30	31	165	146	342	714
발전시설	1	–	3	2	–	6
방송통신시설	38	17	–	–	7	62
분뇨쓰레기처리시설	1	1	5	2	1	10
수련시설	69	25	21	10	50	175
숙박시설	136	310	157	149	67	819
업무시설	–	–	1	3	2	6
운동시설	2	8	1	6	2	19
운수시설	–	1	–	–	–	1
의료시설	1	–	–	–	–	1
자동차관련시설	1	–	5	2	5	13
제1종근린생활시설	677	839	759	672	569	3,516
제2종근린생활시설	713	908	695	701	574	3,591
종교시설	120	302	156	91	69	738
창고시설	265	232	226	181	166	1,070
판매시설	–	9	18	26	6	59
계(건)	6,915	10,015	9,883	10,636	12,980	50,429

□ 목조건축산업의 규모 추정

○ 최근 정부의 한옥육성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으로 한옥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주거공간으로써 친근하게 다가오고, 탄소배출에 대한 국제적 관심에 의해 친환경 건축재료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됨

○ 목재는 친환경 건축재료로써 건축계의 주요 화두로 등장하고 있지만, 앞 장에서 다루었듯이 우리나라 건설업역 체계 안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건설업역인 목조건축산업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에서 분류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 가운데 한옥산업의 대상으로는 볼 수 있는 건축물은 '전통양식 건물', '기타 문화재, 유적 건물' 등이고, 이를 한옥산업의 대상으로 보면 2010년 기준, '전통양식 건물'의 발주액은 약 410억원, '기타 문화재 및 유적건물'의 발주액은 약 753억원으로, 총 한옥 건축 관련 발주액은 약 1,163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규모(약 134조원, 2010년) 대비 약 0.086%를 차지를 차지함

○ 그러나 위 통계지표에서 한옥산업의 대상으로 포함한 '전통양식 건물'과 '기타 문화재, 유적 건물' 가운데 문화재로 분류되는 '기타문화재 및 유적건물'의 비율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 지표에서 공공부문에서 발주한 공사금액이 70% 이상을 차지고 있음

○ 이는 문화재가 아닌 주거 중심의 신한옥의 개념과 민간부문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한옥 건축 활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곧 한옥산업의 전체적 규모를 포괄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옥산업의 근간이 되는 목조건축산업 시장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민간 건설경기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 가

운데 하나인 건축허가면적을 바탕으로 목조건축산업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 건축허가면적과 건축착공면적은 건축, 토목의 건설 부문에서 민간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부문의 건설투자를 평가하는 선행지표임

- 건축허가면적은 건설경제동향, 주택수급동향 등의 진단 및 건축자재 수급, 생산을 예측하기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되어짐
- 건축허가의 경우 통계적 기저효과에 의해 매년 4/4분기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착공 시기 결정에 따른 사업승인 신청시점이 아파트의 경우 착공시기가 가장 유리한 1/4분기 또는 2/4분기를 고려하여 전년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하반기(4/4분기)에 건축허가면적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최근 5년간(2007~2011년) 전국의 신축 목구조 건축물 허가 50,429건의 총 건축 연면적은 약 5,178,423㎡이며, 1건당 평균 연면적은 약 102.7㎡(31.1평)임

○ 신축 목구조 건축물의 허가건수와 연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추세이며, 2011년 우리나라 건축물 총 허가 연면적(137,868,000㎡) 대비 목구조 건축물의 허가 연면적은 약 1%(1,327,874㎡)를 차지하고 있음

[표 33] 신축 허가받은 목구조 건축물 사업 면적

	허가 건수(건)	연면적(m2)	평균연면적(m2/건, 평)
2007년	6,915	702,100	약 101.5㎡(30.7평)
2008년	10,015	1,086,066	약 108.4㎡(32.8평)
2009년	9,883	977,659	약 98.9㎡(30.0평)
2010년	10,636	1,084,725	약 102.0㎡(30.9평)
2011년	12,980	1,327,874	약 102.3㎡(30.9평)
계	50,429	5,178,423	약 102.7㎡(31.1평)

○ 2011년 기준, 신축 목구조 건축물 허가 연면적은 약 1,327,874㎡(401,682평)로, 한옥건축 사업비가 평당 450~75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여 평균값인 평당 600만원으로 산출하면 우리나라 목구조 건축물 건설산업 규모는 약 2조4천억 원으로 추정 할 수 있음

- 한옥은 높은 건축비로 대중적이지 못한 가옥유형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옥마을 조성사업에서는 평당 700~75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전라남도는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통하여 한옥의 대중적 보급을 위한 노력으로 한옥 건축비용을 평당 약 450~500만원 수준으로 끌어내렸음
- 401,682(평)×600(만원)= 2,410,092,000,000원=약 2조4100억 원

○ 주거중심의 신한옥에 대한 개념이 목구조 건축물의 범위 안에 있다고 가정하고, 목구조 건축물 용도 가운데 일반 주거 용도의 범위를 단독주택으로 한정하여 신한옥 건설 시장의 잠재적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음

○ 2011년 기준, 목구조 건축물 용도별 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단독주택의 사업 연면적이 1,171,836㎡(354,480평)이므로, 지난 한 해 동안 주거 중심의 목구조 건축물 건설산업의 총 사업규모는 약 2조1268억 원으로 추정 가능함

- 354,480(평)×600만원=2,126,880,000,000원=약 2조 1,269억 원

○ 목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한옥건축 산업의 잠재적 시장 규모는 약 2조원 규모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됨

[표 34] 2011년 신축 허가받은 목구조 건축물 용도별 사업 면적

용도별	허가(건)	건축면적(㎡)	연면적(㎡)	비율(%)
가설건축물	-	-	-	-
공동주택	17	4,315	8,166	0.6
공장	6	416	561	0.04
관광휴게시설	46	2,373	2,757	0.2
교육연구시설	52	3,664	4,072	0.3
교정및군사시설	-	-	-	-
노유자시설	19	1,411	1,798	0.1
단독주택	10,917	930,625	1,171,836	88.2
동식물관련시설	57	3,363	3,340	0.3
묘지관련시설	6	326	323	0.02
문화및집회시설	342	25,379	26,205	2.0
발전시설	-	-	-	-
방송통신시설	7	578	646	0.05
분뇨쓰레기처리시설	1	12	24	0.002
수련시설	50	4,279	5,135	0.4
숙박시설	67	3,664	4,937	0.4
업무시설	2	33	18	0.001
운동시설	2	41	41	0.003
운수시설	-	-	-	-
의료시설	-	-	-	-
자동차관련시설	5	220	244	0.02
제1종근린생활시설	569	29,550	31,656	2.4
제2종근린생활시설	574	44,091	47,885	3.6
종교시설	69	7,834	8,562	0.6
창고시설	166	8,845	8,674	0.7
판매시설	6	995	995	0.1
계(건)	12,980	1,072,015	1,327,874	100.0

□ 설계 · 시공 업체 등록 현황

○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건축허가대장에서는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현장관리인, 대리인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건축물허가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신축 목구조 건축물의 설계, 시공 업체 등록 현황을 분석하였음

○ 최근 5년간 신축 목구조 건축물 허가 50,429건 가운데 설계 업체를 등록한 건수는 32,698건으로 전체의 64.8%이며 시공 업체를 등록한 건수는 3,633건으로 전체의 7.2%이고, 설계 및 시공업체를 모두 등록한 사례는 2,625건으로 전체의 5.2%에 불과함

○ 설계업체 등록 현황은 비교적 양호한편이나 시공업체의 경우 사업자 번호가 없는 건축주 및 일반 개인의 명의로 등록되는 경우가 대부분(92.8%)으로 나타났음

○ 특히 설계 · 시공업체가 모두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5.2%로 매우 낮아 한옥건축산업에 해당하는 업체의 규모를 건축물 등록 대장을 통하여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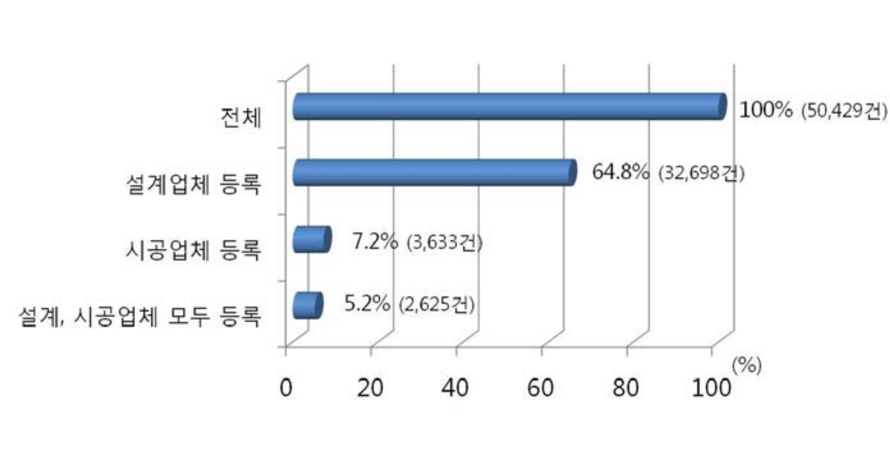

[그림 20] 신축 허가받은 목구조 건축물의 설계 · 시공업체 등록현황

□ 신축외의 목구조물 인허가 현황

○ 최근 5년간 신축을 제외한 전국의 목구조 건축물 허가건수는 총 19,107건이며, 지역별 분포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신축을 제외한 인허가에는 증축신고 · 허가, 개축신고 · 허가, 용도변경신고 · 허가, 대수선신고 · 허가 등 건축물 개보수 및 용도변경 관련 인허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연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3,241건(2007년), 3,764건(2008년), 4,147건(2009년), 4,208건(2010년), 3,747건(2011년)으로 허가건수는 특별한 증감 추세를 보이지 않았으며, 비교적 매년 일정한 분포를 이루고 있음

[표 35] 신축을 제외한 목구조 건축물 허가 현황

지역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건수)
강원도	325	404	498	383	448	2,058
경기도	397	481	497	408	445	2,228
경상남도	375	422	422	457	403	2,079
경상북도	352	387	614	990	361	2,704
광주	92	69	154	40	72	427
대구	107	99	119	70	88	483
대전	64	49	36	49	22	220
부산	51	84	46	69	55	305
서울	442	335	324	292	234	1,627
울산	38	52	36	66	46	238
인천	59	80	53	73	72	337
전라남도	375	472	505	477	487	2,316
전라북도	199	293	288	318	230	1,328
제주도	49	86	103	61	127	426
충청남도	159	249	233	232	481	1,354
충청북도	157	202	219	223	176	977
계	3,241	3,764	4,147	4,208	3,747	19,107

○ 지역별 분포는 경상북도(2,704건), 전라남도(2,316건), 경기도(2,228건), 경상남도(2,079건), 강원도(2,058건) 순임

○ 전반적으로 목구조 건축물의 신축 허가 건수가 신축 외의 경우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광주, 대구, 대전, 부산에서는 증·개축 및 용도변경의 허가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신축 목구조물의 경우 서울특별시가 98건으로 가장 허가건수가 낮은데 비해 신축을 제외한 증축, 개축 등 목조 건축물 개보수 및 용도변경에 의한 허가는 서울시가 1,627건으로 비교적 높은 편임

○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서울특별시는 목구조 건축물의 신축보다는 기존 목조 건축물의 증·개축을 통하여 보존 및 관리,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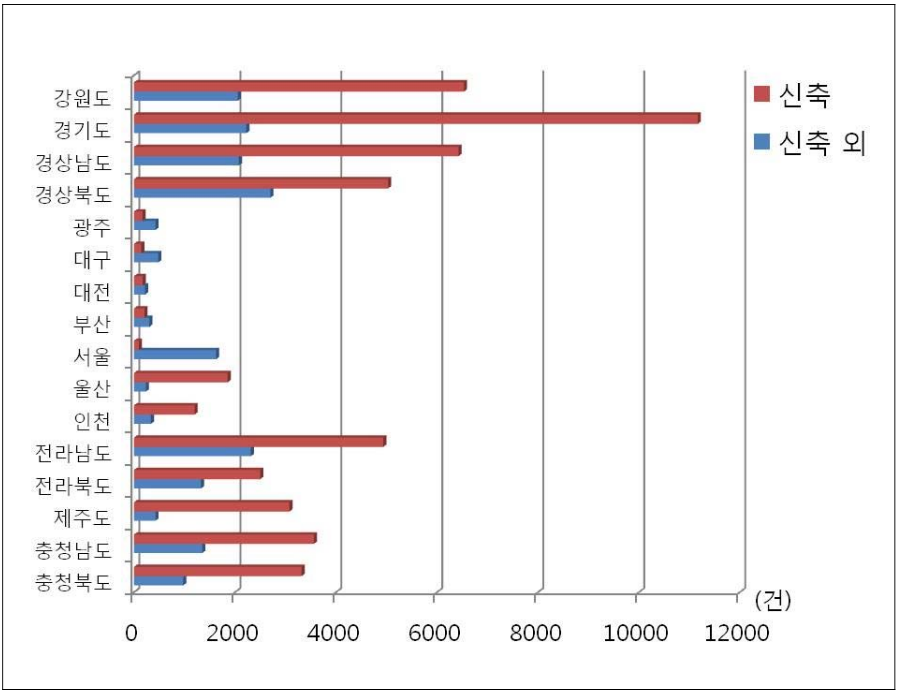

[그림 21] 지역별목구조 건축물 신축 및 증개축 허가 비교

4. 소결

□ 국내 건설산업 현황

○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현황 및 경기를 가시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건축착공, 건설업체실적지수 등을 지표로 검토하였으며, 한옥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축행정정보(세움터) 자료 분석을 통하여 한옥 건설의 업역을 포괄할 수 있는 목구조 건축물 조성 현황을 검토하였음

○ 국내 건축허가 및 건축착공면적은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하락세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2011년까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2011년 4분기를 기점으로 건축허가면적이 감소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건축착공면적은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건축업체실적지수(CEAI)는 지난 7년간 2007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0년부터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1000위 이하의 영세한 건설업체의 경우 기준 이하의 수치를 나타내며 영세건설업체의 건설경기 침체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국내 건설업체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종합공사업은 2005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 추세였던 반면 전문공사업은 2011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 목조건축산업 현황

○ 건축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목구조 건축물의 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8배 이상의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특히 단독주택 용도의 목구조 건축물의 비율이 84%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2011년 기준, 신축 건축물 총 허가 연면적은 137,868,000㎡ 이고, 이

가운데 신축 목구조 건축물의 허가 면적은 약 1,327,874㎡로 전체 건축허가 연면적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 간 목구조 건축물의 허가 면적 비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임

[표 36] 신축 건축물 대비 목구조 건축물 허가 연면적 비율

	전체 건축허가 연면적 (m2)	목구조 건축물 연면적(m2)	비율(%)
2007년	151,054,000	702,100	0.46%
2008년	120,658,000	1,086,066	0.73%
2009년	105,137,000	977,659	0.78%
2010년	125,447,000	1,084,725	0.86%
2011년	137,868,000	1,327,874	0.96%
계(m2)	-	5,178,423	-

○ 민간 건설경기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을 바탕으로 목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한옥건축 산업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추정하면 약 2조원으로 예측할 수 있음

○ 이는 최근 국내 건설산업 경기가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으며, 특히 영세건설업체의 실적지수가 침체기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목구조 건축산업의 두드러진 성장은 건설산업의 성장 동력으로서 한옥산업의 잠재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Ⅳ. 한옥산업 DB구축

C·H·A·P·T·E·R·4

제4장 한옥산업 DB구축

1. 한옥산업 DB구축의 필요성
2. 한옥산업 DB구축 방안
3. 한옥산업 관련 업체 현황

1. 한옥산업 DB 구축의 필요성

1) 한옥산업 DB

□ 한옥산업 DB의 종류

○ 최근 신한옥의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는 다양한 시도가 정부 부처와 학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한옥의 확산 보급을 위하여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조건 중에 하나는 한옥의 광범위한 정보 공유 기반을 구축하는 것

○ 한옥산업의 활동주체들은 직 · 간접적으로 건설산업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요 · 생산하고 있음

○ 과거의 건축 관련 기록물은 그 기록매체의 형태만으로 간단히 나누면 도면과 서류, 모델, 그리고 그 외에 사진, 필름,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전봉희(2009)[22]는 한옥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신한옥 보

22) 전봉희(2009) '신한옥 보급 활성화를 위한 한옥아카이브의 구축' 대한건축학, pp.62-66.

급 활성화를 위한 한옥아카이브의 범위와 방향을 제시하였음

- 한옥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 DB의 범위로 건축물(Building), 법식과 기법(Principles & Tectonics), 생산네트워크(Networks) 그리고 기반제도(Guidelines)의 네가지 항목으로 정리

○ 한옥산업과 관련된 정보로는 한옥건축업체정보, 한옥건축활동실적정보, 한옥건축전문인력정보, 한옥자재정보, 한옥기술정보, 한옥산업관련 정책정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한옥건축산업의 DB화는 '한옥의 생산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며,

- 정부기관, 한옥건축관련 단체, 한옥건축 업체, 기술자 등이 한옥건축산업 DB 구축의 참여자가 될 수 있음

- 본 사업의 범위에서는 한옥건축 관련 설계, 시공, 자재 업체 등을 DB 구축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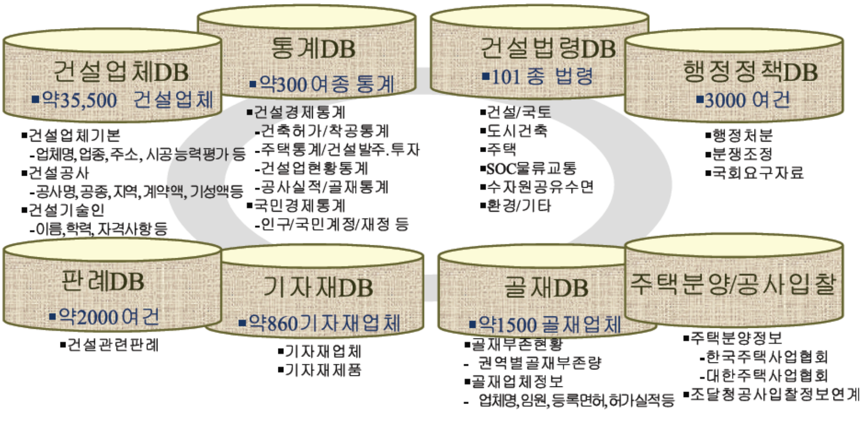

[그림 22] 건설산업 DB 구성 예

〈출처 : 문혁(2002), '건설산업 DB구축사업', 한국건설관리학회〉

① 한옥건축업체 DB

- 한옥건축업체 DB는 업체의 업체명, 주소, 업종, 전문분야 등의 업체기본정보와 한옥건축 전문가 보유현황, 경영실태 등 한옥건축에 관련된 업체의 총체적 정보를 말함
- 현재 한옥건축산업과 관련된 업체DB는 문화재청, 한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한옥관련 기관의 교육 및 홍보사업 등 다양한 주최에 의하여 산발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주택건설사업협회, (사)한국전통건축협회,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사)한국목조건축협회, 한옥기술인협회 등의 한옥건설관련 단체 별로 회원사 정보를 구축하고 있음

② 한옥건축활동실적 DB

- 설계, 시공 및 자재 업체가 한옥건축 관련 산업활동을 하면서 생성되는 공사명, 건설공사자본, 계약액, 기성액 등의 건설실적정보를 말함
- 일반적으로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활동 실적정보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주택건설사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의 단체에 의해 개별적으로 축적되어 관리되고 있음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옥을 포함하는 목조건축산업은 건설업역체계에서 독립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현재 한옥건축을 하고 있는 업체 실적에 대한 정보구축은 현실상 어려운 실정임

③ 한옥건축전문인력 DB

- 한옥건축 관련 전문인력 DB는 이름, 경력, 자격사항 등 한옥건축 전문가로써 이력 및 자격을 충족하는 인물에 대한 기본정보임
- 일반적인 건설인력에 대한 정보는 기술인력 개인에 대한 경력, 학력,

상벌 등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등의 건설인력 관련단체가 관리하고 있음

○ 한옥건축과 관련된 전문인력 정보는 문화재 또는 목조 건축 전문인력 등으로 정보 구축 및 관리되고 있음

○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기술자(6개분야) 및 문화재수리기능자(20개분야)의 등록현황을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으며, 목조 건축 기술인은 목구조기술인협회, 한옥기술인협회 등의 단체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음

④ 한옥자재 DB

○ 한옥자재 DB로는 한옥 건축에 소요되는 목재, 석재, 기와, 창, 조명, 단열 및 보일러 등 건축자재의 종류와 현황, 생산 및 소유업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한옥 건축에 이용되는 건설장비에 대한 정보를 포함

○ 현재는 목재, 석재, 기와, 창 등 자재별로 관련 협회 또는 개별업체 단위로 자재정보를 생산·관리하고 있음

⑤ 한옥기술 DB

○ 한옥기술 DB로는 한옥을 건축하기 위한 한옥의 일반적 법식과 이를 기반으로 개별 한옥에서 나타나는 전통적 건축기법, 그리고 최근 현대생활에 적합하도록 개발되고 있는 건축기술 등이 해당됨

○ 현재 한옥 건축에 대한 전통기법 및 기존의 노하우는 전문가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최신 한옥건축기술 등은 학회 및 연구소, 업체 등에 의해 개발·관리되어지고 있음

○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옥기술개발(R&D)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한옥 통합시공 시스템, 한옥모델, 한옥성능요소, 한옥건축 통합시스템 등의 정보들이 대상이 될 수 있음

⑥ 한옥산업정책 DB

○ 한옥산업정책 DB는 한옥건축 활동의 주체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생산하는 법령, 제도, 규칙 등의 정보로 구성됨

○ 한옥 진흥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별로 다양한 한옥관련 조례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방안이 적용되고 있음

[표 37] 한옥산업 DB의 종류

	분류	내용
한옥산업 DB	한옥건축업체 DB	한옥업체의 업체명, 주소, 업종, 전문분야 등의 업체기본정보와 한옥건축 전문가 보유현황, 경영실태 등 한옥건축에 관련된 업체의 총체적 정보
	한옥건축활동실적 DB	설계, 시공 및 자재 업체가 한옥건축 관련 산업활동을 하면서 생성되는 공사명, 건설공사자본, 계약액, 기성액 등의 건설실적정보
	한옥건축전문인력 DB	한옥건축 전문가로써 이력 및 자격을 충족하는 이름, 경력, 자격사항 등 인물에 대한 기본정보
	한옥자재 DB	한옥 건축에 소요되는 목재, 석재, 기와, 창, 조명, 단열 및 보일러 등 건축자재의 종류와 현황, 생산 및 소유업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한옥 건축에 이용되는 건설장비에 대한 정보를 포함
	한옥기술 DB	한옥을 건축하기 위한 한옥의 일반적 법식과 이를 기반으로 개별 한옥에서 나타나는 전통적 건축기법, 그리고 최근 현대 생활에 적합하도록 개발되고 있는 건축기술 등이 해당됨
	한옥산업정책 DB	한옥건축 활동의 주체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생산하는 법령, 제도, 규칙 등의 정보로 구성됨

2) 한옥산업 DB 구축의 가치

□ DB 구축 및 관리의 가치

○ 국가 발전을 위한 국가 경쟁력의 주요자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그 시대상을 반영함

○ 농업사회에서는 토지와 인력, 산업사회에서는 자본과 부존자원 등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계량화할 수 있는 자원이 핵심 요소였음

○ 반면,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구체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잠재력까지도 국가 경쟁력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 또한 선진국과 비선진국을 구분하는 기준도 물리적 형태의 자원뿐만 아니라 해당 자원의 고도화 또는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극대화 기술력 확보 여부도 중요 핵심 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국가적 사업으로서의 DB구축 사업 동향

○ 우리나라는 지식정보화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정보통신부와 (구)행정자치부를 주축으로 국가지식자원의 확보와 활용을 위하여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과 행정정보DB 구축사업을 진행하였음

□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은 정보화 근로사업을 모태로 (구)정보통신부가 주관하여 추진하였으며, 국가지식경쟁력 향상과 국가적 지식기반 확충을 위하여 2000년 1월 28일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제정하였음

○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근간으로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2000~2004)'을 수립하여 국가 주요 공공기관, 지자체, 대학 등에서 보유한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은 국가지식자원의 디지털화를

통한 지식강국으로의 기반 마련

○ 2006년, 제2차 지식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2007~2011년) '을 추진하여 대대적인 디지털화와 더불어 범국가적 지식정보자원의 생산적 활용체계를 조성하였음

□ 행정정보 DB 구축사업

○ 행정정보DB 구축사업은 2004년 11월에 수립된 '디지털국력강화대책' 과 「전자정부법」 을 바탕으로 2005년부터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업무추진 등에서 발생하는 주요 행정정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기관간 공동이용 등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 기반을 마련하였음

○ 2006년에 수립한 '중장기 행정정보DB 구축사업 기본계획(2007~2011년)' 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

○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부처별로 추진되었던 두 개의 국가적 DB구축사업은 2008년 부처 개편으로 인하여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주관부처가 (구)정보통신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되었음

○ 이로 인하여,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과 행정정보DB 구축사업의 대상 자료의 특성, 서비스 형태, 추진목적 등이 상이하지만 디지털화 방법, 사업 추진절차 및 관리방안 등이 유사하고, 각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의 통합에 따라 DB구축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2009년 국가DB사업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음

○ 국가DB사업으로의 통합을 위하여 2008년 '국가DB 통합관리 세부추진계획(2008~2012년)' 을 수립하였고, 2009년 8월에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을 마련하여 두 사업의 통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또한 2009년 5월 국가DB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국가DB 구축 중기계획(2009~2013년)'을 수립하였으며, 2009년까지 병행 운영되었던 각각의 DB심의위원회를 국가DB사업 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이에 따라 통합된 국가DB사업 심의위원회에서 2010년 추진 대상사업부터 공정한 심의를 위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심의항목을 마련하였음

○ 2011년 국가DB사업은 모바일 환경의 급속한 확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활용 등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기 위하여 '2단계 국가DB 구축 추진계획(2011~2015년)'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1년 26개 사업을 추진하였음

○ '제2단계 국가DB 구축 추진계획(2011~2015년)'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지식자원 원시자료의 잔여물량 파악과 증강현실, 모바일 웹 등 IT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활용성 중심의 국가DB사업으로 방향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립하게 되었음

○ '2단계 국가DB 구축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2010년에 전부처, 공공기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총 51개 기관에서 103개 과제를 접수하였음

○ 접수된 과제에 대하여 3차에 걸친 국가DB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효과, 사업범위의 적정성, 사업 추진여건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2단계 국가DB 구축 추진계획(2011~2015년)'에 포함될 과제를 선정하였음

○ 그 결과, '2단계 국가DB 구축 추진계획'은 2015년까지 총 2,217억원을 투자하여 10개 분야 54개 과제를 추진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 기존의 과학기술, 역사, 문화, 행정 등 기존 분야의 완결성을 도모할 수 있는 과제와 모바일 등 신기술 서비스에 적합한 과제가 균형적으로

포함

○ 또한 '안전한 대한국민 구현'을 위하여 안전·복지 분야 사업이 새롭게 추가되어 더욱 다양한 국가DB 구축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표 38] 2단계 국가DB구축 추진계획(2011~2015년) 분야별 과제현황

구분	역사	문화	환경	안전	교육	복지	사법	과학	건설	행정	계
과제수	12	12	1	4	1	2	6	9	1	6	54

○ 2011년 국가DB사업은 '2단계 국가DB 구축 추진계획(2011~2015년)'을 근거로, 총 252억 원을 투입하여 산악 안전사고 대응 및 산행정보 DB, 스마트 모바일용 다국어 언어음성DB, 한국 전통문양 원형DB 등 29개 사업의 중요 국가DB를 디지털화하였음

○ 국가DB사업 중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으로 구축된 DB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포털을 운영하고 있음

○ 국가지식포털은 2001년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2011년까지 1,389개의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총 2,600만 건의 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지식정보자원은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 역사, 정보통신, 건설기술 등의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통합검색, 상세검색뿐만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유형별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음

3) 한옥산업 DB구축의 필요성

○ 한옥 생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비용과 품질 그리고 기술 및 자재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한옥건설 정보의 원활한 유통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한옥과 관련된 건설정보체계의 미비로 건설주체간의 정보유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건설비용이나 한옥 품질 확보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또한, 한옥산업을 건설업역 체계 안에서 살펴보면, 현재 한옥산업은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건설용역업, 주택건설업 등 각기 다른 산업분야에 속하여 성과지표가 관리되고 있음

○ 따라서 독자적인 산업으로써 한옥산업의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산업적 측면에서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의 통계적 지표 마련에 한계가 있음

○ 2010년 국토해양부는 한옥건축활성화 추진방안으로 한옥건축산업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1년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한옥산업동향조사 연구를 통하여 한옥산업의 진흥을 접근의 토대를 마련하였지만 그 범위가 한옥산업 전반을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음

○ 한 분야의 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는 필수적임

○ 산업의 통계적 지표는 한 산업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산업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됨

○ 최근 한옥을 찾는 일반인들의 수요가 늘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수요자들이 얻을 수 있는 한옥 설계, 시공, 자재업체 들에 대한 정보 네트워크가 부재한 실정임

- 이러한 정보의 부재는 수요자뿐만 아니라 건축관련 전문가들에게조차 한옥으로의 접근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이 됨

○ 한옥의 생산과 관련된 네트워크 DB의 구축은 이처럼 한옥의 재생산을 위한 최종적인 정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23)]

○ 지금까지 한옥산업은 국가의 제도적 산업의 분류체계 안에서 운영되지 못하여 어떠한 통계적 데이터도 확보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한옥이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담고 있는 건축양식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보존만을 위한 문화재의 범주로만 인식하여 독자적인 산업으로써 운영 · 관리되기에는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임

○ 최근 2010, 2011년 한옥산업의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와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정보구축의 체계 및 정보의 객관성이 부족한 실정임

○ 앞으로 한옥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자료를 구축하여 한옥산업 진흥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3) 전봉희(2008) ‘한옥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종합 DB의 구축’, 대한건축학회지 제52권 3호.

2. 한옥산업 DB구축 방안

1) 한옥관련 업체 DB 구축 방향

-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한옥산업과 관련된 업체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며 한옥 및 한옥산업에 대한 의미 및 범위 설정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한옥 관련 업체의 지정이 어려운 실정임
- 국가적으로 특정 산업분야의 통계정보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통하여 산업의 동향 및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한옥산업의 경우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산업의 범위 및 특성이 명확하지 않아 통계정보를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한옥산업 관련 업체는 크게 설계업체, 시공업체, 자재업체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한옥건축과 관련된 전문업체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한옥산업 DB 구축의 대상으로 함
- 관련 업체 정보는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수리업체 가운데 문화재실측설계업, 보수단청업으로 등록된 업체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한옥 사업에 참여한 업체, 한옥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함
- 확보된 사업체 목록을 바탕으로 현재 업체 영업 유무, 한옥산업 관련 업무 활동 유무, 업체 정보의 정확성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 검토

한옥 업체 리스트 확보 ⇔

1. 문화재수리업체	문화재청
2. 지자체별 한옥사업 관련 업체	지방자치지체
3. 한옥관련 기관 및 단체 회원사	개별 단체

[그림 23] 한옥 업체 리스트 확보 방안

2) 문화재청 DB

□ 개요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4]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춘 문화재수리업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 · 도지사가 관리하며,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기술자는 문화재청에서 자격증을 발급 · 관리함

○ 문화재청에서는 분기별로 간행물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집'을 발간하며, 수록항목 중 문화재수리기능자 · 기술자 및 수리업자등의 등록현황을 조사 · 발표함

□ 문화재수리업 10개 업종 분류

○ "문화재수리업등"은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 감리업을 말하며, 이 중 문화재수리업은 크게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됨 (표1 참조)

○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1)의 '한옥산업동향' 조사에서는 보수단청업체를 시공업체, 문화재실측설계업체를 설계업체를 전통한옥관련 업체로 정리하였음

[표 39] 문화재수리업 등의 종류 및 구분(「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6조 기준)

종합문화재수리업	전문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
보수단청업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24)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에 통합되어 규정하고 있었으나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관련규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을 원용하고 있었음.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문화재수리공사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고 있어 문화재수리공사 수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규정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2011년 2월 4일 제정,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함

○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을 위해서 문화재수리업자는 [표 11]에 따라 해당 기술능력을 갖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표 40]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요건

업종	기술능력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수 단청업	보수기술자 2명과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보수ㆍ단청 분야 기술자 4명 이상	대목수 1명, 한식미장공 1명, 번와와공 1명과 화공ㆍ드잡이공ㆍ한식석공ㆍ한식목공 중 3명을 포함한 6명 이상
조경업	조경기술자 1명 이상	조경공 1명 이상
보존과학업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 세척공, 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식물보호업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식물보호공 1명 이상
단청공사업	단청기술자 1명 이상	화공 1명 이상
목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대목수 1명과 한식목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석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쌍기석공 1명과 한식석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번와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번와와공 2명 이상
문화재 실측설계업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	실측설계사보 1명 이상
문화재 감리업	보수기술자 또는 실측설계기술자 중 1명과 실측설계기술자,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 종류

○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 ·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지도 · 감독을 받아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함

○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청에서 자격증 발급 및 관리를 함

○ 문화재수리기술자는 6개, 문화재수리기능자는 20개 분야로 분류됨 (표 3 참조)

[표 41] 문화재수리 기술자 및 기능자 종류

문화재수리기술자 (6개 분야)	문화재수리기능자 (20개 분야)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실측설계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한식목공(대목수, 소목수), 한식석공(가공석공, 쌓기석공). 화공, 드잡이공, 번와와공, 제작와공, 한식미장공, 철물공, 조각공(목조각공, 석조각공), 칠공, 도금공, 표구공, 조경공, 세척공, 보존과학공(훈증공, 보존처리공), 식물보호공, 실측설계사보, 박제 및 표본제작공, 모사공, 온돌공

□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 조사주기: 분기별(3개월 마다) 시행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업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중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상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현황만 문화재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자세한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음

□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현황

○ 2011년 12월 31일 기준,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의 업체는

총 373개 업체

○ 분류항목: 지역,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연락처, 구분, 기술자 및 기능자 정보를 제공 (표14 참조)

[표 42] 문화재수리업등 등록현황 (2011.12.31)

종합문화재 수리업	문화재 실측 설계업	문화재 감리업	전문문화재수리업							계
보수 단청업			보존 과학 업	식물 보호 업	조경 업	단청 공사 업	목 공사 업	석 공사 업	번와 공사 업	
189	48	5	30	36	59	4	0	2	0	373

[표 43] 문화재수리업 등록현황 DB 내용

시 · 도	업종	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연락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수단청업,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단청공사업, 석공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	-	-	이름	주소	-	종합,전문, 실측,감리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등록현황

○ 문화재 수리기술자는 총 1,462명으로 6개 직종으로 분류되며, 이 중 보수와 단청직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요건 중 보수기술자를 요구하는 업종이 5개로 가장 많은 수요를 요하기 때문으로 보임 (표15 참조)

○ 문화재수리기능자는 20개 직종에 총 6,189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한식목공(1,135명), 한식석공(935명), 화공(674명), 번와와공(525명) 등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 (표7참조)

[표 44] 문화재수리기술자 현황 (2011.12.31)

종별	보수	단청	실 측 설 계	조경	보 존 과 학	식 물 보 호	계
인원	563	479	72	198	90	60	1,462

[표 45] 문화재수리기능자 현황 (2011.12.31)

종별	인원	종별	인원	종별	인원
한식목공	1,135	한식미장공	385	조경공	414
한식석공	935	철물공	19	세척공	63
화공	674	조각공	286	보존과학공	447
드잡이공	402	칠공	294	식물보호공	147
번와와공	525	도금공	126	실측설계사보	201
제작와공	9	표구공	93	박제 및 표본제작공	34
		모사공	0	온돌공	0
				계	6,189

3) 전라남도 한옥산업 DB

① 행복마을 조성사업

□ 사업 개요

○ 행복마을은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 마을을 사람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현 주민들과 후손들이 정착하고, 도시민들이 돌아오는 마을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한옥마을 조성사업임

○ 주거환경정비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한옥으로 주택을 개량하고, 마을 상·하수도 및 회관, 진입로, 안길, 주차장 등을 확충

○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마을의 특화작물(약초, 녹차, 연꽃, 딸기, 야생화 등)을 소득화하는 등의 주거환경정비로 도시민을 유치하여 민박과 체험을 실시하면서 지역특산품을 판매하는 전략(1사1촌/ 1도시1농촌 자매결연 등)

○ 유형에 따라 기존마을 정비형과 신규단지 조성형이 있으며, 기존마을 정비형은 기존 형성되어 있는 마을에 12동 이상의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신규단지형 마을은 새로 조성하는 마을에 20동 이상의 한옥을 신축할 경우를 대상으로 함

○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2년 4월 기준 총 100개 마을이 행복마을로 선정, 1,432동의 한옥이 건립 확정되었으며, 738동의 한옥이 신축완료

- 행복마을 기존마을 정비형 88개, 신규단지 조성형 12개로 총 100개 행복마을 선정
- 한옥 건립현황은 기존마을 정비형이 1,308동(완공 668, 추진중 640), 신규단지 조성형이 76동(완공 34, 추진중 42), 한옥보존시범마을 48동(완공 36, 추진중 12)으로 현재까지 총 1,432동 한옥 건립

- 2014년까지 행복마을 2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임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 지원 각종 개별사업과 농어촌 지역 종합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하며, 마을에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 시설 및 경관개선사업과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그림 24] 행복마을 전략
(출처 : 전라남도 행복마을 홈페이지)

○ 한옥 신축자금 지원보조금으로 4천만원 내외(도 2천만원, 시군 2천만원 내외), 융자금 3천만원(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지원

○ 공공분야 기반시설정비(진입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등)하는 사업지에 마을당 3억원(도비 1.5억원, 시군비 1.5억원)을 지원하며, 기존마을 정비형 행복마을에만 지원

○ 마을의 형편에 맞는 국 · 도비 사업 우선 선정(추천)지원

- 지원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농식품부): 40-7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농식품부): 10-16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전원마을조성사업(농식품부): 10-3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부(농식품부): 2억원(국비 50%,지방비 50%)

○ 2010년까지 한옥 개·보수 및 신축에 약 650억원(보조금 400억원, 융자금 250억원), 마을 정비사업에 160억원 등 총 810억원이 지원(융자금은 한옥기금 조성)

[그림 25]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절차 (출처 : 전라남도청)

□ 한옥 시공업체 지정 · 관리

○ 전라남도는 행복마을 내 한옥시공을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시공업체로 제한하여 건실한 한옥건립을 유도하고 타 시도에 앞서 경쟁력을 갖춘 전문한옥 시공업체로 육성 · 발전시키기 위해 한옥 시공업체를 지정하고 있음

○ 전라남도는「한옥 건축 추진 지침」을 마련하여 '계획수립 및 시공자 선정', '한옥 건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으로 시공업체 선정기준과 시공업체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전라남도는 한옥시공업체 지정 신청 공고를 하여 전라남도에 소재지를 둔 전문공사업 이상 건설업 등록업체로서 한옥관련자격증(문화재청발급) 소지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하고 2년간 한옥 5동 이상 건립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을 하고 있음(2012년 기준)

○ 2011년 8월 행복마을 한옥 시공실태 및 건축주 만족도 조사결과 시공업체가 준수해야할 건축기준을 위반하여 시공된 사례 발견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는 한옥시공업체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지침위반 및 부실업체는 지정취소하고 우수 시공업체를 발굴 육성하고자 함(한옥건축 추진 지침, 2011.9.15개정)

○ 한옥관련자격증은 「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7조, 제8조에 해당하는 자격증 가운데 문화재수리기술자, 한식목공(대목수, 소목수), 드잡이공으로 제한

전라남도 한옥 건축 추진 지침(2011.9.15 개정)

Ⅰ. 계획수립 및 시공자 선정
(중간생략)
나. 시공업체 선정
 2010년부터 행복마을 내 한옥시공은 우리 도에서 지정한 업체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하고 시공해야만 보조금이 지급됨
 - 전문건설업 이상 시공업체 + 한식목공 등 한옥관련 자격증 소지자 요건을 갖춘 업체를 도 한옥시공업체로 지정 운영
 한옥시공업체 선정시 1마을당 1개 시공업체를 선정·시공함을 원칙으로 하여 견실시공 및 하자보수 보장 등 책임 있는 사후 관리 정착
 계약하려는 시공업체의 자본력 등 성실성 확인 및 해당업체가 시공한 한옥의 시공상태 점검
 업체 선정시 선도마을 벤치마킹 및 조사 결과에 의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3~5개 업체 정도를 초청하여 시공제안서 비교 설명회 개최
 시공업체에서 유의할 사항
-올바른 회사 홍보(과대 홍보 금지, 실제 건축실적 공개 등)
-견적서 제출시 저가 한옥 견적 사양
-회사 보유 기술자 및 자금 상태 등 공개

Ⅱ. 한옥 건축기준
(중간생략)
2. 시공업체 유의사항
 시공업체는 한옥위원에서 승인되고 계약서에 첨부된 설계도서 및 한옥건축기준, 공사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 장인정신을 가지고 시공
 ① 세밀한 공정 계획을 수립후 착공하여 신속히 완공토록 조치
  -공정별로 공사 전·중·후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 준공계와 함께 제출
 ② 한옥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에서 생상되는 한옥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
 ③ 본 건물 뒤에 달개집(까데기)를 달아낼 경우 적법 시공은 물론 눈썹지붕 형태로 본 건물과 조화롭게 시공(시멘벽돌, 적벽돌, 조립식 판넬 시공 금지)
 ④ 행복마을 가꾸기의 시작은 한옥만 짓는 거싱 아니므로 마을 경관을 저해하는 시공은 절대 금지
 ⑤ 공사 중 면적 변경(증감)등 사항 발생시 건축법 및 도 한옥지원조례에 의거 변경 조치하고 공사 진행
 ⑥ 공사시 안전사고 예방 철저
 ⑦ 인건비 체불,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⑧ 목공사의 하도급 방지 및 책임시공을 위한 ‘도편수 실명제’를 도입하여 시공현장에 도편수 실명을 게첨하고 공사 시행

[표 46] 전라남도 한옥시공 등록업체 해당 건설업종

구 분		해 당 업 종	관계법령
주택건설사업		-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9조
건설업	종합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전문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미장 · 방수 · 조적공사업 - 지붕판금 · 건축물조립공사업	

[표 47] 문화재수리 기술자 및 기능자 종류

문화재수리기술자 (6개 분야)	문화재수리기능자 (20개 분야)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실측설계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한식목공(대목수, 소목수), 한식석공(가공석공, 쌓기석공). 화공, 드잡이공, 번와와공, 제작와공, 한식미장공, 철물공, 조각공(목조각공, 석조각공), 칠공, 도금공, 표구공, 조경공, 세척공, 보존과학공(훈증공, 보존처리공), 식물보호공, 실측설계사보, 박제 및 표본제작공, 모사공, 온돌공

○ 2010년부터 전라남도 행복마을의 한옥시공은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업체 가운데 선택하여 계약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전문건설업 이상 등록업체이고, 한옥관련 자격증 소지자 요건을 갖춘 업체를 한옥시공업체로 지정하여 견실 시공과 하자발생시 신속한 보수 등 안정적인 한옥건립 가능

○ 지정절차는 지정공고 후 지정을 원하는 업체가 관련 서류를 갖추어 도에 신청하면 도는 이를 심사하여 업체를 지정하게 됨

○ 한옥 시공업체로 지정되면 행복마을 내 한옥을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며, 전라남도에서는 일 년에 두 차례 새로운 업체의 등록과 기존 업체의 심의를 하여 전문 인력이 유지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관리

- 2012년 3월 기준, 전라남도는 총 28개 업체(종합건설 6, 주택건설

5, 전문건설 17) 지정하여 행복마을 조성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표 48] 전라남도 시공업체 지정조건 변경 내역 및 사유

구분	기존	변경	사유
건설업 등록	주택건설, 종합건설, 전문건설	좌동	-
한옥기술자	한옥관련 기술자 1인	한옥관련 기술자 2인	목공사 하도급 방지를 위한 '목공사 책임 시공제도' 도입을 위해 기술자 1명 추가
시공실적제한	-	5동 이상 신축 실적	부실시공 방지 및 견실시공을 위해 한옥실적이 없는 업체 배재

[표 49]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

종류		업무 범위
1. 한식목공	대목수	목조 건조물의 해체·조립 및 치목(治木)과 그에 따른 업무
	소목수	목조 건조물의 창호·닫집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제작·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2. 한식석공	가공석공	석재의 가공과 그에 따른 업무
	쌓기석공	석조물의 축조·해체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3. 화공		단청(불화를 포함한다)과 그에 따른 업무
4. 드잡이공		드잡이(기울거나 내려앉은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 등을 이용하여 바로잡는 일을 말한다)와 그에 따른 업무
5. 번와(翻瓦)와공		기와의 해체 및 번와와 그에 따른 업무
6. 제작와공		기와·전(塼) 등의 제작과 그에 따른 업무
7. 한식미장공		미장과 그에 따른 업무

8. 철물공		철물 등의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9. 조각공	목조각공	목재를 이용한 조각, 목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석조각공	석재를 이용한 조각, 석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0. 칠공		옻 등의 전통 재료를 이용한 칠, 칠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1. 도금공		도금, 도금과 관련된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2. 표구공		표구, 표구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3. 조경공		조경의 시공과 그에 따른 업무
14. 세척공		세척과 그에 따른 업무
15. 보존과학공	훈증공	재료나 자재의 살균 · 살충 · 방부 등을 위한 훈증과 그에 따른 업무
	보존처리공	보존처리와 그에 따른 업무
16. 식물보호공		식물의 보존 · 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과 그에 따른 업무
17. 실측설계사보		실측 및 설계도서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18 박제 및 표본제작공		박제 · 표본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9. 모사공		서화류의 모사와 그에 따른 업무
20. 온돌공		온돌의 해체 · 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전라남도 한옥업체 지정현황(2012.4. 기준)

○ 전라남도는 한옥시공업체 지정기준의 상향 조정을 통하여 2012년 기준 28개 업체를 지정하였고, 한옥관련 자재업체를 품목별로 53개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 자재공급 업체로 총 81개 업체를 지정

○ 시공 및 자재공급 업체는 모두 전라남도 한옥건축기준에 의하여 전라남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함

○ 시공업체의 건설업종 분포 현황은 전문건설업 17개 업체, 종합건설업 6개 업체, 주택건설업 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음

○ 자재업체로는 목재, 기와, 황토, 창호, 보일러 등의 관련 전문업체로 총 53개 업체를 지정하고 있음

○ 품목별로는 목재 25개 업체, 기와 8개 업체, 황토벽돌 14개 업체, 창호 4개 업체, 보일러 2개 업체 선정

○ 자재업체의 경우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의 일반 정보 이외에도 종업원수, 연간생산량, 연간판매량, 공장 가동률 등의 업체 운영현황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표 50] 전라남도 한옥업체 지정 현황(2012년 기준)

분야	시공업체	자재업체					계
		목재	기와	황토	창호	보일러	
업체수	28	25	8	14	4	2	81

4) 한옥관련 기관 및 단체

①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 2000년 6월 1일 산림청 산하 비영리 공익법인체로 목구조기술자의 권익보호 및 교육훈련을 통한 자격검정과 경력을 관리하여, 전통적 목조문화의 계승과 목구조 기술기반 확충
- 개설 훈련으로는 국비(고용노동부 계좌제) 직업훈련, 지방자치단체·근로복지공단 위탁교육, 목조건축기능자 및 기술자 양성과정이 있음
- 목구조 기술인 교육으로 개설된 과정은 전통한옥시공, 팀버프레임 건축시공, 통나무 건축시공, 한옥소목수, 친환경 주택시공 등이 있음
- 각 과정별로 4개의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3개월(480시간)

[표 51]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과정명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통한옥시공	건축시공 목재가공 한옥설계 한옥시공	480시간 / 3개월
팀버프레임 건축시공	건축시공 목재가공 팀버설계 팀버시공	480시간 / 3개월
통나무 건축시공	건축시공 목재가공 통나무건축설계 통나무건축시공	480시간 / 3개월
한옥소목수	한옥건축 목재가공 작품설계 작품제작	480시간 / 3개월
친환경주택시공	건축시공 목재가공 친환경주택설계 친환경주택시공	480시간 / 3개월

○ 한옥기술자, 한옥기능자 자격: 협회에서 민간자격으로 시행하는 자격

- 한옥기술자(960시간 교육과정): 한옥시공 관리 · 진행 자격(60여 명)
- 한옥기능자 (480시간 교육과정): 한옥시공 (590여 명)

○ 2007년부터 한옥관련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약 650여 명 가입되어 있음 (연간 160~240명 배출)

- 협회 회원들의 경력관리 및 취업정보 제공

○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는 관련 업체활동보다는 사람중심의 목구조 전문가 교육 및 관리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음

경력기준

	기능자	기술자 2급	기술자 1급	지도자	지도사
관련자격	기능사 1년	산업기사 1년	기 사 1년	기 사 3년	기술사, 건축사 3 년
관련학력	고 졸 1년	전문대졸 1년	대 졸 1년	석 사 1년	박 사 3년
관련경력	경 력 3년	경 력 5년	경 력 7년	경 력 10년	경 력 15년

[그림 26]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자격취득 절차 및 경력기준

② (사)한국목조건축협회

○ (사)한국목조건축협회는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과 목조건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6년 3월 15일 설립 허가된 사단법인

○ (사)한국목조건축협회의 주요 사업 및 활동분야는 전시회&세미나, 해외연구교육, 현장견학교육, 회원사 워크샵, 품질인증, 제도개선활동 등을 하고 있음

○ (사)한국목조건축협회는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와 목구조건축물의 품질인증제(5-star Program)을 실시하고 있음

[그림 27] (사)한국목조건축협회, 목조건축 품질인증절차

○ 협회 정회원으로 목조건축업에 관한 전문적인 시공, 설계, 자재생산, 자재 유통 및 목조건축 관련 단체, 연구기관 등의 업체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기업준회원으로는 목조건축 전문업체의 협력업체 또는 설계, 자재생산 및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목조건축 관련 회원사는 시공, 자재, 설계업체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공업체(32개), 자재업체(42개), 설계업체(15개), 총 89개 업체 등록

naewoe	대표	박동수
	업체명	㈜내외건장
	홈페이지	http://naewoegj.co.kr
MORITDOL 주식회사 머릿돌	대표	이정현
	업체명	㈜머릿돌
	홈페이지	http://moritdol.co.kr
STUGA WOODEN CONSTRUCTION	대표	김갑봉
	업체명	㈜스튜가목조건축연구소
	홈페이지	http://
팀버이앤씨	대표	이기노
	업체명	팀버이엔씨
	홈페이지	http://timberhouse.co.kr
coeco 코에코하우징	대표	강대경
	업체명	코에코하우징
	홈페이지	http://coeco.co.kr
(주)파인포레스트	대표	정복균
	업체명	㈜파인포레스트
	홈페이지	http://pineforest.co.kr
SYSHOME C&L Co., Ltd. (주)시스홈 씨엔엘	대표	이국식
	업체명	㈜시스홈씨엔엘
	홈페이지	http://
J·B Loghomes (주)중부이엘에스	대표	김경환
	업체명	㈜중부ELS
	홈페이지	http://jbloghomes.co.kr
kmbeam	대표	이한식
	업체명	경민산업㈜
	홈페이지	http://kmbeam.co.kr
NShome	대표	박찬규
	업체명	㈜엔에스홈
	홈페이지	http://nshome.net
H&H DAEHWA Human & Home	대표	박광섭
	업체명	대화
	홈페이지	http://daehwawood.com
리-부라더스 주식회사 Lee Brothers & Co.,LTD.	대표	이정복
	업체명	리부라더스㈜
	홈페이지	http://leebros.co.kr

[그림 28] (사)한국목조건축협회 회원사 정보 구축 예

③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 국토해양부 산하에 등록된 유일한 목조건축관련협회로서 국민의 주거환경 향상과 목조건축 기술보급 및 발전을 목적으로 보다 경제적이고 양질의 목조건축(주택)전문설계, 자재공급, 전문 책임시공을 하는 회원사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목조건축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창업을 바라는 전문기술자 양성을 위하여 전국 목조건축교육원과 상호 협력하여 목조건축기술교육 및 훈련, 자격증제도, 연수 및 조직관리를 진행하면서 기술 및 품질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목조주택검사원자격시험 및 목조주택감리인증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에서 요구되는 목조주택검사원제도도 시행

○ 목조건축디자인센터에서는 목조건축기술교육에 강의 프로그램, 교재, 수료증 등의 자료를 공동으로 지원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온라인 사이버교육으로 한국조형예술원(kiad)의 목조건축디자인학부 〈목조주택의 기초과정〉과 〈목조건축디자인 전문과정〉 교육도 지원

○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한국전통목조건축과 현대목조건축의 접목을 위한 의장 및 기술적 연구, 한국형 주택의 디자인연구와 전문기술개발을 위한 자료발간 및 지원, 양질의 목조주택 내화구조 및 내진구조의 기술개발 연구와 기술자문, 친환경적 재료 및 기술의 보급으로 그린빌딩을 위한 유통합리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와 지도 등이 있음

○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의 협회사는 개발, 설계, 인테리어, 건설, 자재, 기타 분야로 분류되어 있음

○ 2012년 9월 기준, 협회사는 개발업체(3개), 설계업체(3개), 인테리어업체(1개), 건설업체(5개), 자재업체(7개) 등으로 총 19개 업체 등록

성 명	회사명	홈페이지
김광중 (Kim, Kwang Joong)	(주)한빽알앤씨 (Hanbek R&C Co., Ltd.)	http://www.eldoradoresort.co.kr
조남호 (Cho, Nam Ho)	(주)솔토건축사사무소 (Soltos Architects Co., Ltd.)	http://www.soltos.net
한영호 (Han, Young Ho)	(주)부림에이디프로 (Purim ADpro Co., Ltd.)	http://www.adpro.co.kr
심재희 (Shim, Jae Hee)	IS 인테리어디자인 (IS Interiordesign)	http://www.interior-street.com
조한욱 (Cho, Han Wook)	일토건설(주) (ILTO Construction Co., Ltd.)	http://www.iltocon.co.kr
강수철 (kang, Soo Chul)	(주)신정에스앤더블유 (Sinjung Space and Wood Co.,Ltd)	http://www.isinjung.com
김영언 (Kim, Young Un)	(주)태성IDE (TAESUNG IDE Co., Ltd.)	http://www.pella.co.kr
박태규 (Park, Tae Kyu)	테라코코리아(주) (TERRACO KOREA Co., Ltd.)	http://www.terraco.co.kr
박찬규 (Park, Chan Kyu)	(주)엔에스홈 (NShome Co., Ltd.)	http://www.nshome.net
이정재 (Lee, Jung Jae)	(주)테릴코리아 (Terreal Korea Co., Ltd.)	http://www.terreal.co.kr
김상병 (Kim, Sang Byung)	랜드러버스코리아(주) (Landlovers Korea Co., Ltd.)	http://www.landlovers.co.kr
정해민 (Jung, Hae Min)	(주)한라하우징 (Hanla Housing Co., Ltd.)	http://www.hanlahousing.net
김중근 (Kim, Jung Kyun)	(주)삼익산업 (Samic Co., Ltd)	http://www.siwood.com

[그림 29]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회원사 정보 구축 예

3. 한옥산업 관련 업체 현황

1) 전국단위 한옥업체 현황

○ 한옥의 건축과 관련된 생산 네트워크 DB의 구축은 증가하는 한옥의 수요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건실한 한옥업체를 양성하며, 궁극적으로 한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그러나 전국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옥관련 업체 및 전문가 정보를 확보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매우 다양한 곳에 산재하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까다로움

○ 지속적인 지자체 면담 및 한옥관련 단체 및 기관, 한옥 경험자들의 면담을 통하여 한옥업체 DB의 양을 확장 및 갱신 할 수 있음

□ 한옥 관련 업체는 우리나라 전체 건설업체의 0.83%를 차지

○ 2012년 기준, 우리나라 한옥관련 설계 · 시공 · 자재 업체는 총 481개사로 조사되었으며, 설계업체 104개사, 시공업체 201개사, 자재업체 52개사[25)]를 포함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전체 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포함하여 약 57,000개사[26)]이며, 한옥관련 업체는 우리나라 전체 건설업체의 0.83%에 해당하는 규모임을 알 수 있음

- 국토해양부의 건설경제 주요통계 2010년 자료에 의하면 2010년 4월 기준 우리나라 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 12,265개사, 전문건설업 45,351개사로 총 57,616개사가 활동하고 있음
- 이는 건설용역업체가 제외된 수치이므로 전체 건설업체에서 한옥관련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낮을 것으로 예측됨

---

25) 한옥자재업체 정보는 전라남도에서 지정 · 관리하고 있는 자재업체 정보(2012기준)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따라서 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한옥자재업체 정보 누락의 한계점을 가짐
26)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의 건설업 등록정보이며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을 제외한 수치임

[표 52] 우리나라 전체 건설업체 동향(단위, 업체수)

구 분	합 계	일 반	전 문
1970	848	848	–
1975	669	669	–
1980	3,002	516	2,486
1985	5,319	492	4,827
1990	6,760	918	5,842
1991	7,383	912	6,471
1992	14,133	1,700	12,433
1993	13,828	1,633	12,195
1994	20,381	2,651	17,730
1995	22,579	2,958	19,621
1996	25,385	3,543	21,842
1997	28,063	3,896	24,167
1998	29,640	4,207	25,433
1999	34,855	5,151	29,704
2000	39,801	7,978	31,823
2001	47,533	11,961	35,572
2002	49,308	12,643	36,665
2003	49,358	13,064	36,294
2004	50,848	13,110	37,738
2005	53,594	13,254	40,340
2006	53,844	13,020	40,824
2007	55,301	12,942	42,359
2008	56,066	12,711	43,355
2009	57,000	12,402	44,598
2010.1月	56,916	12,309	44,607
2月	57,070	12,275	44,795
3月	57,436	12,285	45,151
4月	57,616	12,265	45,351

2) 지역별 한옥업체 분포 현황

□ 지역별 비중은 수도권이 25.78%, 지방이 74.22%를 차지

○ 지역별 한옥관련 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전체 업체수의 25.78%인 124개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74.22%인 357개사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설계업체 49개사, 시공업체 25개사로 총 74개사가 한옥 생산관련 업체로 조사되었으며, 전국의 한옥업체수 대비 15.38%를 차지하고 있음

- 그 외 수도권 지역인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설계업체 8개사, 시공업체 42개사로 총 50개사가 한옥 생산관련 업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대비 10.4%를 차지하고 있음

○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및 지방의 한옥 업체는 전국적으로 357개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체의 74.22%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의 경우 행복마을 조성사업 등 한옥에 대한 지원 및 업체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전라남도가 설계 34개사, 시공 47개사, 자재업체 52개사를 포함하여 총 133개사가 활동하여 전국의 27.65%가 분포하는 등 수도권 보다 많은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전라남도의 한옥지원 사업의 운영 목적이 전라남도 내로 한옥관련 업체 정착을 유도하고, 도내 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를 지원대상의 자격으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타 지역에 비하여 전라남도에도 활동하고 있는 한옥관련 업체의 객관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하였으며, 한옥관련 자재 업체를 포함하고 있어 업체의 분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이외에도 경상북도가 설계업체 35개사, 시공업체 56개사로 총 91개사가 운영되어 전체의 18.92%가 분포하고 있으며, 전라북도가 총 35개사

로 7.28%, 경상남도가 31개사로 6.44%를 차지하며 뒤를 잇고 있음

- 충청남도는 22개사로 4.57%, 강원도는 17개사로 3.53%, 충청북도는 16개사로 3.33%를 차지하고 있음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는 분포 비율이 높지 않음

□ 업체 유형별 분포 현황

○ 우리나라 한옥설계 업체는 서울에 49개사, 경기도에 8개사가 분포하여 수도권에 57개사가 분포하는 등 전체의 약 35%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음

-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경상북도 지역이 35개사로 가장 많은 설계업체가 위치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34개사, 전라북도 17개사 등의 순으로 분표하고 있음

○ 한옥 시공업체의 경우 경상북도에 56개사, 전라남도에 47개사, 경기도 37개사, 경상남도 27개사, 서울 25개사 순으로 분포하며, 설계업체에 비하여 비교적 수도권 집중화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서울특별시의 한옥지원시업의 경우 사업 심사 및 승인과 관련하여 설계도면에 설계업체를 명시할 뿐 시공업체의 정보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한옥 관련 전문가의 활동에 제한이 없어 한옥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의 정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전라남도의 경우 한옥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의 자격을 지정하고, 매년 등록업체를 갱신하고 있어 한옥업체의 객관적인 정보 입수가 가능함

○ 자재업체의 경우 전라남도에 등록된 자재업체와 일부 한옥관련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재업체 정보로 DB의 양이 제한적인 상태임

[표 53] 지역별 한옥 업체 분포 현황

구분		설계업체	시공업체	자재업체	계
수도권	서울	49개사 (30.43%)	25개사 (9.33%)	0개사 (0.00%)	74개사 (15.38%)
	인천	0개사 (0.00%)	5개사 (1.87%)	0개사 (0.00%)	5개사 (1.04%)
	경기	8개사 (4.97%)	37개사 (13.81%)	0개사 (0.00%)	45개사 (9.36%)
	소계	57개사 (35.40%)	67개사 (25.00%)	0개사 (0.00%)	124개사 (25.78%)
지방	부산	0개사 (0.00%)	2개사 (0.75%)	0개사 (0.00%)	2개사 (0.42%)
	대구	2개사 (1.24%)	0개사 (0.00%)	0개사 (0.00%)	2개사 (0.42%)
	광주	3개사 (1.86%)	2개사 (0.75%)	0개사 (0.00%)	5개사 (1.04%)
	대전	0개사 (0.00%)	0개사 (0.00%)	0개사 (0.00%)	0개사 (0.00%)
	울산	0개사 (0.00%)	0개사 (0.00%)	0개사 (0.00%)	0개사 (0.00%)
	강원	2개사 (1.24%)	15개사 (5.60%)	0개사 (0.00%)	17개사 (3.53%)
	충북	3개사 (1.86%)	13개사 (4.85%)	0개사 (0.00%)	16개사 (3.33%)
	충남	4개사 (2.48%)	18개사 (6.72%)	0개사 (0.00%)	22개사 (4.57%)
	전북	17개사 (10.56%)	18개사 (6.72%)	0개사 (0.00%)	35개사 (7.28%)
	전남	34개사 (21.12%)	47개사 (17.54%)	52개사 (100.00%)	133개사 (27.65%)
	경북	35개사 (21.74%)	56개사 (20.90%)	0개사 (0.00%)	91개사 (18.92%)
	경남	4개사 (2.48%)	27개사 (10.07%)	0개사 (0.00%)	31개사 (6.44%)
	제주	0개사 (0.00%)	3개사 (1.12%)	0개사 (0.00%)	3개사 (0.62%)
	소계	104개사 (64.60%)	201개사 (75.00%)	52개사 (100.00%)	357개사 (74.22%)
전국		161개사	268개사	52개사	481개사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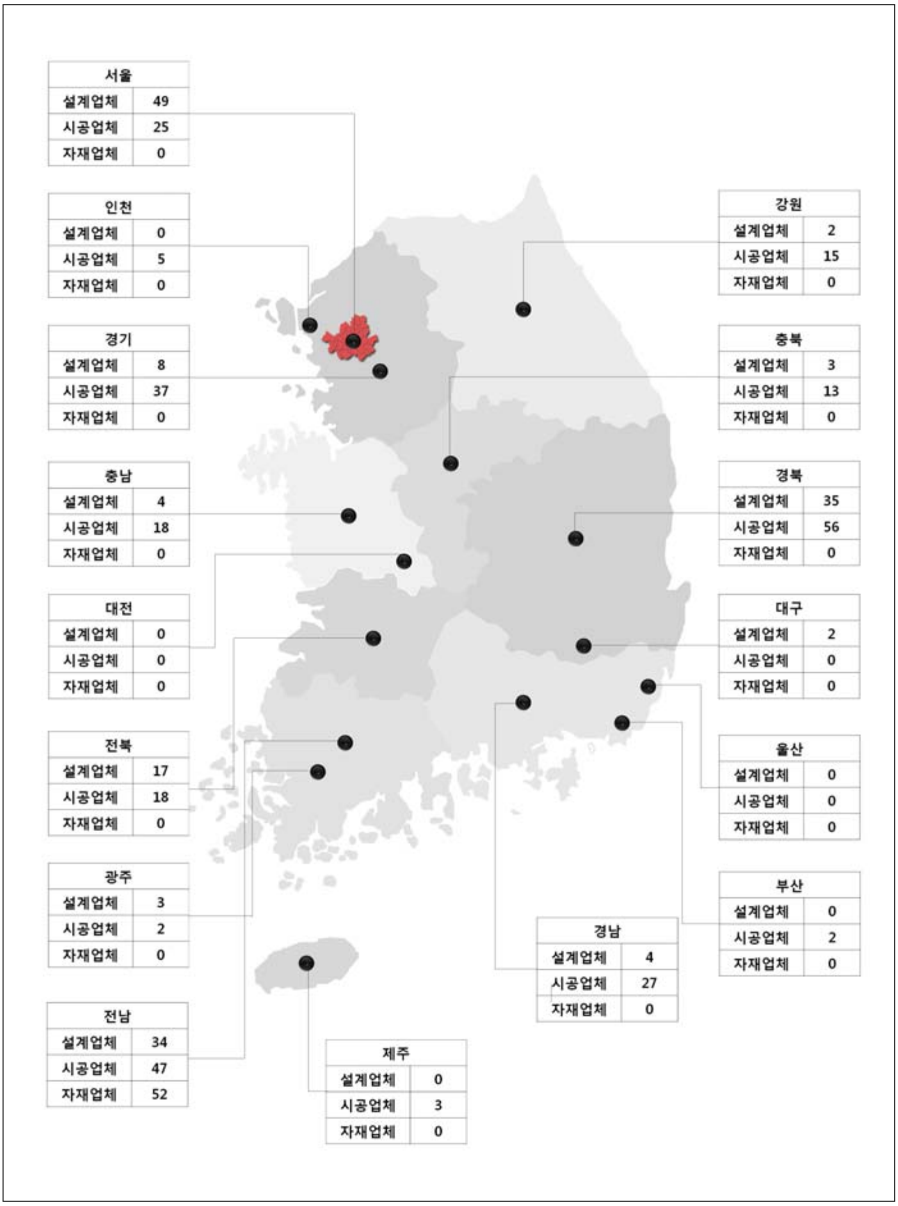

[그림 30] 전국 한옥업체 분포 현황도

Ⅴ. 한옥산업 DB 관리방안

제5장 한옥산업 DB 관리방안

1. 건설산업 DB 관리 사례
2. 한옥산업 DB 관리방향

1. 건설산업 DB 관리 사례

○ 각종 건설산업 통계 및 관련 DB는 건설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산업의 현황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경기의 파악이나 국가의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지표가 됨

○ 양적으로 증가하는 DB의 효율적인 수집과 관리를 위하여 DB의 통계적 구축을 위한 DB시스템의 마련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DB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각종 관련 DB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원활해야 함

○ 한옥산업과 관련된 DB의 종류는 기획에서부터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생산단계와 한옥 자재생산 및 조달에 관련된 정보까지 다양하므로 각종 정보들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구축·관리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건설관련 정보 구축 및 관리시스템의 사례를 검토하여 한옥산업 DB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은 ‘건설산업DB구축사업’의 추진결과로 구축된 건설산업정보의 원할한 유통·활용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며, 각 세부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총칭하는 명칭임

□ 개발배경

- ○ 1990년대 중반 WTO가입, OECD체제 출범 등으로 국내시장이 외국업체에게 개방으로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협회가입 임의화 등 경쟁원칙에 입각하여 건설산업 규제가 완화되어 왔으며 그 결과 건설산업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음
- ○ 건설산업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정책의 수립 및 이의 근간이 되는 체계적인 건설산업정보의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음
- ○ 이에 국가차원에서의 건설산업정도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서 1999년부터 현재까지 '건설산업DB구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개발 목표

- ○ 국가적 차원의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 건설행정의 정보화 기반 조성을 통한 건설행정의 효율성 제고
- ○ 공사실적을 종합 관리 함 으로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 방지
- ○ 건설산업정보의 상호 연계 기반 조성을 통해 정보 공동 활용 체계 구축
- ○ 건설수요자에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건설시장의 낙후된 구조와 부조리 관행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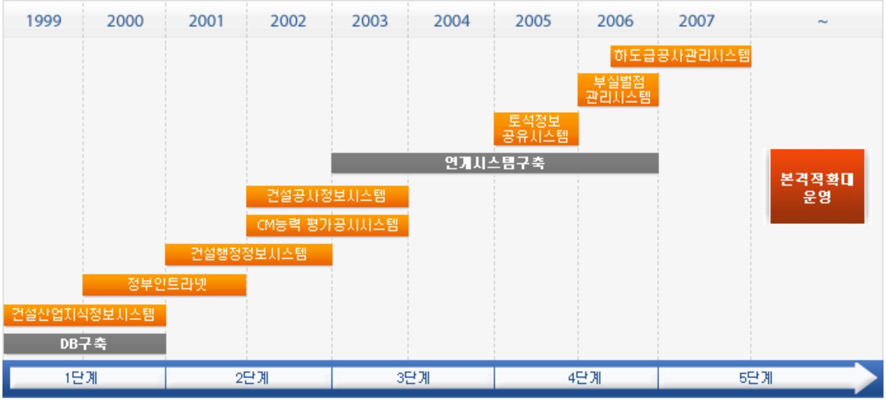

[그림 31] KISCON 개발과정

[표 54]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추진연혁

1단계 (1999~2000)	- 건설산업원천자료 정비 및 DB 구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파일럿 운영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구축 - 정부인트라넷(GOV) 구축
2단계 (2001~2002)	-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구축 -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구축 -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 · 공시시스템(PCM) 구축 -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전국 지방자치단체(16개 시 · 도, 234개 시 · 군 · 구) 확산보급 - 유관기관 연계 구축
3단계 (2003~2004)	-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운영 -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결과 공시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정부 인트라넷(GOV) 개편 - 부실업체 및 위법업체 관리 기능 개발 -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구축 - 유관기관 연계 구축
4단계 (2005~2006)	-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운영 -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PIS) 구축 -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SCWS) 구축 - 유관기관 연계 구축
5단계 (2007~)	-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PIS) 운영 -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SCWS) 구축.운영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정책지원 - 운영.유지관리

□ 구성체계

○ 건설산업 중앙 DB는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SCWS), 건설사업능력평가/공시시스템(PCM),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PIS),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정부인트라넷(GOV)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2]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구성체계

[표 55]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구성체계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 사 용 자 :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 - 개발시기 : 2001년 - 운영시기 : 2002년에 전 지방자치단체 확산보급, 현재 전 지자체에서 이용 중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10조 등
원 · 하도급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SCWS)	- 사 용 자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 및 공공 · 민간발주자 -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 2002년 구축 및 시범운영, 2003년 ~ 현재 운영 중 - 하도급건설공사정보시스템(SCWS) : 2007년 구축 및 시범운용, 2008년 ~ 현재 운영 중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관련고시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2-274호(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이용 정보통신망 지정)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 · 공시시스템	- 사 용 자 : 건설사업관리협회(주), 일반국민 - 개발시기 : 2002년 - 운영시기 : 2003년 8월 31일 2003년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결과 공시(101개 업체) 2003년 8월 31일 2004년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결과 공시(80개 업체)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4 - 관련고시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2-255호(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 · 공시 이용 정보통신망 지정)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PIS)	- 사 용 자 :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기술자, 조달청, 관련협회, 발주기관 - 개발시기 : 2006년 - 운영시기 : 2007년 ~ 현재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4 내지 제13조의6 - 관련고시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607호(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용역현황관리기관 지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65호(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 사 용 자 : 토석공급자, 토석수요자 - 개발시기 : 2004년 - 주요기능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 및 사토 등의 정보를 입력 · 공시함으로써 수요자가 실시간 조회를 통

	해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KISCON)	- 사 용 자 : 일반국민, 기자재업체 - 개발시기 : 2004년 - 주요기능 : 각 시스템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포털사이트이며 이와 더불어 건설뉴스, 기자재, 각종 통계, 법령 등의 건설산업에 관련된 정보 종합 서비스
정부인트라넷 (GOV)	- 사 용 자 : 국토해양부 - 주요기능 :건설행정,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능력 등 국토해양부의 정책결정과 행정에 관련된 정보 종합 서비스 제공

②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27]

○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Construction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규정에 의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16개 시·도 및 234개 시·군·구)에서 건설행정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임

[그림 33] 건설행정정보 처리 절차

○ 국토해양부가 지방자치단체 건설업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건설업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해 2001년에 구축한 시스템으로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2003년 9월 1일부터 건설업행정 처리결과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하여 공고하고 있음

□ 정보 구축의 범위

○ 2003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건설행정 정보의 범위는 건설업 등록, 등록기준사항 신고, 양도신고, 법인합병신

27) http://www.kiscon.net/

고, 상속신고, 행정처분 등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음

1.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2.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3.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변경
4.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 · 합병 · 상속의 신고수리
5.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 시정지시 · 영업정지 · 과징금 부과 · 등록말소
6.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표 56] 건설행정정보의 범위

<table>
<tr><th colspan="3">대상업무</th><th rowspan="2">지정정보통신망 공고 관련규정</th></tr>
<tr><th colspan="2">구분</th><th>관련규정</th></tr>
<tr><td colspan="2">건설업 등록</td><td>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td><td>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td></tr>
<tr><td colspan="2">등록기준사항 신고</td><td>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td><td>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2</td></tr>
<tr><td colspan="2">양도신고</td><td>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td><td>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td></tr>
<tr><td colspan="2">법인합병신고</td><td>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td><td>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td></tr>
<tr><td colspan="2">상속신고</td><td>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td><td>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td></tr>
<tr><td rowspan="6">행정
처분</td><td>시정명령</td><td rowspan="5">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의3시행령 제80조, 제81조, 시행규칙 제36조의2, 제36조의3</td><td rowspan="6">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82조</td></tr>
<tr><td>영업정지</td></tr>
<tr><td>등록말소</td></tr>
<tr><td>자진반납</td></tr>
<tr><td>과징금부과</td></tr>
<tr><td>과태료부과</td><td>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및 제100조</td></tr>
</table>

○ 건설업행정 처분공고를 통해 공고되는 공고종류는 신규공고, 정정공고, 변경공고, 철회(취소)공고가 있음

- 정정 · 변경 · 철회(취소)공고는 건별로 1건씩 공고됨
- 신규공고이후에 정정 · 변경 · 철회공고를 한 경우, 상호간의 연결을 보여줌

- 각 공고문의 조회화면으로 가면 각 공고문 하단에 관련 공고문들이 링크되어 있어 정정 · 변경 · 철회공고가 언제 되었는지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행정처분 공고 후 가처분 상태가 되는 경우, 해당 공고문에 가처분 상태로 표기됨

[표 57] 공고종류

공고종류	내용
신규공고	최초공고
정정공고	이미 공고처리한 내용 중에 단순한 오기사항이 있는 경우 예) 상호명, 주소, 대표자, 등에 오기가 있는 경우
변경공고	이미 공고처리한 내용에서 법원에 의한 조정 등으로 인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된 경우. 즉, 단순오기가 아니라 어떤 분명한 원인에 의하여 처분내용 등이 변경 예) 영업정지기간변경 등
철회(취소)공고	이미 공고처리한 내용을 철회(취소)하고자 할 경우 예) 행정처분사항이 철회되는 경우, 공고한 사항을 아예 없었던 걸로 취소하는 경우

③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원도급자가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 · 통보하도록 하고 건설공사 수행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개발된 Web 기반의 정보 시스템임

○ 공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는 2003년에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2004년 1월 1일부터 도급금액 1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였음

○ 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추가)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사용기관	-건설업체(건설공사대장 통보) -공공 · 민간발주기관(건설공사대장 확인)
연계기관	-조달청,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주요기능	-건설업체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및 발주자의 공사관리 기능 공사수행 종합관리 및 기술인 이중배치 확인 등 업무지원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통보)의 ① 및 ③항, 시행규칙 제21조(건설공사대장등)의 별지 제17호 서식

④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SCWS)

-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건설업체가 작성하여 통보 하도록 되어 있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 · 통보하도록 하고 하도급 건설공사 수행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개발된 Web 기반의 정보시스템임

-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는 하도급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인 하도급 건설공사에 적용

- ○ 통보는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추가)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추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사용기관	-하도급 건설업체(하도급 공사대장 통보) -공공 · 민간발주기관(하도급 공사대장 확인)
연계기관	-조달청,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주요기능	-건설업체의 하도급 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및 발주자의 공사관리 기능 불법 · 편법 하도급 방지 등에 활용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통보)의 ② 및 ③항, 시행규칙 제21조(건설공사대장등)의 별지 제1-2호 서식

⑤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 · 사토 등의 설계량 및 발생량 등 토석정보를 수집 · 관리하여 토석수요자에게 연결, 토석재활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입력, 조회, 현황 · 통계 시스템으로 구성

○ 입력기능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공공공사는 발주자가, 민간공사는 수요자(발주자, 시공사, 감리단 등)가 사용주체가 되어 토석정보를 직접 입력 · 관리 · 갱신

○ 조회기능은 토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정보검색, 위치정보검색, 맞춤정보검색 기능으로 구축

○ 현황 · 통계기능은 정부기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력 · 조회시스템과 별도 URL로 구성되며 정부차원에서 전국의 공사정보, 토석정보, 반입 · 반출정보 등의 현황 및 통계정보를 조회

사용기관	-발주기관, 건설업체, 감리업체, 설계업체, 대국민
주요기능	-GIS를 활용한 정보 입력 및 제공 -맞춤형 정보제공 및 토석자원의 B2B 기능지원 -국토해양 총사업비 조정업무 지원
근거법령	-국토해양 총사업비조정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1호)

⑥ 건설CALS[28]

○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건설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는 IT를 활용한 건설CALS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건설CALS는 건설사업의 기획 · 설계 · 시공 · 유지 등 전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 · 도면의 전자적 교환 · 공유를 위한 전략으로 동 사업을 통해 건설인허가 · 용지보상 · 건설사업관리 등 6종의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고 전자도면작성표준 · 도면정보교환 등 7종의 표준관리를 개발 지원하고 있음

○ 2011년에는 사업관리 체계 선진화를 위해 도로사업에 작업분류체계(WBS : Work Breakdown Structure)를 도입하여 지방국토관리청 신규사업 10개 현장에 시범적용 중이며, 용지보상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항만 · 항공사업에도 확대 적용 중임

- 주이용자는 시공사 · 감리사 · 건축사 · 국토부 · 지자체 등에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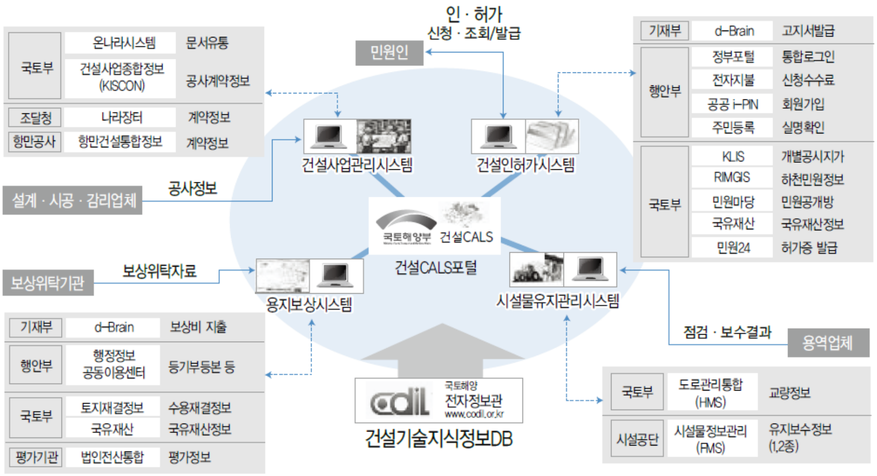

[그림 34] 건설CAL시스템 현황
출처: 국가정보화백서(2012)

28) CALS : 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

⑦ 건설산업종합정보망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250개 지자체, 5만여 건설사, 2만6,000여 발주자가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2001년부터 구축한 건설행정처분, 건설업등록관리, 건설공사수행사항, 하도급 및 부실업체 관리 등을 통해 다양한 건설업체 관련정보, 발주자의 적격건설업체 선택, 하도급 불법·불공정거래 관행 해소 등 건설행정업무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또한 공공발주공사 낙찰자선정, 보증발급 자격심사, 불공정하도급 조사 등 유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달청, 보증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등 27개 기관에 건설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2011년에는 건설업체의 기술능력·신인도·실적 등의 정보제공 확대, 전자보증 유통기능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에는 포괄대금지급보증 공시기능 등을 추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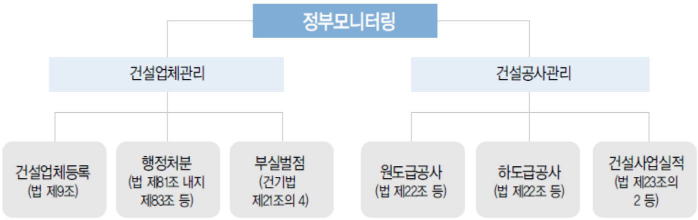

업무주체	250 전국지자체(시도/시군구)	발주자, 위탁기관	5만 건설사, 3만 공공, 민간발주자	CM협회,대국민
정보범위	전국업체(종합, 전문)	전국업체, 기술자	1억 이상 원도급공사(전국) 4,000만 원 이상 하도급공사(전국)	전국 CM업체
갱신주기	업등록, 변경, 처분 후 3일 이내	반기별 누계벌점	도급(변경) 후 30일 이내	1년마다 실적공사
관련법령	건산법 시행령 제10조	건기법 제24조의 3	건산법 시행령 제26조	건산법 제23조의 2

[그림 35]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업무범위

2. 한옥산업 DB 관리방향

- ○ 한옥산업과 관련된 주체로는 설계사, 시공사, 자재업체 등의 건설업체와 건축주, 건설기술자, 정부기관 및 한옥관련 단체들이 될 수 있음
- ○ 이들은 각각 협업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각 주체가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못하여 한옥생산을 위한 합리적인 협업이 어려운 실정임
- ○ 지금까지 공공에서 제공하는 한옥산업과 관련된 DB로는 문화재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DB와 일부 연구기관 및 단체에서 제공하는 한옥 기술노하우 및 회원사로 등록된 업체 정보 등이 대부분이었음
- ○ 이러한 점은 한옥산업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해주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옥 보급 활성화를 목표로 한옥의 생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 ○ 최근 자료의 전자문서 변환 및 저장, 보관, 유통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DB를 구축하는 작업은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 그러나 무한히 확장되고 있는 DB 구축 영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정보의 양 보다는 DB의 필요성과 DB의 실수요자, DB의 전달방식과 같은 DB의 특성별로 정보 구축의 목적을 뚜렷하게 하는 일임
- ○ 한옥산업 DB 가운데 한옥 설계, 시공, 자재업체의 정보는 한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들에게 유용한 정보이며, 미래의 한옥 건축주들이 한옥 건축의 이해와 업체 선택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한옥 유형과 소재활용의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는 정보임
- ○ 또한 한옥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은 자재의 생산, 공급, 유통 정보를 전국적으로 검토하여 유기적인 산업 운영시스템의 정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한옥산업의 DB를 구축하는 작업은 한옥산업 진흥과 신한옥 보급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음

○ 이러한 한옥산업 DB 구축은 한옥이라는 건축적 특성(정보의 객관성)과 건설 산업적 특성(정보의 최신성), 수요의 특이성(정보의 활용성)을 반영하여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

□ DB의 전문성 : 한옥업체로서의 객관적인 자격기준

○ 건축적 의미로 한옥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한옥 건축에 관련된 설계, 시공, 자재업체를 선별하여 한옥산업 DB로 구축하는 일은 쉽지 않은 작업임

○ 한옥의 품질 함양과 부실시공 방지, 한옥 유지·보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옥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의 객관적인 자격요건 및 지정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문화재수리업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자격요건과 문화재수리업자의 자격, 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도급 및 하도급 원칙 및 제한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 DB의 객관성을 뒷받침함

제16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은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문화재수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두 종류 이상의 공종(工種)이 복합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문문화재수리업은 문화재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복합된 문화재수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다.

○ 또한 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 근거, 인가절차 등을 마련하여 문화재수리 등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제사업 등을 장려하고 있음

○ 한옥산업 DB 구축을 위한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고 있는 사례인, 전라남도의 경우 '한옥건축기준'을 마련하고, 한옥마을 조성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한옥시공업체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지정함으로써 한옥의 품질을 보장하고, 높은 시공만족도뿐만 아니라 지역의 한옥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음

○ 또한 전라남도는 매년 2회 이상 한옥 건축 시공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한 한옥에 '우수 한옥' 건축상을 시상하며, 시공업체는 '한옥 우수 시공업체'로 지정하고 있음

○ 이밖에도, 한옥인증제도 마련, 한옥전문 기술자의 국가 자격제도 마련, 한옥 업체 전문기술자 필수 보유 등 한옥 업체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한옥산업 DB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

전라남도 한옥시공업체 지정 기준 1. 전라남도에 소재지를 둔 전문공사업 이상 건설업 등록업체로서 한옥관련자격증(문화재청발급) 소지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하고 2년간 한옥 5동 이상 건립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을 하고 있음 2. 한옥관련자격증은 「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7조, 제8조에 해당하는 자격증 가운데 문화재수리기술자, 한식목공(대목수, 소목수), 드잡이공으로 제한

□ DB의 양질(良質)성 : 한옥업체의 최근 한옥 건축 활동 여부

○ 일반적으로 DB 구축사업의 주된 목적 및 성과는 DB의 양적 팽창에서 시작되지만 특히, 건설산업 중에서도 한옥산업의 경우 DB의 양적 확보보다는 최신 정보로의 갱신 및 보완을 통하여 양질의 DB를 생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 과거로부터 구축되어 온 산업 DB는 해당 산업의 지난 동향을 분석하고, 산업전망을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하지만, 현재 한옥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 및 설계·시공 관련 업체들에게는 현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DB가 필요함

○ 즉, 불과 1년 전까지 전문적으로 한옥 생산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업체의 정보는 한옥 수요자에게는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는 DB임에 틀림없음

○ 건설업체는 매년 말소·폐업, 합병, 부도 등의 이유로 소멸하거나, 새로운 건설업체가 설립되는 등 시기 및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

○ 2011년 4분기 건설산업정보에 의하면 우리나라 건설업체 말소 및 폐업 건수는 1,171건으로 전분기에 비하여 33.1%나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자진폐업이 49.7%(582건)로 가장 많았음

[표 58] 2011년 4분기 건설업체 말소·폐업사유

(단위 : 업체수, %)

구분		2011년 4분기					
					비중		
		계	종합	전문	계	종합	전문
자진폐업		582	91	491	49.7%	28.3%	57.8%
등록 말소	등록기준 미달	165	93	72	14.1%	29%	8.5%
	주기적신고 미이행	67	7	60	5.7%	2.2%	7.1%
	영업정지위반	6	2	4	0.5%	0.6%	0.5%
	폐업사실확인	79	33	46	6.7%	10.3%	5.4%
	기타	4	3	1	0.3%	0.9%	0.1%
	소계	510	201	309	43.6%	62.6%	36.4%
포괄양도/합병에 의한 소멸		79	29	50	6.7%	9.0%	5.9%
총계		1,171	321	850	100%	100	100%

* 출처 : 건설산업정보센터(2011)

○ 또한 2004년 509개사까지 증가했던 건설업체의 부도 추이는 점차 감소해오다가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443개사까지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전문공사업 부도업체 증가의 여파로 290개사가 부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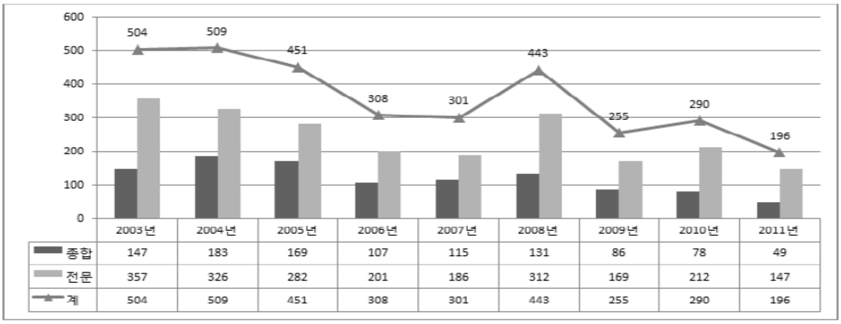

[그림 36] 연도별 부도업체수 추이
〈출처 : 건설산업정보센터(2011)〉

○ 이와 같이 건설업체는 다양한 사회적 여건과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개체수의 변동이 크며, 한옥산업 또한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산업의 동향을 예측하고 수요자에게 양질의 DB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DB의 갱신 및 보완 작업을 통한 양질의 DB 구축이 요구됨

□ DB의 활용성 : 한옥 수요자를 위한 대국민 정보제공

○ 한옥산업 DB는 정보 수집자의 일방향적인 정보 구축보다는 한옥산업에 관련된 생산자와 미래의 한옥 건축주인 수요자를 연계하고, 또한 생산자들 간의 한옥 기술 및 자재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다(多)방향의 소통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 DB 구축 사업은 한계점이 없는 작업이고, 최근의 정보관리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DB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건인가라는 DB구축의 목적을 뚜렷하게 하는 일임[29)]

○ 이러한 한옥산업 DB 구축 및 관리는 정보수집자 주도형의 일방적 DB 구축 및 일방향의 정보제공 체계가 아닌 한옥 건축 참여자들이 건설활동을 통하여 생산하는 다양한 정보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는 양방향의 DB구축 시스템 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29) 전봉희 외1(2011) 한옥 보급활성화를 위한 전통한옥 DB의 구축, 한국주거학회, 주거, p.6.

○ 한옥 산업 DB의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업체의 자발적인 업체현황 및 이력 정보 전산화 유도하고, 정보 제공자와 수요자를 연계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한옥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공간요소 DB, 한옥구축 요소 DB, 한옥설계기술 DB 등과 연동되어 한옥의 총체적인 통합정보제공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음

- 국가한옥포털(국토해양부 · 국가한옥센터, 2011~)을 통한 대국민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옥의 현황 · 정책 · 연구 · 산업정보 · 통계 및 홍보를 제공하고 있음

○ DB를 하나의 기관에서 관리하여 제공해주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각 협회와 업체에서 DB를 구축하여 하나의 전문기관에서 통합하여 시스템을 네트워크화하는 방안이 보다 유용할 수 있음[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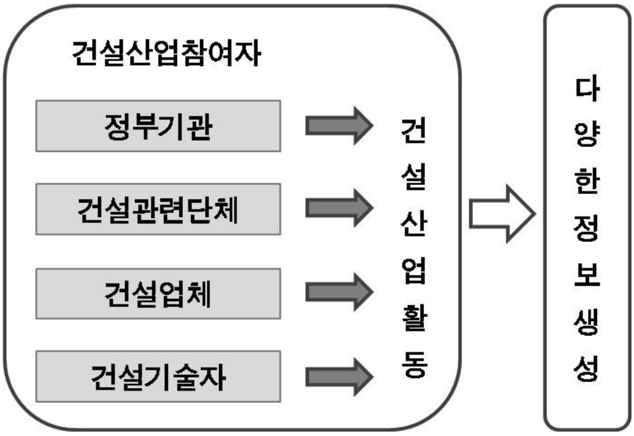

[그림 37] 한옥산업 DB 구축 및 관리의 다양한 주체

○ 이러한 한옥 DB 구축의 궁극적인 목표가 한옥 건축가와 기술자, 수요자들을 한옥산업 시장으로 유입시키고, 한옥의 보급 활성화를 촉진시키는데 있으므로 한옥산업의 정보 구축 및 관리는 한옥의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30) 김수암(1996) 각종 건축통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건축학회, 건축, p.53.

Ⅵ. 결론

C·H·A·P·T·E·R·6

제6장 결론

1. 요약 및 결론
2. 한옥산업 DB 활용방안

1. 요약 및 결론

○ 국가적으로는 한국 전통건축유형의 가치 재발견과 창조적 현대화를 통한 건축도시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 획일화에 따른 다양한 주거유형 및 어메니티에 대한 국민적 요구로 인하여 한옥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한옥의 지속적인 보급, 유지 · 관리를 통하여 한국 고유의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건축자산으로서 활용하려는 등 도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그 동안의 한옥건축 산업은 전통적, 노동집약적 방식으로 진행되어 설계 · 시공의 표준화 및 기술의 현대화가 미흡하였고, 산업 활동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정이며, 이는 한옥 건축비 상승 및 한옥 품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한옥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따라서 한옥을 생산하는 한옥산업과 관련된 일련의 정보를 수집 · 구축하는 한옥산업 DB 조사사업은 국가적인 한옥육성정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한옥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하는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한옥산업 DB 구축을 궁극적인 목표로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한옥산업의 제도적 기반과 현황을 고찰하고, 한옥산업 DB로써 한옥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체 정보를 구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한옥산업 DB의 관리 및 활용방안을 제안하였음

- 첫째, 우리나라 건설산업 업역체계와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건설업역제도 조사를 통하여 목구조 건축물 건설산업으로서 우리나라 한옥산업의 위치를 검토하였음

- 우리나라는 한옥산업을 목재를 활용한 전문 건설업역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건축 부재로서 목재를 활용하는 건설업역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한옥산업이 현실과 부합하지 못한 건설산업 위계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불명확한 건설산업의 제도적 여건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한옥산업의 동향 및 업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며, 이를 통하여 국내 건설업역 체계의 한옥 및 목구조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류체계 도입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음

- 둘째, 우리나라 한옥산업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허가 정보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2007~2011년) 우리나라 목구조 건축물의 허가 현황을 지역별, 건축물 용도별로 분석하였으며 설계·시공 업체 등록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 목구조 건축산업의 규모를 추정하였음

- 우리나라 목구조 건축물은 최근 5년간(2007~2011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1년에는 12,980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전국 신축 건축물 허가 건수(159,047건) 대비 8.2%를 차지하였음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2,719건, 2011년 기준)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건축물 용도별로는 단독주택이 전체의 76% 이상(2007~2011년)을 차지하며 목구조 건축물 단독주택 용도의 허가 건수는 2007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여 5년간 38,312건이 신축허가를 받는 등 8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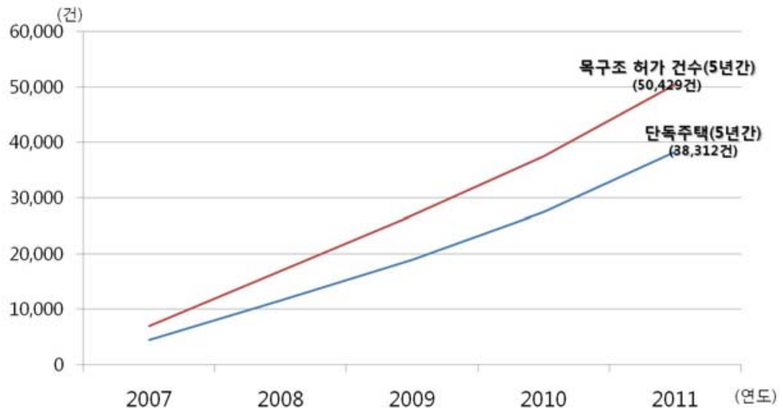

[목구조 건축물/단독주택의 허가 건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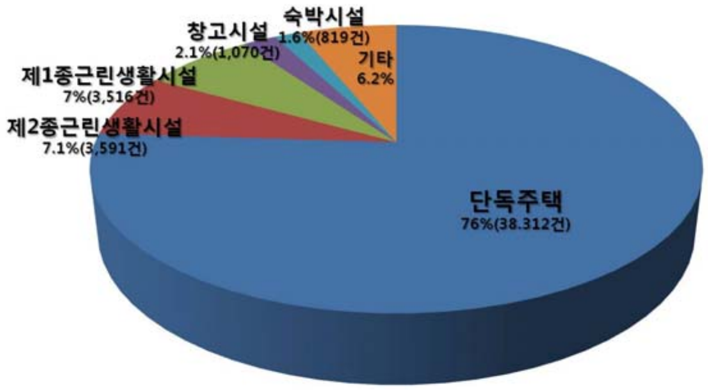

[신축 목구조 건축물 용도분포 현황]

○ 셋째, 한옥 보급 활성화 및 한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한옥산업 DB 구축의 가치와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한옥산업의 개념 및 범위에 따라 한옥산업 DB의 종류를 분류하였음

○ 본 과업에서는 한옥산업 DB 구축의 범위를 한옥생산과 관련된 업체정보로 한정하고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한옥관련 기관 및 단체의 협조를 통하여 한옥생산과 관련된 업체 리스트를 확보하고 이를 한옥설계, 한옥시공, 자재업체로 구분하였음

○ 2012년 7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옥 건축에 관련된 업체는 총 481개사(설계업체 104, 시공업체 201, 자재업체 52[31])로 조사되었으며, 국내 건설업체(약 57,000개사)의 약 0.83%에 해당하는 산업 규모로 추정됨

[표 59] 전국단위 한옥산업 업체 현황

<table>
<tr><th>구분</th><th>국내
건설업체수</th><th>한옥
설계업체수</th><th>한옥
시공업체</th><th>한옥
자재업체</th><th>한옥
업체비율</th></tr>
<tr><td rowspan="2">전국</td><td rowspan="2">57,000
개사</td><td>161개사</td><td>268개사</td><td>52개사</td><td rowspan="2">0.83%</td></tr>
<tr><td colspan="3">총 481개사</td></tr>
</table>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건설산업과 관련된 DB 구축 및 관리 시스템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한옥이라는 건축적 특성(정보의 객관성)과 건설산업적 특성(정보의 양질성), 수요의 특이성(정보의 활용성)을 반영하는 한옥산업 DB의 관리방향을 제안하였음

○ 본 과업의 궁극적인 결과는 한옥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마련의 기틀이 되는 한옥산업 DB를 구축하는데 있으며, 이는 공신력 있는 한옥산업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한옥정보 네트워크를 체계화하고,

31) 한옥자재업체의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지정 · 관리하고 있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따라서 전국단위 한옥자재업체의 규모로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음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운영을 통하여 한옥의 대중화 및 한옥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2. 한옥산업 DB 활용방안

□ 한옥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활용

○ 한옥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정책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옥산업 전반에 대한 DB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지금까지 국가차원에서 건설산업의 성장과 관리 위주로 산업 DB가 구축되어 왔고, 건설산업 가운데 제도적 정의 및 구분이 어려운 한옥산업 분야는 정보 구축이 미약한 실정임

○ 따라서, 제도적으로 산업적 특성을 구분하기 어려운 목조건축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한옥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제언은 하기 어려운 실정임

○ 한옥 생산에 관련된 업체를 전국단위로 조사하고, 업체의 규모 및 한옥관련인력, 사업규모 등의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관련된 DB는 한옥산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로 활용 가능함

○ 지속적인 한옥생산 관련 업체에 대한 통계지표의 구축은 한옥산업의 변동과정과 추후 산업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한옥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반적인 한옥산업의 구조 및 체계 파악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어 한옥산업의 진흥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음

□ 품격 있는 신한옥의 보급 확산과 민간산업 육성 견인

○ 기존 문화재 중심의 한옥산업 체계에서 신한옥의 개념에 부합하는 한옥산업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 관리함으로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사업 활성화를 유도 가능함

○ 현재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산업구조의 불균형과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 현상을 뽑을 수 있고, 특히 1,000위 이하의 영세한 건설업체의 건설업체실적지수(CEAI)는 기준 이하의 수치를 나타내며 지속적인 경기 침체현상을 나타냈으며, 이는 민간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음

○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목조건축 시장은 최근 5년 동안 건축허가 면적 기준 8배 이상의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 속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목조건축 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한옥산업 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주로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활동하는 한옥산업은 민간 건설산업의 성장동력으로서 건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한옥산업 DB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에 기여

○ 최근, 지식정보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건설산업과 관련된 각종 건설통계정보를 보다 많은 정보 수요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산화 시스템이 개발되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

○ 한옥산업의 경우, 정보를 구축하는 분류 체계와 시스템의 설계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정보 제공자와 수요자의 사용이 용이한 시스템이여야 함

○ 또한, 이러한 한옥산업 DB 구축사업은 최근 한옥의 붐에 편승한 일회성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DB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인 유지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신한옥 플랜에 부합하는 한옥산업 데이터의 구축이 전무한 상황에서

본 한옥산업 DB 구축사업은 한옥산업의 체계적인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초연구로 의미가 있음

□ 한옥관련 기술인력의 고용 증진 및 한옥산업 진흥

○ 인적자원의 연구개발 및 지속적 교육훈련은 지식자산의 결정요인으로 OECD 내 고 성장 국가 경제성장의 약 60%를 기여하는 등 선진국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32)]

○ 특히, 한옥산업은 한옥건축의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고급 인적자원의 활동이 핵심적이므로 인적자원의 수준이 한옥의 질과 더불어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됨

○ 한옥 건축과 관련된 업체의 DB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실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옥 전문 기술인 현황을 관리하고, 경력 및 전문 단체를 지정해 줌으로써 한옥 기술자의 고용을 확대,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한옥산업의 진흥을 유도할 수 있음

○ 한옥산업의 전문인력 교육 및 확대는 국가적 측면에서는 고용안정 및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적 측면에서는 한옥의 전통적 가치 유지 및 한옥 품질 향상의 토대가 될 수 있음

32) 김진욱(2009) '건축설계 · 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25.

참고문헌

강홍빈(1986), “역사환경의 유지와 보존”, 「도시문제」, 238호, pp.33-41.

건설산업정보센터(2011), 「건설산업정보리뷰」

곽동호(2002), “DB 산업은 정부 차원의 정책적 육성 필요”, 「디지털콘텐츠」, 제3권, pp.30-37.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2), 「2012 제2차 전국순회 건축 · 도시정책포럼」

권영상(2008), 「한옥건축 산업화를 위한 기반구축 연구」, 국토연구원

권오현(2005), 「건설업 업역구조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명수 · 김재영 · 권혁진(2000), 「건설산업 지식기반 구축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김명수 · 김재영 · 권혁진(2001), 「지역건설산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김수암(1996), “각종 건축통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한국건축학회」 제40권 10호, pp.51-54.

김안호, 이의영(2004) 「산업조직론」, 도서출판 두남.

김재영, 이형찬(1998), 「건설산업의 종합적 관리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김진욱(2009), 「건축설계 · 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진욱(2009), 「건축설계 · 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헌중(2011), 「목구조기술자 양성제도 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목조건축연구소,

김훈(2011), 「도시재생사업에서 한옥주택의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해경(2012) 「2차 전국순회포럼 자료집」,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한건설협회(2011) 「종합건설업조사」

문혁(2002), “건설산업DB 구축사업”, 「한국건설관리학회」, 제3권 1호, pp.30-33

방성준 · 이상준 · 박천영 · 이전제(2010), “한옥 등 목구조공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국내 전문건설업 신설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6권 제11호, pp.119-127.

심아름(2011), 「근대 역사문화환경의 보전을 통한 도시재생 방안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영선(2012), 「한국 건설산업의 업역주의에 관한 문화적 고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교선(2005), 「건설 업역구조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태(2010),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종합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라남도청(2011), 「2011 한옥 견실시공을 위한 한옥시공업체 교육 및 관계자 워크숍」, 전라남도청 행복마을과

전라남도청(2011), 「2012 행복마을 성공전략을 위한 한옥시공 관계자 워크숍 교육교재」, 전라남도청 행복마을과

전봉희(2008), “한옥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종합 DB의 구축”, 「대한건축학회지」 제52권 3호, pp.28-34.

전봉희(2009), “신한옥 보급 활성화를 위한 한옥아카이브의 구축”, 「대한건축학회지」, 제53권 9호, pp.62-66

전봉희(2009), “신한옥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현황과 과제 “, 「건축역사연구」 제18권 5호, pp.151-159.

전봉희 · 김하나(2011), “한옥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통한옥 DB의 구축”, 「한국주거학회」, 제11권, pp.6-14

전봉희 · 장필구(2010), “한옥의 보급활성화를 위한 한옥 R&D”, 「전산구조공학」 제23권 2호, pp.7-13.

정대명(2011), 「실내건축공사업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한 건설노무인력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인수 · 김병곤 · 조문영(2002), “건설산업의 지식관리체계 적용방안”, 「대한건축학회」 제18권 7호, pp.69-78.

조창완 · 김지민(2010), “전남 한옥의 지속적 보급 및 활성화 방안”, 「한옥정책」

통계청(2010), 「2010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한영숙 · 김민수(2004), “오래된 도시문화 근린의 재생을 위한 생활문화가로 구상”,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한재수(2009), “한옥의 산업화 어떻게 가능한가”, 「건축역사연구」 제18권 3호, pp.135-157.

행정안전부(2012), 「2012 국가정보화 백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2012.7.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건축법 시행령(2012.7.26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2012.1.1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2012.6.1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2.2.5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2012.9.2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주택법(2012.1.2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한국목조건축협회, http://www.kwca.co.kr/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http://www.kiacon.net/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법제처,「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www.law.go.kr.

전라남도,「행복마을」, http://www.happyvil.net.

Survey on Status of Han-Ok Industry in 2012

Yu, Kwang Heum
Shin, Min Jong

Overview of the Report

With increasing societal interest in Han-Ok,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s introduced a variety of policies regarding Han-Ok. Policy arrangement, technical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project for preserving Han-Ok are being made today. However, there haven't been enough surveys on the trend of Han-Ok construction project and the market of Han-Ok industry. These surveys are essential to the formulation of policies they can vitalize Han-Ok.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Han-Ok industry, because there are little statistics systems and database available on the Han-Ok construction companies in the market.

There are many ongoing policies without the scrutinized survey on Han-Ok, and they do not adequately point to a specific vision for the Han-Ok industry. Therefore, the concerns for damaging dignity of Han-Ok are growing. It is expected that the project of Han-Ok Technology Development R&D(2009-2013,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will achieve the improvement of Han-Ok industry. But basic data concerning Han-Ok is scarce, which confuse the standards for constructing Han-Ok. To meet the growing interest in Han-Ok, we need to provide people with information on the construction, design, and material companies of Han-Ok.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make the policies and the database for expanding the supply of Han-Ok. For that, we analyse the domestic license policies for wooden buildings and research the companies in the Han-Ok industry, we arrange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plans for maintaining the database of Han-Ok industry.

The main aim of this survey is to collect information on the companies that construct Han-Ok.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consideration for theory, current status, database gathering of Han-Ok industries and management methods for database of Han-Ok industries. The detailed contents are as follow.

First, we define the concept of Han-Ok industry and set it's limit in order to establish the database. We consider the situations of each local Han-Ok project and the laws and policies regarding domestic and foreign construction systems. We appoint the application scope for Han-Ok industry, set the time and content range for organized database, and classify the types of Han-Ok industry.

Second, in examining Han-Ok industry, we review the existing data for recent trend the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Han-Ok project. We have analysed the status of Han-Ok industry in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through the analysis on the situation and condition of Han-Ok building over the last five years.

Third, We review the value and necessity of Han-Ok to make the database of Han-Ok industry. We survey the companies restoring cultural properties, local Han-Ok companies, organizations, and associations of Han-Ok to make the domestic database of Han-Ok industry.

Lastly, We suggest the sustainable management plans and

systems by reviewing the example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its way to compile and manage the database. This can be applied to managing the database of Han-Ok industry.

Key Words : Han-Ok(Korean Traditional House), Han-Ok Industry, Han-Ok Industry Database, Han-Ok Company Database

부 록

부록 1. 한옥관련 사업체 목록

1. 설계업체
2. 시공업체
3. 자재업체

1. 설계업체(2012년 7월 기준)

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	이메일
1	실측설계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김상식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2-2 금성빌딩	02-534-1471~3/02-534-0431	ks1471@nate.com
2	실측설계	(주)삼아성건축사사무소	장순용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20	02-546-3781	sam125@chol.com
3	실측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대연건축	김철민	137-140	서울 서초구 우면동 64-1 중평빌딩 8층	02-571-9474/02-571-9476	magu100@hanmail.net/
4	실측설계	(주)예그린건축사사무소	민경민	137-07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9-8 현대 오피스텔210호	02-584-2153~4/02-585-4369	RDSE2000@hanmail.net
5	실측설계	(주)종합건축사사무소다담	박태연	135-080	서울강남구역삼동 643-3 평화빌딩5층	02-569-9923/02-538-9923	dadam96@empal.com/
6	실측설계	조선건축사사무소	윤대길	110-260	서울 종로구 가회동 11-41	02-3675-7963/02-3675-7945	josun21@kornet.net
7	실측설계	한인건축사사무소㈜	이응일	150-091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39 센터플러스 1109호	02-2164-2333/02-2164-2330	lh2kay@nate.com
8	실측설계	한겨레건축사사무소	최우성	137-073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85-13 송룡빌딩 402호	02-6284-0108/02-6284-0107	
9	실측설계	정우건축사사무소	서정남	705-810	대구 남구 대명10동 808-8	053-624-1500	

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	이메일
10	실측설계	부운건축사사무소	유흥재	700-422	대구시 중구 동인동 2가 244-2	053-421-6996/053-423-2559	boowoon2003@empas.com
11	실측설계	(주)미추홀건축사사무소	강선중	429-844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1 무광오피스빌딩 508호	032-328-1381~2	mchall0571@naver.com
12	실측설계	(주)대왕건축사사무소	김연배	440-820	경기수원시장안구영화동407-24 (2층)	031-252-1423/031-252-1424	artkmj@lycos.co.kr
13	실측설계	(주)삼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안정환	415-810	경기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532-7, 3층	031-986-2580/031-986-2957	samgo@sampoong.co.kr/
14	실측설계	건축사사무소 천지원	천상섭	220-050	강원 원주시 일산동 228-36	033-742-0753/033-745-0755	cjw0753@chol.com
15	실측설계	고당건축사사무소	연기탁	360-815	충북청주시상당구우암동823-3 (3층)	043-252-8005/043-253-8005	godang0579@naver.com
16	실측설계	(주)현석종합건축사사무소	장현석	360-11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357-3	043-221-5007/043-223-5007	hs5008@hanmail.net
17	실측설계	건축사사무소 간향	윤태진	360-11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구 2317 / 2층	043-284-1078	gh1078@hanmail.net
18	실측설계	다나건축사사무소	강인수	330-944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966번지 포스코 더샵 925호	041-522-3369/	ksy5642@hanmail.net
19	실측설계	춘추건축사사무소	구일옥	340-922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동리 152-18	041-337-7472/041-337-7473	choo7674@empas.com
20	실측설계	아름터건축사사무소㈜	김석순	331-961	충남 천안시 두정동 1227번지 인트로상가 201	041-567-5870/	areumter@hanmail.net
21	실측설계	건축사사무소한창	성재중	314-080	충남 공주시 금학동 273-8	041-858-6738/042-537-3201	nova339@hanmail.net
22	실측설계	아리건축사	심재경	560-82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76-2	063-253-7402/063-253-7403	ari7402@hanmail.net
23	실측설계	(주)길건축사	박태우		전북 전주시 효자동 3가 1405-3	063-276-7200	goodarch@chol.com
24	실측설계	신라건축사사무소	김상조	540-978	전남 순천시 조례동 1715-8 명인빌딩4층	061-723-6000/061-723-6001	sillaart@hanmail.net
25	실측설계	건축사사무소 사야㈜	김용준	540-813	전남 순천시 조래동 1592-3, 3층	061-752-0849/061-752-0840	et8925@naver.com
26	실측설계	(주)삼진건축사사무소	이봉수	519-808	전남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114-13 (2층)	061-371-1108/061-373-8891	bs3757@empal.com
27	실측설계	디딤건축사사무소	장진영	520-010	전남 나주시 중앙동 23-3 3층	061-331-5670/	didim2008@naver.com
28	실측설계	유성건축사사무소㈜	정양섭	519-804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 222-1	062-375-8780	

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	이메일
29	실측설계	은하건축사사무소	손정호	540-975	전남 순천시 연향동 1491-10, 2층	061-725-9393/070-7614-3303/061-725-9393/070-7614-3303	eunha3303@hanmail.net
30	실측설계	태광 건축사사무소	금동욱	712-110	경북 경산시 정평동 246-43번지 대영빌딩 3층	053-816-3552/053-818-3551	tkeng2@hanafos.com
31	실측설계	우리건축사사무소	김태조	780-935	경북 경주시 동천동 766-12 우리빌딩 4층	054-742-8800/054-742-6768	woori1@chol.com
32	실측설계	현건축사사무소	김현태	750-050	경북 영주시 휴천동 677 KT영주사옥2층	054-635-3807/054-631-3807	oldarc31@naver.com
33	실측설계	일진건축사사무소	박남규	718-921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3리 355-1	054-976-5795/054-976-5797	iljim21c@korea.com
34	실측설계	동일건축사사무소	윤희원	718-922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355-1	054-976-9314/	
35	실측설계	태오름건축사사무소	정용진	760-902	경북 안동시 용상동 1436-2	054-855-2550	gwikkot@paran.com
36	실측설계	예건축사사무소	김헌수	712-110	경북 경산시 정평동 246-35번지 2층	053-812-5700	ye5701@hanmil.net
37	실측설계	(주)서홍기술건축사사무소	이상동	712-802	경북 경산시 중방동 818-57, 2층	053-813-5057/010-3503-0235/053-814-6018	se6016@chol.com
38	실측설계	건축사사무소 청보리	이기승	712-110	경북 경산시 정평동 147-1 401호	053-813-4880/011-501-4499/053-813-4881	
39	실측설계	태창건축사사무소	박태수	750-902	경북 영주시 가흥동 521-8	054-632-6401/054-632-6402	haengiee@lycos.co.kr
40	실측설계	(주)옛터건축사사무소	이원길	660-310	경남 진주시 호탄동 644번지 3층	055-763-5050/055-763-5053	
41	실측설계	동남종합건축사사무소	이형재	626-010	경남 양산시 중부동 685번지 8호 센트럴 스위트 813호	055-385-1589	dncao@hanmail.net
42	실측설계	(주)현창종합건축사사무소	한충현	641-849	경남창원시팔용동 156-4 금복빌딩 902-2	055-267-6201	anytime-4u@hanmail.net
43	실측설계	㈜세안건축사사무소	김영률		진주시 하대동 340-13 202호	055-762-3878	
44	실측설계	(주)볕터건축사사무소	황진하		서울시 마포구 희우정로 5길 29, 삼육빌딩 302호	02-561-7133/02-565-7133	mass0502@naver.com
45	실측설계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강성원		서울시 종로구 진흥로 432, 원택빌딩 501호	010-8885-4990	
46	실측설계	선영건축사사무소	이배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93	031-964-2914	sy2994@empal.com

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	이메일
47	실측설계	여유당건축사사무소	김관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85-2 에스케이허브블루 17층 1호	031-278-2209	moa30@naver.com
48	실측설계	무진종합건축사사무소	장명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57번길 8-9, 401호	010-5255-2383	moojin1@empal.com
49	실측설계	(주)상명종합건축사사무소	손동준		경기도 김포시 관순로 28, 201호	031-928-0095	
50	실측설계	이음건축사사무소	최정효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2	033-748-7516	eum2012@hanmail.net
51	실측설계	삼정건축사사무소	이형호		전남 나주시 중앙동 64-8, 4층	061-901-7007	samjung310@hanmail.net
52	실측설계	청림건축사사무소	김기홍		경북 칠곡군 동명면 경북대로 253, 4층	054-973-0897	cl1020@nate.com
53	실측설계	대경건축사사무소	하용수		경북 경주시 동천동 697-29, 2층	054-773-8337	dg8337@hanmail.net
54	일반설계	원오원건축사무소	최욱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126-2 ML빌딩	02-739-6363/02-739-6362	studio101@empal.com
55	일반설계	김영섭+건축문화㈜	김영섭	110-032	서울 종로구 신교동 2-77번지	02-396-3842/	kunchook@hanmail.net
56	일반설계	이로재종합건축사사무소㈜	승효상	110-809	서울 종로구 동숭동 2-8	02-763-2010/02-745-3606	aster@iroje.com/
57	일반설계	북촌HRC㈜	김장권	110-800	서울 종로구 계동 100-7	02-742-5042/02-745-3606	king3030@lycos.co.kr/
58	일반설계	예공	김동진	140-869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1가 161번지	011-359-0953/	con5188@hanmail.net
59	일반설계	139건축조형연구소	윤병훈	110-801	서울시 종로구 계동 139-2	010-9391-1391	
60	일반설계	길건축건축사사무소	강병수	152-05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7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 1108호	02-6092-2700	gilline@hanmail.net
61	일반설계	아이삼건축사사무소	구재형	121-829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353-8 조각빌딩 5층	02-323-9360/02-324-9360	www.aisam.co.kr/
62	일반설계	스튜가이엔씨(주)	김갑봉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7 율암B/D 703	02-511-8901	stugaenc@stuga.co.kr
63	일반설계	㈜ 이손건축 건축사사무소	김남주	110-190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26-3 한국슈밋트빌딩 5층	02-3411-9961/02-3411-9971	isonarch@chol.com

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	이메일
64	일반설계	아키반건축도시연구원	김석철	110-260	서울 종로구 가회동 11-16	02-764-3072/02-745-2471/02-765-4651/02-743-4381	archiban@archiban.co.kr/
65	일반설계	김성은 건축연구소	김성은	110-858	서울종로구수송동58 두산위브1305호	02-319-1005/02-319-0652/	http://ksea.hosting.paran.com/
66	일반설계	㈜ 기림건축사사무소	김승욱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4-60 로고스빌딩 2층	02-501-7310/02-561-9146	kr5705@chol.com
67	일반설계	김영섭건축문화사무소	김영섭	110-800	서울시 종로구 계동 67-16	02-737-3842/교수전화010-3702-3842	kimyoungsub@korea.com
68	일반설계	서울디자인건축사사무소	김우섭	110-999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번지 광화문오피시아 2113	02-739-7763	seouldesign@empal.com
69	일반설계	건축사사무소 원오원	김정숙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26-2 ML빌딩	02-739-6363/02-739-6362	cwatopos@kornet.net
70	일반설계	건축사사무소 테라	김태근	135-01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6-11호 6층	010-8701-0449	ktg709@paran.com
71	일반설계	㈜ 건축사사무소 엠엔케이	김홍식	100-290	서울시 중구 예관동 56-10호	02-2268-4321/02-2278-9799	fsakim@empal.com
72	일반설계	웰하우스종합건축사사무소	명제근	135-240	서울강남구개포동 1219-5번지 우영빌딩 5층	080-080-9640/02-579-6711~22/02-579-6713	wellhouse@wellh.com
73	일반설계	㈜예종 건축사 사무소	박춘명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6-68	02-569-8800/02-556-2985	yzfr1kr@hanmail.net
74	일반설계	(재)아름지기	신연균	110-240	서울 종로구 동숭동 2-8	02-741-8387/02-741-8395	
75	일반설계	디에스빠시오 건축사사무소	안성준	135-889	서울 강남구 신사동 543	02-515-7221	nifilwag@naver.com
76	일반설계	㈜ 간삼파트너스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광만	100-450	서울시 중구 신당동 407-27	02-2250-6000	eschoi@gansam.com
77	일반설계	노블하우스㈜	이금석	137-07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9-11 아트빌딩 2층	02-586-9640/02-586-9321	
78	일반설계	종가건축사사무소	이복	110-130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01-1 진학회관 308호	02-722-5573/02-722-4552	bok22@chollian.net
79	일반설계	에이치오엠건축사사무소	이옥화	136-823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96 3층	02-579-0811/02-579-0851	hom2005@empal.com
80	일반설계	인본 건축사사무소	이행덕	137-060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83-24	02-534-5982	

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	이메일
81	일반설계	건축사사무소 한경	이희천	110-130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8-168 201호	010-3307-0022	
82	일반설계	라인 건축사사무소/북촌HRC㈜	장석수	140-806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77-14	02-742-5942/02-742-6534	
83	일반설계	삼성건축사사무소㈜	장순용	135-100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134-20 삼익빌딩 417호	02-546-3781/02-546-3785	sam125@chol.com
84	일반설계	한국가구박물관	정미숙	136-823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577	02-745-0181/02-745-0031	contact@kofum.com
85	일반설계	한길 건축사 사무소	정호영	151-050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896-1	02-326-0454	hangil@hangil.ne.kr
86	일반설계	건축사사무소다리건축	조인숙	110-070	서울종로구내수동167	02-725-2286	daaree@paran.com
87	일반설계	구가도시건축연구소㈜	조정구	100-120	서울 중구 정동 18-1 정동아파트 101호	02-3789-3372/	gugaua@hanmail.net/
88	일반설계	신태양 건축사사무소	최정균	138-845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25-8번지 금창빌딩 301호		
89	일반설계	㈜ 엑토종합 건축사사무소	홍성천	136-823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21번지 2층	02) 745-6140/02) 745-6143	archival@intizen.com
90	일반설계	황두진건축사사무소㈜	황두진	110-040	서울 종로구 통의동 7-31 목련원1층	02) 725-9575/02) 725-9577	djharch@djharch.com/
91	일반설계	㈜ 제이앤아키 건축사사무소	장태희	135-09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0-35 양지빌딩 302	02) 2051-4796	bcmgroup@naver.com
92	일반설계	지안건축사사무소	박상군	501-080	광주 동구 계림1동 491-3번지(2층)	062-232-3195/010-3637-7773/062-232-3196	arch3939@hanmail.net
93	일반설계	건축사무소 토방	한진수	501-813	광주 동구 동명동 154-47	062) 225-9745/062) 225-9747	archito@chol.com
94	일반설계	전일건축사사무소	김종관	500-110	광주 북구 문흥동 248번지	062) 266-9925/062) 266-9926	ji2183@empal.com
95	일반설계	예록	이상길	476-911	경기 양평군 강상면 신화리 376	031-775-0092/	y2a@naver.com
96	일반설계	건축사사무소 예일컨설턴트	권중곤	561-817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329 상가동 210호	063-273-2944/063-273-2945	greenarc@hanmail.net
97	일반설계	건축사사무소디딤	김윤형	560-83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738-7	063-228-2084/063-228-2085	dkyh56@hanmail.net
98	일반설계	미 목공예	김종연	560-033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16-14	063-286-9285	jykim@hanmail.net

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	이메일
99	일반설계	세림그룹건축사사무소	송경규	100-84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70-6번지 6층	063-253-6653/ 063-275-9090/ 02-2048-2803	slgroup@naver.com
100	일반설계	(유)송택신건축사사무소	송택신	561-8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972-3	063-227-3377/ 063-227-3379	sts3377@hanmail.net
101	일반설계	시상건축사사무소	심용만	561-832	전북전주시덕진구덕진동1가1436-83층	063-271-3125/ 063-271-3126	
102	일반설계	(유)샘건축사사무소	안홍준	580-803	전북 정읍시 수성동 618	063-533-1820/ 063-533-1822	sem533@hanmail.net
103	일반설계	신영건축사사무소	오영철	560-054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4가 18	063-231-4945/ 063-231-4944	sy4945@korea.com
104	일반설계	가문건축사사무소	오한주	560-15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2가 360-17	063-284-7400/ 063-284-7402	everymilk@naver.com
105	일반설계	혜전건설(유)	이봉철	560-15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60-2	063-288-0976/ 011-9643-9976	hey-jmy@hanmail.net
106	일반설계	한아건축사사무소	이성수	560-29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2가 226-8	063-228-2203/ 063-228-2204	
107	일반설계	이레건축사사무소	이홍구	560-83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616 강석빌딩 6층	063-228-6719/ 063-228-6716	lhg0865@daum.net
108	일반설계	건축사사무소연백당	최상철	565-842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138/전북 완주군 소양면명덕리5-4	063-271-7080/ 063-276-7080	csc@kira.or.kr
109	일반설계	산건축사사무소	권환주	560-24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6-13	063-226-9550/ 063-226-9502	
110	일반설계	황해건축사사무소	강정용	560-83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764-2		
111	일반설계	이노건축사사무소	강성민	545-809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963-5	061-761-0916/ 061-763-9876	inno2010@daum.net
112	일반설계	고건축사사무소	고병순	540-976	전남 순천시 연향동 1675-7	061-725-0452/ 061-725-0486	kbnoa9942@hanmail.net
113	일반설계	건영종합건축사사무소	김복환	519-805	전남 화순군 화순읍 훈리44-1번지 3층	061-372-5128/ 061-371-5128	
114	일반설계	해동건축사사무소	남윤홍	548-804	전남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293	061-833-1998/ 061-833-1997	
115	일반설계	을지건축사사무소	박정호	546-802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07-10	061-853-0370/ 061-853-0371	uljiarch@hanmail.net
116	일반설계	백운건축사사무소	백병운	540-855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26-15	061-722-4678/ 061-722-4672	
117	일반설계	우리건축사사무소 서건축	서계원	540-969	전남 순천시 조례동 1833-10(4층)	061-723-8009/ 061-723-6959	WOORI@WOORIARCH.CO.KR

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	이메일
118	일반설계	세움 건축사 사무소	승 민	536-807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1-3 2층	061-534-8660/061-534-8661	seum8660@naver.com
119	일반설계	우성건축사사무소	심우석	545-802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735-1	061-762-2122/061-762-3932	wsa172@gmail.com
120	일반설계	수건축사사무소	오경	540-954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64-22	061-725-0451/061-725-0421	
121	일반설계	건축사사무소근대	오용갑	530-300	전남 목포시 호남동 130	061-242-5152/061-243-6688	geundai5@megapass.net
122	일반설계	동림건축사사무소	이상권	530-823	전남 목포시 상동 812-17 (2층)	061-272-3120/061-272-3138	lsk4480@korea.com
123	일반설계	이레 건축사사무소	장세윤	540-959	전남 순천시 장천동 51-6	061-743-2723/061-743-2725	sse0923@hanmail.net
124	일반설계	건축사사무소대성	정 훈	525-803	전남함평군함평리 139-9	061-324-1845/061-324-8806	sjc112@hanmail.net
125	일반설계	가산건축사사무소	정기호	529-801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20-91	061-863-8434/061-862-8434	kasan863@paran.com
126	일반설계	명인건축사사무소	정종민	540-978	전남 순천시 조례동 1715-8	061-723-8600/061-723-8604	myarc3500@hanmail.net
127	일반설계	창조건축설계사무소	조연준	555-808	전남 여수시 학동 67-24	061-681-0815/061-686-7123	changjo7100@naver.com
128	일반설계	건축사사무소선진	조익선	540-959	전남 순천시 장천동 61-16번지	061-741-5601/061-741-5602	ls1354@korea.com
129	일반설계	신안건축사사무소	주경인	540-978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89-6	061-721-6345/061-721-6347	sinan66@hanmail.net
130	일반설계	한솔건축사사무소	차영식	519-808	전남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114-13	061-374-7297/061-373-7290	
131	일반설계	다믈 건축사사무소	천경훈	530-826	전남 목포시 상동 957	061-284-6354/061-284-6524	
132	일반설계	(유)아름 건축사사무소	최수용	534-804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846-1	061-454-9441/061-454-9442	
133	일반설계	청목건축사사무소	최희주	530-826	전남 목포시 상동 973-8	061-284-5400/061-279-7654	
134	일반설계	홍익건축사무소	현수호	517-804	전남담양군담양읍지침리28-7	061-383-5321/061-381-5322	
135	일반설계	명제건축사사무소	박명재	526-804	전남영암군영암읍동무리141-1	061-471-1900/061-471-1903	
136	일반설계	건축사사무소한영	김주한	519-805	전남 화순군 화순읍 훈리 44-18		
137	일반설계	거성기와	김평호	519-805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47-7	061-783-9919	
138	일반설계	건축사사무소다담	김동운	780-935	경북 경주시 동천동 769-2 4층	054-774-6080/010-3544-6080/054-774-6085	dadam6085@hanmail.net

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	이메일
139	일반설계	건축사사무소AR멤버스	권오웅	780-942	경북 경주시 성건동 178-26	054-742-2600/054-742-8070	kwon-ow@hanmail.net
140	일반설계	신화건축사사무소	김문환	780-935	경북 경주시 동천동 787-12	054-748-2164/054-748-2165	sinha2164@hanmail.net
141	일반설계	양지건축사사무소	박문수	780-933	경북경주시동천동 987-43	054-743-9640/054-743-9641	sun_5420@hanmail.net
142	일반설계	건축사사무소 창	박창배	780-935	경북 경주시 동천동 808 2층	054-741-6400/010-2811-1096/054-741-6405	pcb1096@hanmail.net
143	일반설계	손경태건축사사무소	손경태	780-935	경북 경주시 동천동 770-10	054-772-8448/011-807-5007/054-772-8449	son9892@hanmail.net
144	일반설계	건축사사무소건환	손명문	780-944	경북 경주시 성건동 620-166	054-749-2701/010-8726-3129/054-741-2700	keonhwan@hanmail.net
145	일반설계	건축사사무소양시	손해익	780-935	경북 경주시 동천동 787-5	054-744-4389/010-6511-4389/054-743-4389	
146	일반설계	건축사사무소 예당	송명곤	780-933	경북 경주시 동천동 900-5	054-775-7474/054-775-7715	smg70@hanmail.net
147	일반설계	건축사사무소 세영	오세영철	780-933	경북 경주시 동천동 920-1	054-771-1174/011-513-1174/054-777-1174	osyc5307@hanail.net
148	일반설계	건축사사무소남산	이규준	780-935	경북 경주시 동천동 787-15	054-773-9862/011-818-9862/054-771-9862	nsarchi@hanmail.net
149	일반설계	건축사사무소청아	이금석	780-935	경북 경주시 동천동 785-1	054-741-0501/054-741-0503	lgs306@hanmail.net
150	일반설계	드림건축사사무소	이기식	780-949	경북 경주시 용강동 1355-6	054-741-7438/011-9511-6502/054-741-7439	dream-t@hanmail.net
151	일반설계	이상건축사사무소	이상환	780-934	경북 경주시 동천동 733-223 3층	054-777-2271/054-777-2272	esa@hanmail.net
152	일반설계	동원건축사사무소	이용명	780-935	경북 경주시 동천동 769-6	054-771-6336/054-773-8434	dw6336@hanmail.net
153	일반설계	건축사사무소희건축	이재희	780-935	경북 경주시 동천동 769-4	054-777-6933/054-777-6934	bumparis@chol.com
154	일반설계	㈜길록건축사사무소	이종수	780-935	경북 경주시 동천동 787-1	054-771-6043/010-3817-0441/054-771-6044	kilrokac@chollian.net
155	일반설계	건축사사무소홍은	임일중	780-935	경북 경주시 동천동 770-15	054-771-8110/054-773-7080	hongeun-1@hanmail.net
156	일반설계	제일건축사사무소	전영두	780-935	경북 경주시 동천동 770-9	054-774-7191/054-774-7192/054-774-9611	jeil7191@hanmail.net

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	이메일
157	일반설계	전진건축	전진만	780-934	경북 경주시 동천동 601-16 1층	054-771-0990/ 011-523-0990/ 054-771-0991	jinman54 @hanmail.net
158	일반설계	건축사사무소동일	최규식	780-935	경북 경주시 동천동 790-17	054-771-8116/011-511-8111/054-771-8117	dongilks@chollian.net
159	일반설계	건축사사무소청호	최병기	780-935	경북 경주시 동천동 813-1	054-741-3638/ 054-749-6755	chungho-a@hanmail.net
160	일반설계	건축사사무소한주	한규태	780-949	경북경주시용강동 1331-4	054-743-1530/ 054-743-1532	kjhkt@chol.com
161	일반설계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다원건축	김영택		서울 서초구 반포동 92-1 벽산빌딩 4층	02-3481-1314/02-3481-1316	dawon1314 @naver.com

2. 시공업체(2012년 7월 기준)

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	이메일
1	문화재수리업체	동창원일기와	박우창	590-942	전북 남원시 주생면 정송리 280	063-631-8088/	pwc0303@hanmail.net
2	문화재수리업체	원택건설(주)	오영철	143-901	서울광진구중곡3동 132-24	02-498-5471~3/02-468-4523	3jhlhl@hanmail.net
3	문화재수리업체	㈜신일건업	홍승극, 김일락	135-09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20-8	02-2056-1912	
4	문화재수리업체	㈜평화건설	윤지언	135-9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44	02-552-8838	kyodori@naver.com
5	문화재수리업체	흥만건설㈜	이정수	142-070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103	02-997-5400	
6	문화재수리업체	서택건설㈜	최상림	143-220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132-24	02-498-5433	
7	문화재수리업체	㈜토형건설	김윤옥	121-805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삼성래미안아파트 5동 203호	02-325-6733	
8	문화재수리업체	㈜창의건설	임정택	136-045	서울시성북구동소문로15길	02-928-1178/02-928-2244	changei1188@hanmail.net/changei.kr
9	문화재수리업체	㈜현도종합건설	최태진	138-050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67, 2층	02-485-5423/02-484-5421	
10	문화재수리업체	세림산업㈜	김강수	158-050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7 현대월드타워 1613호	02-6332-7783	
11	문화재수리업체	㈜이강	이혜숙	110-320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719호	02-3672-0663	
12	문화재수리업체	㈜에이치디토건	고태운	121-896	서울 마포구 토정로 235	02-325-6731	
13	문화재수리업체	우진전통문화㈜	이동식	618-330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41-1	051-941-2597/051-941-2599	wj2597@hanmail.net
14	문화재수리업체	동건종합건설㈜	이정국	402-200	인천 남구 주안동 972 동산빌딩 303호	032-441-4212/032-441-4213	donggun4211@hanmail.net
15	문화재수리업체	비건설㈜	태원숙	404-310	인천 서구 당하동 당하지구 6블럭 5롯트 나산프라자 403호	032-563-8757/032-563-8758	flying8758@naver.com
16	문화재수리업체	세이프건설㈜	이병국	403-010	인천 부평구 부평동 543-2 성창빌딩(2) 4층	032-507-1743	
17	문화재수리업체	봉림종합건설㈜	권오룡, 권혁범	437-801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240-5 3층	031-477-6704/031-477-6707	skymose@hanmail.net
18	문화재수리업체	금세기종합건설㈜	최영구	445-380	경기화성시안녕동 186-170	031-225-0494	nclee42@hanmail.net

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	이메일
19	문화재수리업체	장원종합건설㈜	황태호	477-804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293-1	031-712-9235/031-585-9236	jc9607@hanmail.net
20	문화재수리업체	한웅종합건설㈜	윤상구	435-010	경기도 군포시 당동 771-6 3층	031-451-1622/031-451-1624	ys0075@korea.com
21	문화재수리업체	재성종합건설㈜	권영선	464-80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83-9	031-766-6002/031-767-6107	buildjaesung@gmail.com
22	문화재수리업체	㈜현영종합건설	김호준	437-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55 우성메디칼센타 301호	031-424-7666/031-426-7666	hy4267666@naver.com
23	문화재수리업체	㈜한건종합건설	김철중	412-81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83-5번지 307호	031-970-8423	
24	문화재수리업체	태원종합건설㈜	심양구	437-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62-1 리치아카데미 7층	031-423-9446031-423-8667	taiwon3383@hanmail.net
25	문화재수리업체	성림종합건설㈜	정대영	431-05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33-8	031-381-7001~2/031-385-0636	susnglim333@naver.com
26	문화재수리업체	고진티앤시㈜	강석목	412-27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86 동민프라자 504호	031-978-0663	
27	문화재수리업체	㈜계림종합건설	박상학	472-835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750-5 한신아파트 상가동 203호	031-528-1361	kl1361@hanmail.net
28	문화재수리업체	소나무종합건설㈜	이미정	463-82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2-1 리더스빌딩 701호	031-707-3354	pine2566@naver.com
29	문화재수리업체	㈜휘성전통건축	이성구	437-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55 우성메디칼센타 301호	070-7862-4213	lsgmanse@hanmail.net
30	문화재수리업체	다인종합건설㈜	김상임	461-19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196-2 삼영로즈빌 b101호	031-722-0363	dain-0363@hanmail.net
31	문화재수리업체	㈜대양	김찬용	200-090	강원 춘천시 효자동 709	033-256-6000/033-256-6001	dy314@kornet.net
32	문화재수리업체	동일건설㈜	김성수	220-963	강원 원주시 학성동 311-23 제1호3층	033-735-3100/033-743-4397	jcw1@dongilcons.com
33	문화재수리업체	신진종합건설㈜	김정섭	220-924	강원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044-20	033-747-4381/033-747-4385	
34	문화재수리업체	장원건설㈜	권태술	220-950	강원 원주시 봉산동 1182	033-742-0914/033-742-8841	
35	문화재수리업체	선혜종합건설㈜	성순연	210-100	강원 강릉시 교동 1836-3	033-646-0459/033-648-0459	6460459@naver.com
36	문화재수리업체	유원종합건설㈜	전제원	210-926	강원 강릉시 내곡동 267-24	033-644-9177	ywon7043@naver.com

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	이메일
37	문화재수리업체	㈜우리문화	박기원	220-150	강원 원주시 무실동 1659-6 상가2층	033-742-4803	2011woori@hanmail.net
38	문화재수리업체	원창종합건설㈜	안준희 안상열	361-828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7-25 대영빌딩 2층	043-266-3901/043-266-3904	chang3901@empas.com
39	문화재수리업체	칠화건설(주)	오영만	380-230	충북 충주시 금릉동 713 칠화빌딩 5층	043-855-5891/043-855-5893	cbha093@naver.com
40	문화재수리업체	성익건설㈜	이무희, 이윤구	361-802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58-1 프라임타워 4층	043-235-7477	cbha100@chol.com
41	문화재수리업체	㈜세명종합건설	안광석	380-963	충북 충주시 연수동 1253	043-842-3504	
42	문화재수리업체	가람문화재㈜	유병관	361-827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143-6, 2층	043-272-8019/043-272-8018	sarbal@hanmail.net
43	문화재수리업체	㈜부원건설	김태욱	323-813	충남부여군규암면반산리258/대전유성구원촌동70-1	041-835-0154/042-862-9340	
44	문화재수리업체	명헌건설㈜	김정수	314-835	충남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 54-1	041-856-5196	
45	문화재수리업체	우신종합건설㈜	송병권	331-958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578-3 2층	041-621-6800	woosin577@hanmail.net
46	문화재수리업체	가산종합건설㈜	박화양	336-010	충남 아산시 온천1동 1316 효성빌딩 4층	041-549-3226/041-549-3227	
47	문화재수리업체	성진토건㈜	김긍식	323-802	충남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187	041-837-1132/041-837-1135	wing1138@hanmail.net
48	문화재수리업체	성원건설㈜	강인숙	340-808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43-5	041-334-7151	sungwon7151@hanmail.net
49	문화재수리업체	금정건설㈜	조항범	314-220	충남 공주시 소학동 23-3	041-854-3855/042-483-3855	
50	문화재수리업체	㈜와이엠종합건설	문장환	320-080	충남 논산시 부창동 14-1	042-484-9702	th135@hanmail.net
51	문화재수리업체	세헌건설㈜	박애래	323-802	충남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170-5	042-525-1968	msh1955@hanmail.net
52	문화재수리업체	㈜대신토건	박병두	314-801	충남 공주시 반죽동 197-1	042-826-0420	
53	문화재수리업체	주식회사 영창	윤명희	323-802	충남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390-2 2층	041-832-8601/041-832-8603	
54	문화재수리업체	(주)경	윤여경	320-080	충남 논산시 부창동 14-1	041-734-6655/041-734-7760	ym7734@yahoo.co.kr
55	문화재수리업체	㈜백마종합건설	김효상	340-923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191 1층 102호	041-337-3001	wonkyu1977@nate.com

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	이메일
56	문화재수리업체	토담건설㈜	홍일표	312-941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546-42층/대전 유성구 원촌동 70-1	041-752-9343/042-862-9340	
57	문화재수리업체	(주)세화	박영자	573-888	전북 군산시 산북동 3593-2	063-277-3937	
58	문화재수리업체	(유)동문건설	서보근	590-210	전북 남원시 고죽동 157	063-635-7305	
59	문화재수리업체	(주)동강종합건설	함병진	590-010	전북 남원시 동충동 459-9	063-625-3103/063-625-3104	
60	문화재수리업체	(주)남전종합건설	유도현	590-987	전북 남원시 죽항동 100-1	063-632-7320/063-631-0468	
61	문화재수리업체	(유)대창	기호성	570-964	전북 익산시 마동 356-1	063-851-1876	
62	문화재수리업체	(주)청광건설	이상원	570-986	전북 익산시 인화동 2가 100-2	063-855-1310	
63	문화재수리업체	(주)조양	이호석	561-805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1597-4	063-251-3771	cho3771@naver.com
64	문화재수리업체	(유)금경종합건설	이희숙	561-22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2가 903-7 도현빌딩 201호	063-853-7510	
65	문화재수리업체	(유)아산종합건설	한기수	560-839	전북전주시완산구중화산동2가818-2	063-236-6700/063-236-6900	
66	문화재수리업체	(주)문화재종합건설	전경북	560-83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705-13	063-225-7515	
67	문화재수리업체	(주)상락문화재수리	김두용	580-804	전북 정읍시 수성동 945-7	063-535-9913	slag04@hanmail.net
68	문화재수리업체	(주)혜전건설	오승호		전북전주시완산구평화동1가709-3	063-228-0150	hey-jmy@hanmail.net
69	문화재수리업체	화성건설㈜	윤영섭	520-844	전남 나주시 남평읍 대교리 196	061-334-2526/061-333-3045	hs822@naver.com
70	문화재수리업체	다보종합건설㈜	나지훈	520-833	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390-12	061-383-8255	jnwnews@hanmail.net
71	문화재수리업체	㈜헌정건설	유순청	540-813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234-2	062-385-2001	3622001@hanmail.net
72	문화재수리업체	송도종합건설㈜	심우승	540-814	전남 순천시 서면 지본리 425-5	061-755-7623/061-755-2967	songdoco@empal.com
73	문화재수리업체	㈜건도	김종훈	540-952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29-2,301호	061-724-6127/061-724-8945	
74	문화재수리업체	㈜삼일건설	최갑열	515-863	전남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130-4	062-381-9969	
75	문화재수리업체	㈜건양	박상영	536-809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686-11 2층	061-537-1310/061-537-0760	

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	이메일
76	문화재수리업체	㈜협진개발	김재훈	519-804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 248	061-433-6508/061-373-3666	4336508@hanmail.net
77	문화재수리업체	에이치비건설㈜	김영두	525-802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821-1	062-515-3800/062-515-7092	kapanet@hanmail.net
78	문화재수리업체	용성종합건설㈜	양병도	527-802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성남리 162-4	062-672-9289/062-653-9500	ys9289@naver.com
79	문화재수리업체	(유)유심종합건설	양한철	526-851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243-2	062-603-2392	
80	문화재수리업체	㈜진강건설	김광식, 문영주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29-2, 302호김광식, 문영주	061-724-0259	
81	문화재수리업체	㈜양지종합건설	양승우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505-1	061-393-1601	
82	문화재수리업체	남도건설(주)	이웅평 이 훈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373이웅평 이훈	061-374-1786	
83	문화재수리업체	태청건설	이준호		전남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58	062-376-7784	woorimun@hanmail.net
84	문화재수리업체	㈜우리종건	이창민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73-5	061-727-0455	
85	문화재수리업체	우보건설㈜	최석웅		전남 나주시 다도면 신동리 33	062-369-8168	
86	문화재수리업체	㈜세왕종합건설	김상해	714-802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151-18	054-371-3235/053-955-7086	sewang77@naver.com
87	문화재수리업체	동신건설(주)	김근한, 김동한		경북 안동시 동문동 131김근한, 김동한	053-756-7701	
88	문화재수리업체	(주)영건문화	송윤주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204-2	054-654-6628	realcoree@naver.com
89	문화재수리업체	디알건설㈜	이동량		경북 경주시 동천동 888-8 2층	054-744-4225	dohong@hanmail.net
90	문화재수리업체	승지토건(주)	이종석		경북 경주시 용강동 1310-10	054-744-6085	sj9010@korea.com
91	문화재수리업체	태창종합건설㈜	이주선		경북 영주시 영주동 553-24	054-632-9646	taechang0541@naver.com
92	문화재수리업체	(주)한주종합건설	조인규		경북 경주시 동천동 987-3	054-776-2028	hanju2028@naver.com
93	문화재수리업체	태령종합건설㈜	사공득	712-801	경북 경산시 옥산동 837	053-812-8001/053-812-8004	
94	문화재수리업체	㈜일통건설	박태준	769-913	경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89-7	053-746-9500	
95	문화재수리업체	세창건설㈜	박종철	780-935	경북 경주시 동천동 787-1	054-776-2507	

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	이메일
96	문화재수리업체	㈜유성건설	장병철	780-935	경북 경주시 동천동 803-2	054-745-3434	
97	문화재수리업체	㈜보배	성윤제	780-935	경북 경주시 동천동 813-9 3층	054-777-2766	
98	문화재수리업체	㈜한성	이동심	780-933	경북 경주시 동천동 888-8	054-773-3044	
99	문화재수리업체	서진건설㈜	성기태	780-933	경북 경주시 동천동 920-7 시안빌딩 102호	054-744-7701/054-744-7702	seojin7701@yahoo.co.kr
100	문화재수리업체	선덕종합건설㈜	이상걸	780-949	경북 경주시 용강동 1049-5	054-746-5533/054-741-6537	sunduck5533@yahoo.co.kr
101	문화재수리업체	㈜우림산업	김호철	780-933	경북 경주시 용강동 1285-2	054-742-4547/054-772-4707	
102	문화재수리업체	㈜예살림	김상렬	780-250	경북 경주시 충효동 3014-2	054-777-2426	hy2426@hanmail.net
103	문화재수리업체	㈜홍익	박기현	780-250	경북 경주시 충효동 379	054-775-2110/054-775-1205	
104	문화재수리업체	비지종합건설㈜	양병구	730-924	경북 구미시 원평동 1032-51	054-472-2121/054-472-2122	bg53598@naver.com
105	문화재수리업체	전아건설㈜	임전수	740-978	경북 김천시 신음동 558-1	054-433-7811/054-433-7813	
106	문화재수리업체	예고을종합건설㈜	김호건	745-903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349-8	054-571-0123	ygy132@hanmail.net
107	문화재수리업체	해인건설㈜	채대진	745-887	경북 문경시 점촌동 177-5	054-553-8861/054-555-2265	haein8861@naver.com
108	문화재수리업체	㈜일토종합건설	김주윤	745-891	경북 문경시 흥덕동 794-1 신흥시장 나동 207호	054-555-1141/054-555-0341	
109	문화재수리업체	㈜예진건설	최윤화	755-805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136	054-673-0367	next1212@naver.com
110	문화재수리업체	㈜미산	김현호	755-805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240-19	054-683-4808	
111	문화재수리업체	대흥종합건설㈜	김성환	742-904	경북 상주시 남성동 158-4	054-536-5900	
112	문화재수리업체	창성건설㈜	송일동	760-320	경북 안동시 노하동 131-37	053-763-1374/054-854-2566	gajog@hanmail.net
113	문화재수리업체	㈜백상종합건설	송찬섭, 이경락	760-230	경북 안동시 당북동 49-5	053-745-1031	
114	문화재수리업체	이화문화재㈜	이이화	760-190	경북 안동시 목성동 65-5	054-852-2996	
115	문화재수리업체	㈜신화건설	임형규	760-420	경북 안동시 수하동 682-1	054-859-0822/054-854-0823	sinhwa4094@hanmail.net
116	문화재수리업체	㈜한맥종합건설	김한택	760-310	경북 안동시 옥동 987-10 메트로오피스텔 803호	054-852-7101	sw3361@naver.com

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	이메일
117	문화재수리업체	세방건설㈜	장해진 장태진	702-886	경북 안동시 정상동 361-1/대구 북구 동천동969-9	053-325-4295/053-325-4291	sbco1268@hanmail.net
118	문화재수리업체	㈜선재	박정환	760-400	경북 안동시 정하동 295-2 3층	054-843-7878	
119	문화재수리업체	㈜우인건설산업	우만조	766-804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 264-3	054-734-6507/054-734-6509	
120	문화재수리업체	㈜창신종합건설	김창규	750-903	경북 영주시 가흥동 1384-59 201호	054-635-5536/054-635-5537	
121	문화재수리업체	영동건설㈜	김복영	750-902	경북 영주시 가흥동 471-3	054-634-5550	kk5074430@hanmail.net
122	문화재수리업체	㈜동광	김춘한	750-902	경북 영주시 가흥동 521-8	054-635-5547	kbsc0267@chol.com
123	문화재수리업체	㈜양백	김진식	750-912	경북 영주시 하망동 325-19	054-636-1239	tomato-70@hanmail.net
124	문화재수리업체	태현건설㈜	윤현상	750-916	경북영주시휴천동677 ㈜케이티영주사옥 3층	054-636-8157	ks69038479@hanmail.net
125	문화재수리업체	제이디건설㈜	전중달	770-020	경북영천시문내동 152-29/대구중구동인동1가339-1	054-332-6214/053-741-6004	ksm99999@naver.com
126	문화재수리업체	강동건설㈜	정태일 주영수	770-020	경북 영천시 문내동 91-4	054-334-8660	kado20@paran.com
127	문화재수리업체	㈜명인건설	최성호	770-903	경북 영천시 야사동 191-14	054-332-8354	pcs9r@naver.com
128	문화재수리업체	명성기업㈜	안영대	678-801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413-7	055-265-1750	kcakms@yahoo.co.kr
129	문화재수리업체	정우건설㈜	윤기용	666-962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903	055-974-0804/055-974-0811	
130	문화재수리업체	(유)동현건설	이병국	660-908	경남 진주시 신안동 582-3 동현빌딩 5층	055-747-4233	iamosh0371@naver.com
131	문화재수리업체	㈜서광	전석철	678-801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434-6	055-931-7700/055-931-6300	
132	문화재수리업체	㈜케이디	백성용	660-843	경남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584-58	055-762-2360/055-762-3892	kd94100@hanmail.net
133	문화재수리업체	동문종합건설㈜	조향춘	660-988	경남 진주시 칠암동 503-5	055-759-6350/055-759-6353	dongmoon-99@hanmail.net
134	문화재수리업체	세종건설㈜	정황규	660-330	경남 진주시 하대동 103-26	055-747-4115/055-747-0413	7474115@hanmail.net
135	문화재수리업체	창성종합건설㈜	김종문	621-919	경남 김해시 외동 1215-13	055-329-2598/055-321-6664	

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	이메일
136	문화재수리업체	㈜송암토건	김철진	638-962	경남 고성군 영현면 연화리 973-4	055-674-7197	
137	문화재수리업체	호전종합건설㈜	유주열	638-962	경남 고성군영현면 연화리 973-5	055-674-0294	
138	문화재수리업체	홍기종합건설㈜	김종길, 황동열	621-905	경남 김해시 내동 1143-2 밝은메티칼센터 1002	055-337-9791/055-337-9793	hsg38@naver.com
139	문화재수리업체	㈜백호종합건설	백춘호	627-130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92-3	055-355-7221/055-355-7223	
140	문화재수리업체	우성종합건설㈜	정재욱	631-45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230번지 1호 남성수산센터 308호	055-243-9363/055-243-9361	hanibro@hanmail.net
141	문화재수리업체	창진종합건설㈜	이주호	635-805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93번지 2호	055-532-0666/055-532-0667	changsin04@empas.com
142	문화재수리업체	㈜씨오엠	안성준	630-819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회원1동138-8번지	055-284-3113	jwsl22@hanmail.net
143	문화재수리업체	㈜아정문화재	최건업	678-892	경남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286-2	055-932-0304	
144	문화재수리업체	화성종합문화재㈜	이근용	627-802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31-4 예성빌딩 201호	055-352-2358	
145	문화재수리업체	㈜풍산	홍두희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968번지 48호	055-536-0407	
146	문화재수리업체	㈜동인종합건설	고만철	690-803	제주 제주시 노형동 1063-1	064-733-1609/064-733-1608	
147	문화재수리업체	㈜대원종합건설	김택주		제주 제주시 노형동 2576-7 4층	064-712-0003	daewon712@hanmail.net
148	문화재수리업체	(주)성연건설	황건하		서울시 서대문구 응암로 28, 2층 14호	02-306-9945	
149	문화재수리업체	(주)와이케이공삼팔	권재동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57길 135	02-548-0059	pc-6101@hanmail.net
150	문화재수리업체	우리전통문화(주)	강덕희		부산시 강서구 범방동 1848-1	051-943-2946	
151	문화재수리업체	가나종합건설(주)	가성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로 273, 2층	031-423-0885	
152	문화재수리업체	두양종합건설(주)	조성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37번길 37, 701호	032-323-9020	duswjd1266@nate.com
153	문화재수리업체	심지종합건설(주)	김준성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1, 4층	031-495-7122	simgi3355@hanmail.net
154	문화재수리업체	(주)도성	이남숙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137, 2층	031-511-1450	

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	이메일
155	문화재수리업체	(주)희은건설	김성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153번길 8-3, 102호		
156	문화재수리업체	나우건설	이관우		강원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666	033-642-9140	lkw1697@hanmail.net
157	문화재수리업체	동서건설	강종숙		충북 충주시 안림동 1112번지 7호	043-856-0434	
158	문화재수리업체	찬중건설(주)	안중면		충북 충주시 교현동 614-1	043-852-4307	
159	문화재수리업체	고천(주)	이인구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3번길 35		
160	문화재수리업체	중원고건축(주)	박지우		충북 청원군 문의면 남계리 8-27	043-296-9700	
161	문화재수리업체	(주)대흥환경엔지니어링	이충규		충남 논산시 취암동 1045-15 3층 A	041-734-5111	
162	문화재수리업체	(주)삼장	박용관		충남부여군부여읍구아리58번지	041-837-0470	
163	문화재수리업체	(주)한옥	김범석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43-5번지 2층	041-333-3226	kasan549@naver.com
164	문화재수리업체	(주)신강	이승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1가 1097-7	063-223-9986	
165	문화재수리업체	(주)다온	국윤택		전북 익산시 인화동 2가 100-2	063-856-2650	stasea@naver.com
166	문화재수리업체	(주)솔종합건설	김병호		전남 화순군 능주면 지석로 1512	061-373-8830	
167	문화재수리업체	(주)진영	차정욱		전남 강진군 작천면 까치내로 583-39	061-433-6508	
168	문화재수리업체	(주)송원	전세호		경북 상주시 냉림동 334-4	054-531-0402	psy2402@nacer.com
169	문화재수리업체	(주)예당건설	강연수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47	054-933-6622	
170	문화재수리업체	원성건설(주)	최금평		경북 안동시 옥동 768-1 옥동세영아파트 상가동 303호	054-854-5466	won7500@hanmail.net
171	문화재수리업체	(주)청암	김윤기		경북 안동시 안기2길 15	054-843-6902	
172	문화재수리업체	미립건설(주)	안만종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1447-3	053-764-0433	
173	문화재수리업체	(주)대경씨엔씨건설	이광희		경북 상주시 상서문3길 130-12	054-536-8473	
174	문화재수리업체	금명종합건설(주)	양호준		경남 진주시 평거동 191-1 들말흥한타운 상가동 지하1층 106호	055-755-1234	kimgo@hanmail.net
175	문화재수리업체	흥인건설	여인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창남1길 50, 3층 302호	055-943-5060	

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	이메일
176	문화재수리업체	산하건설(주)	강용태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039	055-748-9335	
177	문화재수리업체	(주)인컴	황아나		경남 창원시 중앙동 96-4	055-748-9335	ana11@naver.com
178	문화재수리업체	(주)고영문화재	박영윤, 정현률		경남 창녕군 부곡면 진양촌길 8박영윤, 정현률	055-521-5505	goyoung@hanmail.net
179	문화재수리업체	(주)영산	박진명		경남 김해시 삼안로 60번길 1	055-311-0998	
180	문화재수리업체	(주)홍기전통문화재연구원	권윤식		경남 김해시 풍유동 301-3	055-329-2596	
181	문화재수리업체	(주)대안종합건설	박근범		제주시 애월읍 광령중길 85-22	064-746-0401	dac01@naver.com
182	일반업체	황토명가	고기황	137-829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86-3	1544-4910/02-534-4910	
183	일반업체	스튜가이엔씨㈜	김갑봉, 최원철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7 율암B/D 703	02-511-8901/02-511-8904	stugaenc@atuga.co.kr/
184	일반업체	연승건설㈜	김길웅	133-817	서울 성동구 사근동 17번지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 509호(지점:영암 구림리)	02-2296-6311/02-2296-6313	
185	일반업체	북촌 HRC	김장권	110-800	서울 종로구 계동 100-7	02-742-5042/02-742-6534	king3030@lycos.co.kr
186	일반업체	웰빙하우징㈜	김청기	110-858	서울 종로구 수송동 58 두산위브파빌리온 빌딩 내 422호	02-418-4441/02-417-4442	wellbing114@naver.com
187	일반업체	청원산방	심용식	110-800	서울종로구계동79-12 청원산방	02-715-3342/02-766-3342	sungsim@sungsimmart.com/
188	일반업체	우림목재	유재완	100-761	서울중구신당4동842 통아약수하이츠 116-1604	011-747-1694	moksu21@hanmail.net
189	일반업체	삼전종합조경	윤광석	151-050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01-29번지	02-871-5411/	
190	일반업체	이윤정조경연구소	이선남	135-270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6번지	02-572-5666	
191	일반업체	시원종합건설㈜	이호윤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9-38 청호빌딩 4층	02-565-0887/02-565-1835	
192	일반업체	두해고건축	정영수	139-847	서울 노원구 월게1동 929 현대아파트 106-1201호	02-943-6309	
193	일반업체	건축사사무소 법화	이강호	122-834	서울 은평구 녹번동 155-3	02-358-0274/02-383-1957	

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	이메일
194	일반업체	일하는 사람들	홍점숙	417-853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조산리 438번지	010-5899-4798/032-937-4572	
195	일반업체	코리아한옥	이원영	407-320	인천계양구병방동아주AI동502호	032-545-7074	hanokdps@hanmail.net
196	일반업체	㈜정간	박권호	520-841	광주 북구 북동 2-13	062-525-2151	sjung100@nate.com
197	일반업체	재영건설㈜	안종만	503-300	광주 남구 백운동 642-13	062-676-7258	kh45100@hanmail.net
198	일반업체	㈜아스카	권길상	469-802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우만리 208-27	1688-2975/031-882-2976	okmokk@empal.com
199	일반업체	패시브한옥	강준모	425-330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395-7	032-886-8494/032-714-3807	finnway@chollian.net
200	일반업체	우림전통건축	강진호	487-851	경기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87-7	031-536-7030/031-536-7890	kangnalu@cricmail.net
201	일반업체	예진건설(주)	김영태	422-826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04-1 화원연립A동 203호		
202	일반업체	한옥마을	김유식	431-060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11-301	031-362-5600/031-362-5606	woodtec@chol.com
203	일반업체	고건축과전통담장	김효순	461-210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9-9	031-759-5854/031-759-4965	dckiwa@empal.com
204	일반업체	동성목재	박찬숙	412-1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27-11	02-3159-9896	
205	일반업체	황토와 소나무	신준성	476-922/476-808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1021-3/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백운빌리지 201동 102호	016-251-6987	icj0908@hanmail.net
206	일반업체	한국목조개발	엄태석	440-3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기 311-3	031-335-9986/031-337-2662	korwood0335@hanmail.net
207	일반업체	송화건축	윤병선	476-911	경기 양평군 강상면 신화리 609-1	011-9040-8498	yoonbs606@naver.com
208	일반업체	예록2인의건축	이상길	476-911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신화리 376	031-775-0092/031-775-0226	
209	일반업체	이재균한옥	이재균	476-921	경기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87-6	031-772-0192/031-772-0190	hanog57@naver.com
210	일반업체	고진티앤시	전제걸	412-14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산79	011-495-9946	
211	일반업체	이연한옥	조전환	431-050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신안메트로칸 1901호	031-455-6173/031-429-6175	mookga@naver.com

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	이메일
212	일반업체	한옥과구들 연구회		465-200/ 502-828	경기 하남 감이81-2/ 광구 서구 치평동 1324-53층	011-611-7020	genesis0101rema@hanmail.net
213	일반업체	성주목업	민연기	471-858	경기 구리시 갈매동 241	031-573-5801/031-573-5803	
214	일반업체	예송고건축	박석규	487-823	경기포천시소흘읍송우1리주공A312-1804	031-543-2589	
215	일반업체	청옥건축㈜	청옥	411-310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960-19호	031-919-1281/031-919-1285	
216	일반업체	국제필름보일러	김태원	233-851	강원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552번지	033-732-9704/033-731-9704	
217	일반업체	천년목재	박주항	210-935	강원강릉시입암동 21-25	070-7789-9853/ 033-652-9853	1000yearlog@naver.com
218	일반업체	솔내음한옥	박청일	245-909	강원삼척시도계읍흥전리60-1	033-374-7644/033-373-0107	
219	일반업체	행인흙건축	이동일	225-842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삼거리 154 행인 한옥문화센터	033-344-0983/	webmaster@hangin.co.kr
220	일반업체	대경황토랜드㈜	이완영, 허인숙	250-80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274-2	033-435-8577/033-434-5896	hori00@nate.com
221	일반업체	성주고건축	홍완표	232-947	강원평창군진부면상진부리280-1성주목재고건축	033-335-0458	
222	일반업체	삼부토건	정진우	361-202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223-1	043-295-4019	
223	일반업체	백송(고건축)	이신열	363-822	충북 청원군 현도면 시동리 283-7	043-266-6614	shin1010235@naver.com
224	일반업체	대림이앤씨㈜	권순관	463-825	충북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 1183(공장이 여기로 옮김)	031-717-1817/031-717-1824	
225	일반업체	만포한옥	최승호	314-835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370	041-857-5116 (자택)	sewall@naver.com
226	문화재수리업체	전통한옥문연구소	김재중	560-287	전북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 901	063-221-7380/063-222-2095/063-222-2094	hanokmun@hanmail.net
227	일반업체	(유)유라시아건설	고재관	560-85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618-1	063-226-8504	
228	일반업체	동창원일기와	박우창	590-942	전북 남원시 주생면 정송리 280	063-631-8088	pwc0303@hanmail.net
229	일반업체	(유)창진기업	김우현	540-960	전남 순천시 장천동 17-4	061-741-4407/061-741-4404	heom876@hanmail.net
230	일반업체	㈜한울주택건설	김은주	526-892	전남 강진군 도암면 봉황리 295-2	062-432-3113/062-374-3134	hanwoolco@hanmail.net

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	이메일
231	일반업체	(유)천년한옥	문양식	517-802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220-10	062-236-1983/062-513-2777	ktnam063@paran.com
232	일반업체	㈜전진산업개발	박경민	513-884	전남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266-5	062-523-3800/062-523-3803	
233	일반업체	㈜죽산목재산업	안진순	546-801	전남 보성군 보성읍 쾌상리 1017	061-853-5520/061-853-5528	jsmj5520@naver.com
234	일반업체	고건축 결	김광철	517-891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13-13번지	061-383-8953/061-383-8954	
235	일반업체	남도한옥㈜	김만섭	540-967	전남 순천시 조례동 1398-6	061-725-6620/061-725-6670	kimmsbest@hanmail.net
236	일반업체	강원건설(주)	최순동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1235-16	061-471-0459	
237	일반업체	(주)건진건설	임경종		전남 순천시 도외동 68-12 강남타워 603호	061-751-2890	
238	일반업체	굿모닝디자인	한정순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91-1	061-755-7665	
239	일반업체	(유)금덕	황용태		전남 영암군 금정면 용흥리 259	061-471-3862	
240	일반업체	금안건설(주)	오영식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41-9	061-472-3465	
241	일반업체	나라종합건설(주)	이동식		전남영광군홍농읍상하리257-17	061-356-7411	nara1444@hanmail.net
242	일반업체	(주)다정한옥	정영모		전남 구례군 원방리 2-5번지	016-866-5797	action921@naver.com
243	일반업체	대한한옥개발(주)	이명철,양귀성		전남 담양군 용면 두장리 174-40이명철,양귀성	061-383-0227	3815250@naver.com
244	일반업체	방산기업(주)	장택수		전남 담양군 무정면 동산리 420	061-381-1610	
245	일반업체	삼일건설(주)	정영숙		전남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250-39	061-331-3322	
246	일반업체	세정건설	윤경원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738-6	061-762-6562	
247	일반업체	(주)양지종합건설	양승문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505-1	061-393-1601	
248	일반업체	우리한옥(주)	임찬란		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 591-2	061-381-7124	master@woorihanok.co.kr
249	일반업체	우보건설(주)	최석웅		전남 나주시 다시면 신동리 33	062-369-8167	woo--bo@hanmail.net
250	일반업체	(주)예가	박지영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48	061-351-8204	

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	이메일
251	일반업체	재영건설(주)	안종만		전남 보성군 보성읍 쾌상리 1017	062-676-7258	
252	일반업체	(유)청강건설미주한옥	임현수		전남 무안군 청계면 사마리 519-1	061-454-0488	
253	일반업체	(주)태준종합건설	서민우		전남 목포시 상동 1123-2	061-281-8055	
254	일반업체	(주)한옥사랑	오세원		전남 순천시 매곡동 434-12	061-723-4990	
255	일반업체	현대한옥(주)	이종행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 577-4	061-335-8881	ksca0655@naver.com
256	일반업체	황산한옥	박안희		전남 해남군 황산면 부곡리 734-5	061-532-3550	
257	일반업체	인거한옥	김복수	750-912	경북 영주시 하망동 276-23	054-637-3845/054-633-3845	ieh3845@naver.com/
258	일반업체	용성기와	김태식	712-190	경북 경산시 사동 578-8	011-523-7900/053-801-3082	
259	일반업체	우리한옥	이름잘못됨	780-881	경북경주시산내면감산리1889-1	010-5520-6739/054-751-6748	eht999@hanmail.net/
260	일반업체	동서고건축	박명기	718-821	경북 구미시 선산읍 화조리 480-2	054-971-0995/054-977-0992	hanokgo@naver.com
261	일반업체	유민구들흙건축	유종	742-822	경북상주시공검면부곡리210-12	080-855-9204/054-541-4229	umin9204@naver.com
262	일반업체	큰터한옥	김남규	714-871	경북 청도군 금천면 김전리 7번지	052-225-2356	sealvu@naver.com
263	일반업체	한옥짓는사람들	박석근	780-230	경북경주시동방동 263-5	054-749-3579/054-771-0887	
264	일반업체	한솔고건축	손현식	740-822	경북 김천시 봉산면 덕천리 116번지	054-435-1807	shs1807@naver.com
265	일반업체	한옥사랑	광규현	664-940	경남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진사주공 107동 904호	011-875-5347	rok778@naver.com
266	일반업체	풍산(주)	차정호	635-803	경남창녕군창녕읍교리968	055-536-0407/055-267-0551	
267	일반업체	윤양선도편수	윤양선		충북 옥천군 군서면 도평리 479-6	011-408-7817/043-732-7811	
268	일반업체	현대건업	강우원		강원 원주시 호저면 매호리 342-2	033-731-0006/033-733-0171	kww6131@naver.com

3. 자재업체(2012년 7월 기준)

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	이메일
1	목재	목포임산물	강성원		전남 목포시 산정동 1415-3	061-244-2625	
2	목재	광산목재(주)	박청웅		전남 목포시 산정동 1422	061-244-2625	
3	목재	순천목재산업	임덕기		전남 순천시 별량면 원산길 9	061-742-5707/011-622-5836	sclumber@kornet.net
4	목재	삼한에이텍	김인수		전남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999	061-333-4010/010-4642-0422	
5	목재	(주)광일목재	오승헌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463-3	061-331-8566/011-627-4229	
6	목재	대명목재산업	서재일		전남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351	061-332-0088/017-602-9009	dmwoods@hanmail.net
7	목재	현대제재소	장진선		전남 나주시 다시면 신광리 920-3	061-335-1227/010-3030-1324	
8	목재	(주)용성 제재소	양병도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191-2	061-334-2612/011-609-6215	su00626@nate.com
9	목재	삼일목재(주)	송장열		전남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249-2	061-331-8778/011-620-7636	samilwood@samilwood.com
10	목재	방산 제재소	장택수		전남 담양군 무정면 동산리 420	061-381-1610/010-5472-1611	
11	목재	금성 제재소	손덕용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곡리 851	061-382-0932/010-4789-7795	
12	목재	구원 목재산업	황현성		전남 구례군 구례읍 원방리 520-1	061-783-9191/010-8801-0691	jsmj5520@naver.com
13	목재	삼일종합목재(주)	김진태		전남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 7-20	061-373-6836/016-603-6841	
14	목재	(주)토방하우징	한진수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210-4	061-373-4760	archito@chol.com
15	목재	삼양제재소	박동원		전남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891-9	061-434-5118/011-602-6062	
16	목재	인산제재소	김동익		전남 해남읍 남외리 3-2	061-536-2709/011-636-2709	
17	목재	황산제재소	조진희		전남 해남읍 황산면 부곡리 734-5	061-532-3550/011-645-5890	
18	목재	금덕제재소	황용태		전남 영암군 금정면 용흥리 259	061-471-3862/010-3606-3862	
19	목재	세원목제(주)	홍기오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703-19	061-463-9800/011-605-5809	seawoncorp@naver.com
20	목재	영암제재소	박순옥		전남 영암군 영암읍 역리 403-2	061-471-1633	
21	목재	대성목재	박정서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371	061-464-3005	
22	목재	(주)법송목재	허준		전남 무안군 청계면 사마리 519-1	061-454-0488/010-6664-1289	

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	이메일
23	목재	(주)행복홈우드테크	최대운/문명철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557최대운/문명철	061-454-6300/010-5232-0047	wood@happyhomewoodtech.co.kr
24	목재	동원제재소	최용우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283	061-323-2334/011-621-2335	
25	기와	해룡기와	이춘형		전남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62	061-742-9002	
26	기와	대한한옥개발(주)	이명철		전남 담양군 용면 두장리 174-4	061-383-0227/010-3004-7122	3815250@naver.com
27	기와	동부요업(주)	박문환, 최병호		전남 구례군 간전면 간문리 623-2박문환, 최병호	061-781-0987/011-672-5996	
28	기와	(주)한라기와	정형채		전남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955-	061-858-8558/011-648-0698	
29	기와	무등기와	한석창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856-19	061-941-1999/010-6516-1999	
30	기와	탐진기와	박기남		전남 강진국 칠량면 영복리 341	061-433-2345/010-3694-4258	pkn0801@naver.com
31	기와	원표기와공장	김인안		전남 영암군 학산면 용산리 1015-34	061-473-5303/011-9567-5303	
32	기와	대우기와	정인창		전남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621-8	061-322-6200	
33	황토	(주)삼부기업	강대성		전남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794-1	061-337-3488	
34	황토	KC세라믹	김형실, 나석봉		전남 나주시 봉황면 와우리 1-35김형실, 나석봉	061-331-9000/010-9192-2900	
35	황토	황토산업	최은경, 구영규		전남 봉황면 황룡리 238-32최은경, 구영규	010-4631-0127	
36	황토	광양콘크리트	정순용, 정국기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1820-19정순용, 정국기	061-763-3636/011-622-0741	
37	황토	이조릑건축	이기열, 김동선		전남 보성군 조성면 귀산리 737-10이기열, 김동선	061-858-5356/010-9838-0353	
38	황토	화순황토산업(주)	정옥민		전남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243, 37-15	061-372-9954/010-3608-9954	
39	황토	남강황토세라믹	김남준		전남 화순군 한천면 반곡리 677-7	061-374-9100/011-611-5512	wangnye@nkhwangto.com
40	황토	붉은댁황토산업	이이림		전남 해남군 마산면 노하리 379-1	061-535-0803/010-4456-2918	
41	황토	(주)클레이맥스제이엔	차정만, 안지훈		전남 영암군 시종면 종소리 775차정만, 안지훈	061-472-5176/010-9109-6115(조민철본부장)	
42	황토	황토현	최삼중		전남 무안군 현경면 현화리 1057-2	061-454-5450/011-604-1117	lchh1177@nate.com
43	황토	(주)국일판넬	윤순옥		전남 무안군 청계면 송현리 353-5	061-452-5750/010-7171-1501	

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	이메일
44	황토	무안황토벽돌	최옥수		전남 무안군 해제면 창매리 859-18	061-453-3645/011-602-1646	
45	황토	(주)신기소일텍	김응수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561-1	010-3646-3828	ins114@hanmail.net
46	황토	선우황토벽돌	김준호		전남 장성군 남면 마령리 82-1	011-611-4612	
47	창호	(주)툇마루엔시스템목창호	김승호		전남 목포시 옥암동 복산길 28-1	011-631-0372	tmr0372@daum.net
48	창호	상록수건구	현상수		전남 순천시 별량면 동송리 362	061-7427529/010-3642-7529	
49	창호	삼목공예	이을채		전남 화순군 도암면 지월리 314-8	010-5630-0966	
50	창호	(주)이노탑	유진종, 김필환		전남 화순군 동면 운농리 1028-1유진종, 김필환	061-373-6920/010-3629-6920	greenwindows@inotop.co.kr
51	보일러	(주)유니온보일러	김종배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679-9	010-5652-5544	
52	보일러	(주)약산	이형일		전남 담양군 금성면 원천리 269-2	018-602-9101	